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2016. 4





머 리 말

해마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고 세금계산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소득세법의 기본적인 사항 및 소득종류별 신고서 작성방법과 작성사례를 자세하게 수록한 「2015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 직원들에게는 신고상담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튼튼한 재정확보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실납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고 서환



• • 목 차 • •

제1편 2015년 귀속 종압소득에 등 확정인고 안내
제1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11 제2장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 15 제3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7
제2편 기장의무와 경비율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53
1. 장부의 비치·기장 ····· 53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53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 55
제2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57
제3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에 등 신고ㆍ납부 안내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67
1. 소득의 구분과 종류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4. 소득세의 납세지
5. 0日エコ/川勺 ゼエ・日コ 72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75	
1. 납세의무자 75	
2. 비과세 75	
3. 과세표준과 세율 76	
4. 납세지 77	
5. 신고와 납부·환급 77	
제3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 78	
2. 납세지 78	
3. 과세표준과 세율 78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 78	
제4편 2015년 귀속 종압소득에 등 신고서 짝성요령	
	-1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83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83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83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83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84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83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84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86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83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84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86 1. 기본사항 기재요령 87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83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84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86 1. 기본사항 기재요령 87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89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83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84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86 1. 기본사항 기재요령 87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83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84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86 1. 기본사항 기재요령 87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89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83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84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86 1. 기본사항 기재요령 87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89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90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83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84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861. 기본사항 기재요령87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89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90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91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83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84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861. 기본사항 기재요령87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89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90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911. 이자소득명세서91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83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84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861. 기본사항 기재요령87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89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90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911. 이자소득명세서912. 배당소득명세서92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142 145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1. 각 항목 기재요령	151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153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62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167
제6장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168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168
2. 준비금명세서	185
제5편 중압소득에 인고서 짝성사례	
제5편 중압소득에 인고서 작성사례	
제5편 중압소득에 인고서 작성사례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189
	189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189 203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203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203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203216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203216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203216232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203216232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259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271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285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298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304
11.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316
12.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328
 부록	
L	
부록	

신고 전 주의해야할 유권해석 사례 안내 …………………… 343



제 1 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 안내



.

제1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_ 11 제2장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_ 15 제3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_ 17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1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 2015 () 5 ()
-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소득
- ▶ 2015 가

•

*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	>				
1.),	, 2 3	3	3	6	6
2.	, ((),	, ·가· · , · · ,	1 5	1 5	3 6	3 6
3.	45 2 , , 가	, , , , , , , , , , , , , , , , , , ,	7 5	7 5	2 4	2 4

* 해당되는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업 종 별	확인대상
1.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밖에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3. 45 2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¹⁾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 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¹⁾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실내건축공사업, 결혼상담업, 맞선주선업, 의류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2014) (

- * 다만,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신규사업자 중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3.0 (2.4)

= - -(×) = -(×)

* 반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장 <u>!</u>	부를 기록할	경우 혜택	장부를	· 기록하지	않는 경우	우 불이익
▶ 가 10		,	▶ 기	 		, .
	가	20%	▶ 2014	20%	4,800 가	
•	기	· .	가	20%		0.07%

•	5	31	.(6	30)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 초고	바하는 경우	에는	50%	이내의	금액을,	1천만원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2016.	8. 1.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	라 .			
• 6	30)					(
2)			
	_	04							
•	5	31	•						
•	•	•	8	20					
						•			
	N/	, ly NTS		,			가		
	IV						/		•
•		가							가

14 •••



제 2 장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소득세법 관련

<사업소득 분야>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 인상 (1.800만원 → 2.400만원)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
- 매입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허용

<기타소득 분야>

○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2015.1.1.에서 2018.1.1.까지 연장함

<근로소득 분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의료 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확대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2013.12.31.이전에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연금·퇴직소득 분야>

-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공제순서를 후순위로 공제
- 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대상 퇴직 연금 납입한도 확대

<금융소득 분야>

○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고배당 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 대상에 해당

<종합소득 분야>

-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 500만원)
-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15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번호(011001) 신설 및 경비율 제정(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13.2%)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타 기부금 공제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30% → 40%, 50%)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적용요건 전환(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공제율(60%소득공제 → 10%세액공제), 한도확대(500만원 → 750만원)]

▶ 국세기본법 관련

-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상속포기자의 보험금을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 납세담보의 평가방법으로 시가평가 허용
- 경정청구기간의 확대(3년 → 5년)



40 (1),), 40 (1), (1), 40 40 (1), 2 (1) 40 40 (4) 40 (1)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2016.03.16 개정)

(33쪽 중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 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1. 1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 2. ③ 세무대리인란을 적습니다(세무대리인이 기장・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3. 6~ 3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 4. ③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⑩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⑪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5. 🕕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6. ❷ 세액감면명세서 · ❸ 세액공제명세서 · ❹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 7. (6) 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8. 🚯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9. ④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⑥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⑥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⑥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⑧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 10.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 11.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12.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접 수 중(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7.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3. 합계잔액시산표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4. 조정계산서 () 9. 그 밖의 첨부서류 ()
5. 소득공제신고서 ()

210mm×297mm[백상지 80g/m³(재활용품)]



(33쪽 중 제2쪽)

1 ~ ♠ 작성방법

-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3. ⑧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 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⑭, Ⅳ, Ⅲ, ⑩, 꽤, 쬬, 쉑의 순서에 따라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5. ③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①기장 ②조정 ③신고 ④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6. ① 종합소득금액란: 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7. ②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명세서의 ② 소득공제합계에서 ②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8. ② 세율란・③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⑥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⑥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⑥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 9. ② 세액감면란・⑤ 세액공제란: ❷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❸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10. ② · ⑥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② 가산세는 ❸ 가산세명세서의 ⑥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1. ② · ⑥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②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 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⑥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12. ③) 🔞 기납부세액란: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 13. ③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② 합계 금액에서 ③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
- 14. ② ·③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2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 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②난에, 다음 2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③난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③ 분납할세액란: ③ 납부할 총세액에서 ②③ 납부특례세액을 차감·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 15. 지방소득세란: ④ 과세표준란에는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④ 세율란·⑥ 산출세액 란에는 세율표에 따라 지방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④ 세액감면 및 ⑤ 세액공제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❷와 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④ 가산세액란은 「지방세법」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단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⑥ 추가납부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❷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⑤ 기납부세액은 ③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16. 농어촌특별세란: ⑥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⑧ 감면세액 합계 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⑥ 산출세액을 계산합니 다. ⑥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⑥ +⑥ -⑥)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 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المالح	2012년~2013년		7045		2014년~2015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귀속년도 과세표준	- 2	§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의제표간	세율	누진공제액	2/11112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3.8%	1,940천원	

관리번호 - (년 귀속)종합	합소득세·농어촌특별	세·제빙	!소득세 내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준확정신고 및 납투	부계산서		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자국 가주자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Ž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5) /	나업장 전호	<u></u>	
⑥ 휴 대 전 화		선자우편주		
⑧ 신 고 유 형 Ш자기조정 [2]외부조정				
9 기 장 의 무 ①복식부기의무자 100 신 고 구 분 100정기신고 200수정신	②간편장부대성 신고 300경정청구 400기한		③비사입 추가신고(인정실	·
②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 금융기관/체신	관서명	(12)) 계좌번호	
(2년년년 이년년 중 17) ③ 세 무 ®성 명 (용사업자	등록번호 -	T-		5) 전화번호
대리인 16대라분 11기장 2조정 3신교	그 4확인 ① 관리번호 -		①8 조정변	반번호 -
4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빙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19			
소 득 공 제	1 9			
과 세 표 준(①9-200)	20	41)		60
세 율	22	42		62
산 출 세 액	23	43		63
세 액 감 면	24	44		
세 액 공 제	25	45		
결 정 세 액(32-24-25)	26	46		64
가 산 세	27	47		65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28	48		66
합 계(%+27+28)	29	49		67
기 납 부 세 액	30	50		68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²³⁹ - ³⁰)	31	51)		69
차 감 납 부 특 례 세 액	32			
집 구 즉 네 세 곡 가 산	33			70
분 납 할 세 액 2개월내	34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③)-②2+③-④)	35	52		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5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	E하였고 (납부세액을	보고인이 알고 ·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	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	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세무디	내리인		(서명 또는 인	1)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33쪽 중 제4쪽)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 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 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17)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 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이자소득명세서

1	② OL=4	이자	지급자		© 이원지스티	
소득 구분 코드	일련 번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이자소득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33쪽 중 제6쪽) ₩

⑥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 23~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 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 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다.「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 마.「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 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4. ③ 법인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 (예: 이자소득 1천만원, 배당소득 2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2천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1천만원을 적음)
-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1.1.부터 2010.12.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9.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	② 일련		지급법인		(5)	배당가산액	(Gross-Up)	® 배당	⑨ 원천징수된
고 구분 코드	번호	③ 법 ④ 사업	인 は자등록は	명 번호	배당액	⑥ 대상금액	① 가산액 (⑥× 가산율)	대당 소득금액 (⑤+⑦)	소득세



(33쪽 중 제8쪽)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31・32・40・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 2.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 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3. 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 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 4. ⑥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5. ⑦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2
 - 라. 성실신고확인: 14
 -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 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 사.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 6. ⑧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 7. ③ 총수입금액란 및 ①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 (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①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 8. ①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③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⑤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⑥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②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⑨ 총수입금액에서 ①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9. ① 소득금액란: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❸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②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10. ① 과세기간개시일란·③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 11. 🖟 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2. ①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3. 🚯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14. ① 상호(성명)란·⑱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5. ⑩ 소득세란 ∙ ⑳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사	업소	특명세	Ч										
1	소	득	구	분	코	드								
2	일		련	반	<u> </u>	호								
	사			재 ㅈ	1									
(3)	업		<u> </u>	^1 ^	1									
	장	국나	1/국외9	소	대지국	구드								
4	상					호								
(5)	사	업	자 등	<u></u>	류 반	호								
(6)	기		장	0		무								
7	신	고	유	형	코	드								
(8)	주	Ę	검 종	-	코	드								
9	총	ŕ	<u></u> 2		금	액								
10	필		요	さ	ļ	비								
11)	소	득	금		액(@)-(10)								
(12)	과	세	기 간	개	시	일								
13	과	세	기 간	종	료	일								
	14		성		5	병								
대 공		표 업자	주	민등	록번호	Ž								
			성		5	녕								
			주!	민등	록번호	Ē.								
	15)	성		5	병								
특	수관	계인	주	민등	록번호	Ē								
			성		Ę	병								
			주	민등	록번호	Ē.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16				원천경	당수의무지	또는 납	세조합	Ş	원천징수 -	또는 납서	조합징수	세액
		일련 번호			17)	상호(성명)	® 사업 (주민	자등록번호 !등록번호	<u> </u>	19 소득서	I	20 농어촌	-특별세

www.nts.go.kr/moo

(33쪽 중 제10쪽)^M

❸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 •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 1) 61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 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 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8. ⑧ 소득세란·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❸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1)	2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 총수입금액	⑥ 필요경비	= = =	원천징: 납세조합	수 또는 징수세액
소득 구분 코드	일련 번호	③ 상 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총급여액 · 총연금액)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⑦ 소득금액 (⑤-⑥)	®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33쪽 중 제12쪽)

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이자소득금액란: 6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 나. 배당소득금액란: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한계액
 - 라.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⑩** 이월결손금 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 마.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금액란: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 '40', '41'인 소득의 ⑩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❸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2. ②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 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 3. ③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 4. ④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5.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⑩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1)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발생과세기간란·② 발생금액란: 직전 10개 과세기간(2008년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직전 5 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대로 적습니다.
- 2.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 3. 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 4.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5.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 6. 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③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Ž)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부동산임대업 (주막대업제의 외의 시업소득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③ 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① 부동산임대업 (주택암대업제외)의 사업소득 이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 득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시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황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명세서

	이월결손	금 발생명세			당기 공제액		
구 분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③ 전기까지 공제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⑦ 잔 액
부 동 산							
임대업(주택							
임 대 업 제 외) 으							
사 업 소 득							
부 동 산							
임대업(주택 임 대 업							
제외) 외의							
사 업 소 득							



(33쪽 중 제14쪽)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 1. 인적공제(① ~ ⑦)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150만원)을 각 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경우 ⑦를 적용합니다.
- 2. 연금보험료공제(⑨~⑩)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⑨란에 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⑪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 3. ①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4. 특별공제(⑫~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다. [과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 5.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6.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①~②)는 관련 제목(조문)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③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②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⑧ 코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7. 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⑩**-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⑨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구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본		인			연	금	⑨ 국 민 연 금		
기본공	② 배	우	자			보험	l 료 제	(⑪) 공무원・군인・사립 학교 교직원・별정우체 국 연금		
제	③ 부	양 가 족(명)				11)	주택담보노후연금 이 자 비 용 공 제		
	④ 경	로 우 대 자(명)			특	12) 보험료 공제		
추 가	⑤ 장	애 인(명)				13) 주택자금 공제		
제 공 6 부 녀 자						2	(14	기부금(이월분) 공제		
^II	① 한	부 모 가	족			공	~	(12)~(M)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제 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합계										
	본공제 추 가 공 제	① 본 기본공제 ③ 부 ④ 경 추 가 공 제 ① 한	① 본 기 본 공 제 ② 배 우 ③ 부 양 가 족(④ 경로우대자(추 가 공) ⑥ 장 애 인(중 부 녀 ⑦ 한 부 모 가	① 보 인 기본 가 족(명) ③ 부 양 가 족(명) 추 가 즉(명) ⑥ 장 애 인(명) 공 제 ⑥ 부 녀 자 ① 한 부 모 가 족	구 분 금 기본 인 ② 배 우 자 ③ 부 양 가 족(명) 4 경로우대자(명) 추가 공 ⑤ 장 애 인(명) ⑥ 부 녀 자 ① 한 부 모 가 족	구 분 금 액 기본 인 ② 배 우 자 ③ 부 양 가 족(명) 4 경로우대자(명) 추가 공 ⑤ 장 애 인(명) 6 부 녀 자 ① 한 부 모 가 족	구 분 금 액 기본 인 연연보호 ② 배 우 자 ③ 부 양 가 족(명) 명) 추가 공 ⑤ 장 애 인(명) ⑥ 부 녀 자 ① 한 부 모 가 족	구 분 금 액 ① 본 인 연 금 보험료로 제 ② 배 우 자 3 부양가족(명) ③ 부양가족(명) ⑥ 장 아 인(명) 중 등 다 다 자 제 ② 한 부 모 가 족 ③ 이저고제계(의 ③ 의 함계)	구 분 급 액 구 분 10 본 인 연 금 연 금 급 에 공무원・군인・사립 학교교직원・별정우체 국 연금 30 부 양 가 족(명) 40 경로우대자(명) 50 장 애 인(명) 60 부 녀 자 제 ① 한 부 모 가 족 10 본 연 금 연 금 에 공무원・군인・사립 학교교직원・별정우체 국 연금 이 자 비용공제 11 주택담보노후연금 이 자 비용공제 12 보험료 공제 13 주택자금 공제 14 기부금(이월분) 공제 28 이전 공세계(의 중의 항계) 29 이전 공세계(의 중의 항계) 10 이전 공세계(의 중의 항계) 11 구로소득이 있는 자 특별 공제 22 로소득이 있는 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① 본 인 연 금 보험료 제 ① 공무원・군인・사립 학교교직원・별정우체 국 연금 ③ 부 양 가 족(명) ① 경로우대자(명) 추 가 공 ⑥ 부 녀 자 제 ② 한 부 모 가 족 ② 이저고 제계(② ② 의 항계) ③ 기부금(이월분) 공제 전 그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무별 공제 -로소득이 있는 자 무별 공제 -로소득이 있는 자 무별 공제 -로소득이 있는 자 무별 공제 -로소득이 있는 자

16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_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	공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8) 코드	⑲ 금 액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② 소득공제 합계 (®~⑪+⑮+㉑)		② 소득공	당제 종합한도 초과역	Н



(33쪽 중 제16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 이 서식 작성 후 ⑥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가.「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투자 제외
-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라.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 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	7	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적 공 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 금 보험 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주	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연금소득금액 한도) 한도	×		
- 백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 액	×		
소 득	주 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⑤)	(河+ⓒ) 연 300만원 한도	0		
공 제	자 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ℂ)	(¬+□+□) 연 500만원(1,800만원) 한도	0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 및 벤처기업 등 투자분은 제외)		
그 밖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300만원 한도	0		
의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河+©) 연 300만원 한도	0		
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0		
득 공 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 + 100만원(대중교통)	0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한도	×		

(33쪽 중 제17쪽)

			(33쪽 중 제17쪽)					
• 마-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소득세법」 상 특별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① 주택자금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② 중소기업창업투	- 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					
③ 소기업・소상공	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④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근로자					
⑥ 장기집합투자	증권 저축		근로자					
⑦ 신용카드 등 /	사용금액		근로자					
® 종합한도 적용 (①~			종합한도 초과액 등공제액 - 2,500만원)					

야 국세 청

(33쪽 중 제18쪽) ₩

세액감면명세서 및 (B)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 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 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 ① ⑤ 해당 제목(법 조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제목(「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적습니다.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⑥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웹 배당세액공제의 ১%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 이 있는 거주자)는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 배당세액공제의 🛱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나. 자녀세액공제
 - o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2명 이하: 1명당 15만원(1명: 15만원, 2명: 30 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ㅇ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15만원), 2명 초과(15만원 + 2명 초과 1명 당 15만원)
 - o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1명당 30만원
 -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만 있는 근로자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5%)
 - 라. 특별세액공제
 - ㅇ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 ㅇ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 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기부금으로 하되, 기 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코드 20, 42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 법의 세액공제 란에 적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 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을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20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 코드 31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50%
- © 코드 42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30%
- ◎ 코드 40, 41의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10% + [(종합소득금액 - ⑤~ⓒ의 기부금 공제액) × 20%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 코드 40, 41의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 액)× 30%
- ㅇ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 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7만원)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 면받을 수 있습니다.
- 4.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 5. ③ 세액감면·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 6.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 Γŀ
 -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
-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3쪽 중 제19쪽)	
₩ 세액감면	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П							
	(5)	세액	감면 합계									
 ® 세액공제	l명세서											
① 「 소	득세법_	. 상 ,	세액공제		2	코드	공	H제대상 금액 (⑤)	적용률 (□)	③ 세액공제 (⊙×ⓒ)	④ 시업자등록번호	
 배 당	세	액	공	제				(0)	(0)	(0110)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_ 근 로 소	<u></u> 두	세	액 공	제								
T	¬ -"		본공제지녀	명)								
자녀 세액	공 세		네 이하 지녀 E 산·입 양	명) 명)								
		_	<u>학기술인</u>									
연금계좌 세약	액공제	퇴							12%		_	
egna ·····	10.1	연							(15%)		_	
	보험료	H		 성					12%			
		장	애인전용5	^보 장성					15%			
E 13 .11 01	의		료	비					15%			
특별세액	교		육	비					15%			
공 제	기 부	ュ	법정기	부금					15%			
	/ / T		지정기	부금					(25%)			
	丑	준 서	∥ 액 공	세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조세틀	해제한 제목(법	_		제								
-1 -1 -1 - 1	10만원 이하		이 하									
정 치 자 금 기 부 금		1 0	만 원	초 과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	득세밥	+ 5	조세특례	제한	법」)						
 () 준비금명	세서											

①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① 사 업 자 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제3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WWW nts.go.kr.

(33쪽 중 제20쪽)

■

⑤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무신고가산세·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달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및 주식 등에 대한 기장불성실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6항)

- 2. ③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2002년 귀속소득분부터 3/10,000을 적용합니다.
- 3.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4. ⑨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5. ⑩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0.2/100를 적용합니다.
- 6.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0.2/100를 적용합니다.
- 7. ④ 보고불성실가산세·⑤ 증빙불비가산세·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⑱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9. ⑥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적용하여 적습니다.
- 10.「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1)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3. ④·②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4. ⑤ 이자소득란: 6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5. ⑥ 배당소득란: ⑥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6. ②・❷ 사업소득란: ❷ 사업소득명세서 ⑱란의 합계액과 ⑲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 7. ⑧·炀 근로소득란: ❸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 8. ⑨ 연금소득란・⑩ 기타소득란: ③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 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구		분	į.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악
								4.1	*		411	앤		40/100	
		부	정	두	1	신	고	산	출		세	_ '		(60/100)	
① 무 신 고								수	입		금	액		14/10,000	
. –		일	ш	_	,	4.1	_	산	출		세	액		20/100	
			반	두	_	신	고	수	입		금	액		7/10,000	-
								П	달		세	액		40/100	
		부	정	과	소	신	고	<u>ات</u>			^	=======================================		(60/100)	
②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0	달		세	액		10/100	
	¬\ •	-					납		9	ļ		수	()	0/40 000	
③ 납 부(환	급) 불	를 선	성 실			납	부(환	급)		세	액		3/10,000	
	지 급	명	세 서			불명)			1(불명		액			2/100	
			- 4		년 제 출			-	년제출·					1/100	
	계	산	서			위장기	l공)	공	급		가	액		2/100	
5 H3HUN	711	4.1		불당		Holl			성금액	\ =14	OII			1/100	
 4 보고불성실 계 합 매입처별 	산 계	서 표	_	매술(연제결	불명)		-	(불명 제출		~ ~			1/100 0.5/100		
					<u></u> 불명)		-	!세울! }(불명		OH			1/100		
	계	표		비르(연제결			_	네 출 네 출	_	<u> </u>			0.5/100		
<u> </u>				1 - 1 1					211112					0.0/100	
5 7 11 11 11	1		<u> </u>		수		취		수	취	금	액		2/100	
5) 증 빙 불 비		7	허	위		수	취	허	위 :	÷.	취 금	액		2/100	
6) 영 수 증 수			-		제		출		제	출	금	액		1/100	
명 세 서 미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7) 사업장 현 황	신 고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불성실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8) 공 동 사 업	장 능 독		미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불성실		i	손익분비	배비눌	울허우	신고	등	총	수	입		액		0.1/100	
9 무 기 장 10 사 업 용 계	χL		미개	서	• 미	신	ュ	산 수	출 입	Ē	<u>세</u> 금 액	액 등		20/100 0.2/100	
의 사 집 용 계 미 신 고 등	34F		<u> </u>		<u>• 미</u> 사	겐	<u>-</u> 용	미	사	용		맹		0.2/100	
		_	•	개	거	보	<u> </u>	<u> </u>		<u> </u>		액		5/100	
① 신 용 카 드	거 부			-'' 개	거		· 불			=	 건	수		5,000원	-
			<u>.</u>		<u>가</u>		맹		입		금	액		1/100	
② 현금영수증 □	발급	1	0	발	Ē	급・불		성	실		금	액		5/100	
		1	미	발	Ε	급・불		성	실		건	수		5,000원	
3 -14	н и и		영수증	불 성	실 빌	: 급		불성	실기기	대금	액			2/100	
(Î) 기부금영수증불성실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편		보관	미	작 성	등	금	액		0.2/100						
④ 동업기업 배분	분 가산세														
5 성실신고확인	서 미제출	· 가	산세					산	출		세	액		5/100	
6 합 계															

①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객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백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백 ③						
수 시 부	과 세	백 ④		20				
	이 자 소 득	(5)		22				
	배 당 소 득	6		23				
원 천 징 수 세 액		7		24				
납 세 조 합 징 수 세 약	근 로 소 득	8		25				
	연 금 소 득	9						
	기 타 소 득	10						
기납부시	액 합계	11)		26				

제3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3쪽 중 제22쪽)፟፟፟

좋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1. 용어의 정의
 -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이외에 종한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 다. "⑫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 2. 2 또는 3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 나.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❸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⑤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 코드는 ①, "12·15" 코드는 ②, "17" 코드는 ③, "13· 16" 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 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란은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 '26' 코드 "⑤ 배당액" 란의 한계액을 적습니다.
-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뻰 금액(⑤ 배당액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 6. ⑩ 배당가산액란: ❸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가산율)을 적습니다.
- 7. (④・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단: 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8. ⑳・ੌ③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⑥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기본세율
 - ${\mathbb C}$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imes}$ 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 ${ imes}$ 기본세율
- 9. (b·) · ③ 소득공제란: ① 소득공제명세서의 ② 소득공제합계에서 ③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10. ② ·②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 (9/100)을 적용합니다.
- 11. ②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12. ② •③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13. 4 배당세액공제: 40란은 ③와 (③)-③)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좋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Ⅱ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①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8 위 6·7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9 배당소득 합계(⑥+⑦+®)							
②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② [(②+⑦)× (14/100)]							
①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	,000	③ [③× (25/100)]							
① 기준초과금액(⑩-⑪)			③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③ 배당가산액			③ 소득공제							
④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③6 과세표준(④-⑤)							
⑤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① +① +①)			③ 기본세율							
① 소득공제			③ 산출세액							
① 과세표준(⑤-⑥)			③ 종합소득산출세액(②+③+③)							
® 기본세율										
⑩ 산출세액										
② [①× (14/100,9/100)]										
② 비교산출세액계(⑩+20)										
②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②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⑪-(①+③)]										
② [③× (14/100,9/100)]										
⅓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26 소득공제										
② 과세표준(②-②)										
≫ 기본세율										
29 산출세액										
③ 비교산출세액 계(②+②+3)										
③ 종합소득산출세액(②)와 ③ 중 큰 금액)										
4. 배당세액공제										
⑩ [③와 (釟-幼) 중 작은 금액]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 란부터 ⑨란까지, ⑳란부터 ㉑란까지 및 ⑩란부터 ㉑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합니다.
-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⑩ 업종코드・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항목에 작성합니다.
- 4. 매입비용(22~25)과 임차료(26~29)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②ㆍ②란에 적습니다.
 -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② ・⑧란에 적습니다.
 -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②·② 란에 적습니다.
-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급여 임금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웹란에 적습니다.
 -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rightaged 란이 적습니다.
- 6.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7.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상의 ଉ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8. ⑩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½)
- 9. 🔞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 10. ③ 금액란: 1에서 ①8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11. ② 비교소득금액란: ③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복식부기의 무자: 3.0, 간편장부대상자: 2.4)"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12. ② 소득금액란: ①라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①라의 기준소득금액과 ②라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계()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부터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①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100 기초재 I	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요 ⑪ 당기에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소 경 웹계(⑩+	③ 계(⑩+⑪-⑫)							
등 비 기준경비율에 의	식하여	⑭ 기준경비율(%)						
의 계산한 경비		15 금액(⑨×14)						
⑥ 필요경비 계	(13) + 15))						
① 기준소 득금 액 (⑨-⑥)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18 단순	·경비율(%)						
소득 계산한 소득금액	19 금인	[(9 × (1−(8))]						
금액 ② 비교소득금액 (⑲×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② 소득금액 (① 또는 ② 중 적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22		23		24		25		
임 차 료	26		27)		28		29		
인 건 비	30		31)		32		33		
계(34=11)	34)		35)		36		37)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제3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3쪽 중 제26쪽)

⑤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3.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②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7쪽의 ⑥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제9쪽의 ⑥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제11쪽의 ⑥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나. ②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다. ④ 필요경비란: 沙총수입금액에서 환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⑩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② 소득공제합계에서 ②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마. ꂌ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⑯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바. ⑩ 산출세액란: ⑯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4. 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ઋ~빨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나. ⑩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ꂌ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⑩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⑩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5. 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ઋ~ા라: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나. ৷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다. ꂌ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⑲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⑩ 산출세액란: ⑪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6. ⑤~⑪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가. ②~@란: 매매가액(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④)를 빼서 소득금액(④)을 계산합니다.
 - 나. ⑩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 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 ꂌ 과세표준: 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⑩ 산출세액란: ⑩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7. ⑷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 8.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⑩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⑩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③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7 H	① 종합소득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금액 합계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외 종합소득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⑦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j)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② 소 득 금 액									
⑨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바 과 세 표 준									
(H) 세 율									
ⓒ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① 40%세율 적용자산	® 45%세율 적용자산	9 50%세율 적용자산	⑩ 60%세율 적용자산	⑪ 70%세율 (미등기자산)
⑦ 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J) 필 요 경 비							
④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양도소득기본공제)							
♨ 과 세 표 준							
④ 세 율							
⑥ 산 출 세 액							

제3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3쪽 중 제28쪽)

③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이외 에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 2. 2 또는 3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⑤+⑥)이 종합과세기준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웹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❸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 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 코드는 ①, "12·15" 코드는 ②, "17" 코드는 ③, "13·16" 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 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란은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 '26' 코드 "⑤ 배당액" 란의합계액을 적습니다.
- 5. ⑧ 위 ⑥ · ⑦ 외의 배당소득란: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 6. ⑬ 배당가산액란: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 7. ([]·①·④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8. ⑤·⑱·⑲·๋ీ๋ 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기본세율
- 9. (16 32 46) 소득공제란: (10 소득공제명세서의 22) 소득공제합계에서 23)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10. ② · ③ ·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9/100)을 적용합니다.
- 11. ④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12. ② ④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13. ◢ 배당세액공제: ፡፡ ⑧란은 □3와 [(④-(汤와 ④)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14. ②·⑤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⑥**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⑥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5. ※ · ⑤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 란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③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Ⅱ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_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④ 위 ①· ② · ③ 외의 이자소득		® 위 ⑥· ⑦ 외의 배당소득		
5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_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2	병우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	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금융소득금액(⑤+⑨)		② [(②+⑦)× (14/100)]		
①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④ [③× (25/100)]		
① 기준초과금액(⑩-⑪)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③ 배 당 가 산 액		⑤ 종합소득금액(④)		
④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46 소 득 공 제		
⑤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⑩+⑪+⑪+⑭)		④ 과 세 표 준(④-⑥)		
⑤ 소 득 공 제		48 기 본 세 율		
① 과 세 표 준(瓜-⑥)		49 산 출 세 액		
① 기 본 세 율		⑤ 비교산출세액 계(④+④+④)		
① 산 출 세 액		⑤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pre>② [①× (14/100,9/100)]</pre>		ᅠ②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④-⑤)		
② 비교산출세액 계(⑩+⑳)		⑤ 기 본 세 율		
②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산 출 세 액		
㉓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⑰-㉒)		⑤ 주택등매매차익세액		
② 기 본 세 율		⑤ 비교산출세액(④+④+⑤)		
② 산 출 세 액		⑤ 종합소득산출세액(⑥와 ⑥ 중 큰 금액)		
26 주택등매매차익세액		4 배당세액공제액		
থ 비교산출세액(200+250+260)		⑤ ⑥와 [(④) -(⑥와 ④) 중 큰 금액)] 중		
※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작은 금액		
②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⑩-(①+③)]				_
③ [②× (14/100,9/100)]				
③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④)				
፡ ፡ ፡ ፡ ፡ ፡ ፡ ፡ ፡ ፡ ፡ ፡ ፡ ፡ ፡ ፡ ፡ ፡ ፡				
③ 과 세 표 준(③)-②)				
③ 기 본 세 율				
③ 산 출 세 액				
③ 비교산출세액 계(② +③) +⑤)				
☞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③-②)				
⑧ 기 본 세 율				
③ 산 출 세 액				
④ 비교산출세액 계(%+%+%)+%)				
④ 종합소득산출세액 (②)·②)·③6·④ 중 큰 금액)				

제3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3쪽 중 제30쪽)

④ 주식매수선택권 분납할세액 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5.12.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 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2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 5. ⑫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 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3분의2에 해 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6. ⑬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납부특례세액(분할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7. ④ 1차년도 및 ⑥ 2차년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1개년도 및 다음 2개년 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 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적습니다.
- 8. ⑰ 잔액은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33쪽 중 제31쪽

									(007 6 4017)	
		주석	니매수선택	권 행사(이익 년	납부특례	세액계산 당	병세서		
1 주식매	수선택권 형	생사이익 현	현황							
	② 사업자	주	식매수선택	권 부여		ਤੌ	⁵ 식매수선택	권 행사	⑨ 행사이익	
① 법인명 	등록번호	③ 일자	④ 주식 수	⑤ 주 행사기		⑥ 일자	① 주식 수	⑧ 주당 시가	{⑦× (®-⑤)}	
 2 납부특	례세액의 계	 산								
 구	 분		주식매수선		(1)	주식매수		12 납부		
		ō	행사이익 포	함		행사이익	제외	(10) -	①)×2/3	
	타)소득금액									
④ 종합소득 ———										
ⓒ 소득공자										
라세표전	<u> </u>									
⊕ 세율										
● 산출세약	4									
♨ 세액감만	<u> </u>									
ⓒ 세액공제										
☞ 결정세약	H H									
3 분할님	부하여야 할	할 세액의	계산							
	u - 1 - 11 - 11 - 1		"ELL LIN	E 711 / 11011		납투	브액	① 잔 액		
(13) 말장 	생과세기간 	(14) 말장	냉당시 납부	득례세액	15)	1차년도	⑥ 2차년도	(40)	-(5)-(6)	

제3장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3쪽 중 제32쪽)

②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 ①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
 *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 3.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함계를 적습니다.
- 4. ③상호(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5. ⑤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 6. ⑥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 7. ⑦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 8. ⑧세율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 9. ⑨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熮산출세액란 및 ⑩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働기납부세액 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1. 근로소득 명세서

		소득의 지급자			
①소득구분 코드	②일련번호	③상호(성명)	⑤연간근로소득	⑥원천징수된 소득세	
		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산출세액의 계산

⑦과세표준	⑧세율	⑨ 산출세액(⑦×®)
	17%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 2 편 기장의무와 경비율

000000000000



제 1 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_ 53 제 2 장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규정 57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1 장부의 비치 · 기장 (법 제160조)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다만,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영 제208조 ⑤)

가. 복식부기의무자

아래 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간편장부대상자

- 1) 당해 과세기간(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욕탕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말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관련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3) 위 1) 및 2)에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함
 - 의료업, 수의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라.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고시 제2009-106호, 2015.7.31)

① 일자	② 거래내용		④수입(매출)		⑤ 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⑥고정자산 증감(매매)		⑦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
소계									

※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법§70④,영§131,규칙§65의2)

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단, 2015년에 발생하는 소득분까지는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도 제외]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제 2 장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1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법왕70④, 영황131, 규칙왕65의2)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명 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및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times 단순경비율 $) \} \times 배율 (2.4배 또는 3.0배)$

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15. 4. 17. 국세청 고시 제2015-9호)

1)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금액과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 ②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2) 증명서류의 종류

-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영수증 포함)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및 2015년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임
 -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업 종	계속사업자 직전수입금액	신규사업자 15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3억원이상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 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이상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기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이상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 일반율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 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 자가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0.4를 가산하여 적용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453000), 도소매업 (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621000, 630301~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 (659201~659900, 659902~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1~701700, 703011~713003, 749934, 921404, 930903),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마.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결과가 되어
- 과소신고 분에 대하여는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적용됨,
 -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2015년도 중 신규개업자
 - · 직전연도(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 ·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적용됨
- 기준경비율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없음
-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15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에 따라 코드번호(011001) 신설 및 기준경비율(13.2%) 제정됨

- *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011001)는 '14년 3월 신설
 - ·세분류: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 · 적용범위 및 기준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 등을 재배·생산하는 업(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제외)
 - · 비고 : `15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과세대상(소령 §9의4 2014.2.21. 신설 → 2015.1.1.부터 시행)

2 단순경비율 적용 안내 (법§70年) 영§131. 규칙§65의2)

가. 단순경비율 개요

-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 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 다만,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 1. 기준경비율 적용안내 → 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표 참고(p.59)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나.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소득금액 계산례》

O. A.	7 H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업 종	구 분	(계속사업자)	기본율	초과율	
외판원 (94090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45,000,000원	75.0 %	65.0 %	

45.000천원 - {40.000천원×75.0%+(45.000천원 - 40.000천원)×65.0%}=11.750천원

3)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453000), 도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621000, 630301~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1~701700, 703011~713003, 749934, 921404, 930903),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 *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90.3%) × 20% = 92.2%]
- 5)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15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코드번호(011001) 신설 및 단순경비율(93.5%) 제정됨
 - *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011001)는 '14년 3월 신설
 - ·세분류: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 등을 재배·생산하는 업(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제외)
 - · 비고 : '15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과세대생소령 §9의4 2014.2.21. 신설 → 2015.1.1.부터 시행)



제 3 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안내



.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_ 67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_ 75 제3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_ 78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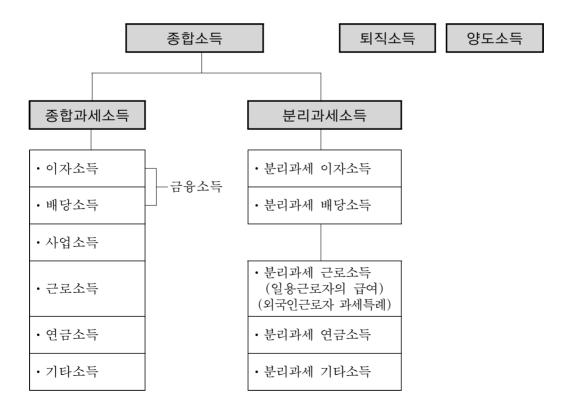
제 1 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소득의 구분과 종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 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그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 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1)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배당소득 총수 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 2)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3)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4)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5)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 3) 「국민연금법」등 일정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 문판매원 또는 음료품배달원으로서, 보험모집, 방문판매 또는 음료배달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함)
-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9) 위 1) 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 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10)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할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1) 외국기관·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국외에 있는 비 거주자·외국법인(국내지점,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소득세법 제156조의5)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 12)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 13)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3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가. 원 칙

소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을 신고기간이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신고기간은 그 다음 해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나.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소득세법 제74조)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상속인이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4 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가. 원칙 (소득세법 제6조)

-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나.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소득세법 제8조)

-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 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 2)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그 거소지 중 납세 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 3) 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 기관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 납세지의 지정 (소득세법 제9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지정받은 사업장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합니다.

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는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소득세법 제76조)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종합소득세 분납 (소득세법 제77조)

거주자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Ŀ	ř	번	डे								人	·입징수	- 7L 2J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크	15	1	납부	L연·	월	L'	부	구분	-		세된	7			7	H 797	-뒨시						
0126	10)1		10	505			1				10				140	종린 사	ll무서			011	976		
상호(성명)	₹	기공	평		사임	감자	(주	민)	등호	÷번	호			48	30203-**	**	***		일반회계	1	기획지	H정부:	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٨	너운	종	호-	7 3	를 로	5ય	**			전.	화			732-	123	34	회계연도 20			16			
귀속연도/ 기분 2015년 귀속 학정신고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세 목 명	그 납부금액 우체국에 납부					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탁형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П	(인터넷	[등	등에 의	니한 전	건자납부	가능	-)			
종찮소득세							1	1	0	8	2	0	0	\mathbb{I}				납브	부기한	20	16 년	5 월	31	जीव
														1					년	월		Æ	수납	인)
농어촌특별세																	은	행				지점	_	
계						₩	1	1	0	8	2	0	0				우	체국						

- 1면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2면 납부서(수납기관용), 3면 영수증서(납세자용)의 3면 1매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3면 모두 동일합니다.
- 합부번호: 분류번호 "0126→국세,국세청", 서코드 "관할세무서 3자리" (다음 쪽의 세무서코 드 참조), 납부연월 "[사례 2016.05 → 1605]", 납부구분 "1", 세목 "10"을 각각 기재합니다.(2016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수입징수관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명을 기재합니다.
- 계좌번호(6자리)는 세무서별로 다르며,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쪽의 "세무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주소란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회계연도는 "2016"입니다.
- 세목명은 "종합소득세"이며, 납부금액은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맨 끝자리(원단위)의 숫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예) 1,108,203원 → 1,108,200원 (주의 : 신고서에는 그대로 원단위까지 기재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서식40-(1)호 제3쪽⑪란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6.5.31일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를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	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 <u>좌번</u> 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_ 강	동	212	180629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릉	226	150154	보 령	313	930154	영 등 포	107	011934
강	서	109	012027	부 산 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거	창	611	950419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_ 경	산	515	042330	북 광 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_ 경	주	505	170176	북 대 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고	양	128	012014	북 대 전	318	023773	용 인	142	002846
공	주	307	080460	북 부 산	606	030533	울 산	610	160021
관	악	145	024675	북 인 천	122	110233	원 주	224	100269
광	주	408	060639	북 전 주	418	002862	의 정 부	127	900142
구	로	113	011756	분 당	144	018364	이 천	126	130378
_ 구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익 산	403	070425
_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인 천	121	110259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잠 실	230	019868
금	천	119	014371	서 광 주	410	060655	전 주	402	070438
_ 김	천	510	905257	서 대 구	503	040798	정 읍	404	070441
_ 김	해	615	000178	서 대 문	110	011879	제 주	616	120171
_ 김	포	234	023760	서 대 전	314	081197	제 천	304	090324
나	주	412	060642	서 부 산	603	030546	종 로	101	011976
_ 남 대		514	040730	서 산	316	000602	중 부	201	011989
_ 남 대		104	011785	서 인 천	137	111025	중 부 산	602	030562
남 양		132	012302	서 초	214	180658	진 주	613	950435
남	원	407	070412	성 남	129	130349	창 원	609	140669
남 인	인 천	131	110424	성 동	206	011905	천 안	312	935188
노	원	217	001562	성 북	209	011918	청 주	301	090337
논	산	308	080473	속 초	227	150170	춘 천	221	100272
대	전	305	080486	송 파	215	180661	충 주	303	090340
도	봉	210	011811	수 영	617	030478	통 영	612	140708
동교		232	023757	수 원	124	130352	파 주	141	001575
_동 대		502	040769	순 천	416	920300	평 택	125	130381
_동 대	-	204	011824	시 흥	140	001588	포 천	231	019871
_동	래	607	030481	신 광 주	233	023744	포 항	506	170192
_동 수		135	131157	아 산	319	024688	해 남	415	050157
	안 양	138	001591	안 동	508	910365	홍 성	310	930170
동을		620	001601	안 산	134	131076	홍 천	223	100285
동	작	108	000181	안 양	123	130365	화 성	143	018351
	형 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_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제 2 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농어촌 특별세법 제3조)

2 비과세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예 시〉

조문번호	내 용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번호	내 용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6조①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
제104조의8①③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 과세표준과 세율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 등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20%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4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입니다.

5 신고와 납부·환급

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환급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같은 신고서 및 납부서 사용), 확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환급됩니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으며, 소득세가 분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5백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기한은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납세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즉, 주소지 시·군·구입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며,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0.6\% \sim 3.8\%$ 를 적용합니다.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가. 지방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 세무서에 신고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행정안전부에 제공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각 도지사)을 거쳐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됩니다.

나. 지방소득세의 납부와 환급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므로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납부서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전국 우체국 또는 주소지 관내의 지방세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바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계상됩니다.

다.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징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이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지방소득세자료가 실시간으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송되므로, 위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 납부하기]→[신고내역]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4 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



.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_ 83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_ 86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_ 91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_ 142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_ 150
제6장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_ 168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1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개인별 합산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우리시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세율(6~38%)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 기장세액공제 · 무(과소)신고가산세 · 배당세액공제 등 · 무납부가산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 보고불성실가산세 + 가산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증빙불비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중간예납세액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납부(환급)할 세액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 (1) 신고서 제3쪽의 ●~❸ 기본사항 등을 적습니다.
 - 기본사항란은 누구나 다 적습니다.
 - 2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3**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 작성 또는 성실신고 확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2) 그 다음 앞 쪽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흐름에 따라 신고서 제5쪽 내지 제11쪽의 ⑤~⑧ 각 소득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⑤ 이자소득명세서**는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6 배당소득명세서는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사업소득명세서는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❸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는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3) 그 다음으로는 소득별 명세서를 기초로 신고서 제13쪽 **③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와 **⑩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4) 신고서 제17쪽의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를 작성한 후 신고서 제15쪽의 **●**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5)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①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⑧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⑩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②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 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 (6) 신고서 제19쪽의 **② 세액감면명세서**, **③ 세액공제명세서**, **②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 (7) 신고서 제21쪽의 15 가산세명세서, 16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8) 위 각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고서 제3쪽의 **4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
- (9) 신고서 제3쪽 하단에 신고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10)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의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하나의 납부서에 같이 기재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제 2 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신고서 제3쪽의 **●**기본사항,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③** 세무대리인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견 본 〉

관리번호 -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자국 기주자국코드																		
●기본사항																		
①성 	명		나 성 식	②주민등록번호	6	6	0	3	0	5	_	1	*	*	*	*	*	*
3주	③주 소 서욱시 양천구 신목 로 ***																	
④주소지전화번호 <i>02-123-4567</i>							⑤사업장전화번호 070-1234-5678											
⑥ 휴 대	전	화	010-1234-1678					자	우	편 주	주소							
8 신 고	. ^	형	<u> 1</u> 2위	부조정 [3성실납세 [1	4성실	신고혹	확인 [20 간	편정)부 [3	31 ネ	ij-기준	-율 3	2]추계-	단순	율 401	비사업	자
9 기 장	- 의	무	복식무기의 1	**		2긴	편장	부디	귀상	·자				3 н	사업	라		
⑩ 신 고	구	분선	행정기선표	200수정신고 30기	경정치	성구	40	기 현	한후	·신고	<u>1</u>	50キ	가신	고(인	정상	여)		
② 환급금 / (2천만원 미	–		⑪금융회사/	/체신관서명				12)계3	라번.	호							
3 세 [무	①성	명		(4) 업자등록번호		-		_	-				①5·전	보화번	호			
대리인	16 대	리구분	[] 기장 [2] 조정	3신고 4확인 17	관리반	ोंट	-					18조	정반	번호	-	-		



1 기본사항 기재요령:1호 - 기본사항은 누구나 다 기재합니다.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납세지(주소지)를 각해당란에 적습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신고서로 제출하며, ①성명 및 ②주민등록번호는 피상속인의 것을 적고, ③주소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등이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신고서 3쪽의 신고인 란에는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및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고 서명 날인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인 란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고 서명 날인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①성명은 단체의 이름, ②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고, ③주소는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는 신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 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 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법§70④, 법§70조의2, 영§131·§132).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2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4, [12, [11], [20], [31], [32], 40 의 순서에 따라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신고유형	내 용
[1]자기조정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외부조정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4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⑩간편장부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③1]추계-기준율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322추계-단순율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40비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경우

⑨ 기장의무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는 ①복식부기의무자 또는 ②간편장부대상자 중 해당란에 ○표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②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③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⑩ 신고구분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내 용
10정기신고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 2015년 귀속분에 대해 2016년 5월에 하는 신고가 여기에 해당함



신고구분	내용
⑩수정신고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당초의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하는 신고(국세기본법 §45) 법정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일정비율(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을 경감(§48)
301경정청구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에게 그 경정을 청구하는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45의2)
40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그 기한 후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1개월 이내 : 50% 감면, 1개월~6개월 : 20% 감면(§48)
50추가신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받게 됨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 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금 계좌는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이므로 반드시 신고인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금융회사/체신관서명란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명, 우체국명 등을 적고,
- ① 계좌번호란에 예금계좌번호를 적습니다.
 HSBC 등 일부 외국계은행 계좌로는 이체되지 않으므로 그 이외의 금융회사 계좌를 적습니다.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 ③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가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⑥ 대리구분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대리구분	내용
1] 기장	세무사가 기장을 한 경우 기장과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2 조정	세무사가 기장은 하지 아니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계산서 ·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3 신고	세무사가 신고서만을 작성한 경우
4 확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와 기장·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③ 성명, ⑭사업자등록번호, ⑪관리번호 : 세무법인·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이 소속된 본점의 상호 등을 적고, 개인으로 구성된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해당 세무대리인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2명 이상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에는 조정과 신고를 모두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고, 신고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조정을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습니다.



제 3 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1 이자소득명세서

신고서 제5쪽의 **6**이자소득명세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본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외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견 본 〉

6 •	⑤ 이자소득 명세서											
1	2	0]자 지급자									
소득 구분 코드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이자소득 금액	⑥원천징수된 소득세							
11	1	(주)한국	101-**-***	5,000,000	1, 250, 000							
11	2	ય૦૦	231212-1*****	3,000,000	750,000							
3%계				8,000,000	2,000,000							
13	1	○○은행 ××지전	102-**-***	1,000,000	140,000							
15	1	(주)××	(홍콩법인)	2,000,000								
			이자소득 계	11,000,000	2, 140, 000							

① 소득구분 코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된 것) : 소득구분 코드 11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구분코드 15)이외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것 : 소득구분 코드 12
- 그 밖의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3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5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6
-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구분 코드 17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이자소득금액

이자의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총이자액을 적습니다.

⑥ 소득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2 배당소득명세서

신고서 제7쪽의 ⑥배당소득명세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국외금융소득 등), 출자한 공동사업에서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견 본 >

6	⑥ 배당소득 명세서							
1	2	배당 지급법인		배당가산액	(Gross-Up)	(8)	(9)	
① 소득 구분 코드	일련	③ 법인명	⑤배당액	6	⑦ 가산액	배당소득금액	_	
코드	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대상금액	(⑥×가산율)	(5)+7)	소득세	
21	1	(주)한국 101-**-****	20,000,000	20,000,000	2, 200, 000	22, 200, 000	2,800,000	
22	1	(구) O O 111-**-****	20,000,000			20,000,000	2, 800, 000	
26	1	(구) xx (익본 법인)	9,000,000			9,000,000		
28	1	△△광고 212-**-****	4,000,000			4,000,000	1,000,000	
		배당소득 계	53,000,000	20,000,000	2, 200, 000	55, 200, 000	6,600,000	

① 소득구분코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하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1
- 배당가산(Gross-Up)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2
-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구분코드 26)이외의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3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6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8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9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법인명·④ 사업자등록번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 **배당액**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배당액을 적습니다
-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1/100를 가산(Gross-Up)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됩니다.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제외한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이자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서 배당가산하지 않는 다음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 하는 주식 등의 가액
- 법인세법 §51의2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 회사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감면을 받는 다음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아래의 산식에 의한 비율(위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해당하는 금액

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세 특례제한법 §63의2)
- ▶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121의4)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의8·121의9)
- ⑦ 배당가산액 : 적용대상 금액(⑥) × 가산율(100분의 11)
- ⑧ 배당소득금액 : 배당액(⑤) + 배당가산액(⑦)
- ⑨ 소득세: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3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사업소득명세서는 본인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 사업소득명세서													
<u></u> ① 소	늘 득	구	분	코	드	30		30		30		40	
(2) <u>9</u>	1	련	Ę	<u>મ</u>	호	1		2		계			
③사		소	소 재 지			경기 고양		서욱 종로구				서욱	종로구
업		1.	^∏ 	재 지		충장형	2 **	샤익디	H 로 **			샤익다	세호 **
장 	국내1	/국외() 소	재지국	코드	1		1				1	
④ な	}-				ই	덕양	ર્યાપ્ર	낙원	MIA		낙원약		ļ약국
⑤ A) 업	자 ·	등 록	번	호	128-**-	****	101-**-***		101-**-*		-****	
6 7	']	장	9		무	(예)봑	4471	(예) 복식부기		((예) 년	심부기
7	신 고	. 유	형	코	드	12 12					12		
8 3	8 주 업 종 코 드		701201 70		701	701201			523	3111			
9 3	⑨ 총 수 입 금 액		36,00	0,000	120, 500, 300		156, 500, 300 28		285,4	56,000			
10 필 요 경 비			13, 15	0,000	55,069,100 68,3		68, 2	19, 100	311, 652, 000				
	: 득	금	액	(9-	10)	22, 850, 000 65, 431, 200		88, 2	81, 200	△26, 1	96,000		
<u>12</u> z	} 세	7]	간 가	시	일	15.	1. 1	15.	1. 1			15.	1. 1
③ 과 세기 간 종료일			15. 12. 31 15. 12. 31				15.	12.31					
14		성			명								
대 _공동시	표 -업자	주 5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주 5	민 등	록 번	호								
(5	성			명								
특수관	계인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주 5	민 등	록 번	호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구분 코드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1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0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1
-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국내인 경우 코드를 적지 않습니다. (※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US
- ⑥ 기장의무는 사업장별로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 ③비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신고유형 코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가 직접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자기조정) : 11
- 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외부조정) : 12
-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성실납세) : 13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성실신고확인) : 14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1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2

⑧ 주업종 코드

주업종의 코드를 적습니다. 주업종 코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 및 ⑪ 소득금액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장부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와 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다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한 후의 금액(소득세법상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한 다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적습니다.

*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 (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⑪과 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⑩ 필요경비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8)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6)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8)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20)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9) 총수입금액에서 (10)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① 소득금액 =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⑨총수입금액에서 ⑩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⑩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②2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⑬ 과세기간 종료일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2015.1.1.로 적고, 과세기간 종료일은 2015.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인 경우에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특수관계자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과세하고 있으나, 거주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 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3조)이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가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그것도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합니다.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 1명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배우자, 직계존속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친족을 말하며, 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견 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⑥ 일런 번호	원천징수자 또	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⑰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① 소득세	②D 농어촌특별세				
1	국민건강보험공단	105-**-***	1, 234, 560					

16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줄에 합계를 적습니다.

① 상호(성명)·⑧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를 적습니다

① 소득세·②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원천 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다음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 구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음식점·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하여 적는 경우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5%를 원천징수합니다.



나. 사업소득

1) 총수입금액

가) 사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 §19. 영 §31조 부터 §37)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 및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②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③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④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⑤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⑥ 건설업(주거용건물건설업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⑦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⑧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⑨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①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② 부동산업 및 임대업(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외) 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과 유사하나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

-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 광업권자 등(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 ▶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 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 ▶ 공장재단과 분리된 기계 등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5)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노인학교는 제외
- (b)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⑩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함
- ® 협회 및 단체(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는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②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 하여 얻는 소득

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제39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사업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매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구	분	수 입 시 기				
상품・제품・기타	일반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생산품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일정기간 내에 반송·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특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부동산 제외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상품 등의 장기할	부 조건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봄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				
건설 • 제조 기타 •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계약기간 1년이상 장기건설: 작업진행율 기준 *계약기간 1년미만 단기건설: 작업진행율 적용 가능				
무인판매기에 의한	한 판매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입하지 아니함				



Ŧ	· 분	수 입 시 기
어음의 할인		어음의 만기일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도일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 해진 것	그 정해진 날
자 산 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 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소득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 ·화해 등으로 받게 되는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날로 한다.
*건물건설	하지 아니하는 자산 널업과 부동산개발 업의 부동산 포함	대금 청산일 *대금청산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며, 총수입금액 산입항목과 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총수입금액 산입항목(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합니다.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
-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
-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소득세법 제25조제2항)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2)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개) 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부동산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보증금등"이라 하며,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 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간주임대료 = (해당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 - 3억원^{주1})의 적수 × 60/100×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 주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 부터 순서대로 빼다
 -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함
 - ②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함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 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간주임대료 = (해당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 - 3억원^{주1})의 적수×60/100×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

- 주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
- ②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달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

• 적수의 계산

적수란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등의 적수는 매일의 해당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매월 말일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 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기준시가에 임대보증금 등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 으로 합니다.

2015년 귀속 부동산임대업(주택제외)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유의 사항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 ▶ 2015년 과세기간부터 : 2.5%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일수
 - ▶ 2015년 간주임대료 적용일수는 365일이므로 아래와 같이 간주임대료 계산
 - ▶기장신고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times 1/365 \times 2.5\%$ -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배당금

▶ 추계신고

보증금 × 임대일수 × 2.5% × 1/365

- (3)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소득세법 제26조)
 -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금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전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
 -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가스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업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다만, 원재료・ 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제외)
- •국세,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
-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

2) 필요경비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가) 필요경비의 범위(소득세법 제27조, 영 제55조)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 또는 부동산(주거용건물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함)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합니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
-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및공급업의 경우만 해당).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임업의 경비(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설비비, 개량비, 임목의 매도경비)
- 양잠업의 경비(매입비, 사양비, 관리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 가축 및 가금비(종란비, 출산비, 사양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 종업원의 급여 등
-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손
- 대손금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대여금 또는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 등
- 거래수량 ·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재해손실자산의 원가
-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비 · 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
-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 광고선전비[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2014.12.31.이전 지출분은 5천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의 경우에는 연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2015년 지출분부터 적용)
- 기부금으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4조)
-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5조)
- 준비금과 충당금. 기타의 필요경비
-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 가액

나)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8조)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상 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액 = 기말채권잔액 × 설정률

- *설정률: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것
- *대손실적률=당해과세기간의대손금 ÷ 직전과세기간 종료일현재의 채권잔액

(2) 대손충당금의 환입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다음 연도에 실제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며, 실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연도말에 전부 환입합니다.

- (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대가의 미수액
 -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각호의 회계 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9조)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은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① 1년간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5%
- ② 퇴직급여 추계액×5% 퇴직급여충당금 잔액+퇴직금전환금 납부액
- * 퇴직금전환금 : 1999. 3. 31 이전 납부 잔액
- *퇴직급여 추계액: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추계액
- (2) 충당금의 상계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합니다.
- 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 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가 상각비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에 따라 세법 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1) 감가상각의 요소
 - (개) 취득가액의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① 매입한 고정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② 자가건설한 고정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③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 자본적지출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나) 잔존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0"으로 함. 다만.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보아 계산한 상각률에 의하여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취득가액의 5%)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합니다.

(대) 내용연수

세법에서는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만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결정하여 신고합니다.

- *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사업개시 연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기존의 자산과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취득일이나 새로운 업종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
- (2) 감가상각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 (가)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자산별	유형	고정자산	무 형	광 업 권,	광 업 용
신고구분	건축물	기타유형 고정자산	고정자산	폐기물매립시설	유형고정자산
신 고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무신고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 * 폐기물매립시설은 2015.2.3. 이후 폐기물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내) 기타 무형고정자산 상각방법

자 산 별	상 각 방 법
개 발 비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 월수에 비례하여 상각(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사용수익	당해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
기부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주파수이용권 및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
공항시설관리권	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3)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기상각액) × 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또는 취득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매립한 양 : 매립예정량

(4) 갂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 및 한도미달액의 처리(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개)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상각부인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연도에 사업자가 계상한 상각액이 한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내) 감가상각비의 한도 미달액(시인부족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상한 금액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시인부족액을 세무서장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까지의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부인액 중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례】

전기 부인누계액	당기상각범위액	당기상각액	당기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전기부인누계액 중 당기시인부족액(30)은 필요경비로 추인되며 나머지금액 (70)은 차기이월됩니다.

(5)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시부인(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합니다.

- (나)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됩니다.
- (6) 즉시상각 의제(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개) 즉시상각의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일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필요경비 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시부인 계산합니다.

(나) 소액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거래단위별 취득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대)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라) 어구 등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 시험기기 · 공구(금형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측정기기 및 간판 등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마)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를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접대비와는 무상적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및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부양가족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이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도 해당사업자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포함합니다.(소득세법 §34④)

- (1) 법정 기부금(소득세법 §34②)
- (개) 필요경비 산입한도

필요경비 산입한도 = 기준소득금액^{주1} - 이월결손금 ** 주1 : 기준소득금액 =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법정·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전)

(나) 기부금의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 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 건국유·소·중·고등학교,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금강학원소중고등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동경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브라질 한국학교, 상해한국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젯다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2)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기부금
- (개) 100% 공제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76)
 - * 10만원 이내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① 필요경비 산입한도

필요경비 산입한도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30%

- ② 기부금의 내용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 (3) 지정기부금(소득세법 §34①, 영 §80①)

(개) 필요경비 산입한도

- 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① + ②
 - ①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10%
 - ② Min(¬, □)
 - ①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20%
 - ① 종교단체 외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 나.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30%
 - (나) 기부금의 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 36①)

-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 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 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홍단체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 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2014.1.1.이후 지정기부금 단체 등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가.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 하는 기부금
-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 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혐회에 지급한 회비
- 4.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
- 5.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자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공익법인신탁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 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공익법인 기부신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4) 기타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말하며, 이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5)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개) 법정기부금 : 5년(2012.13.31~2013.12.31. 기부분은 3년)

- (내) 지정기부금: 5년
-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바)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

「접대비」는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향응·위안·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 (1)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소득세법 §35, 영 §83~§85)
 - (7)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당해 과세기간 월수/12)
- ※ 단. 2015.1.1.부터 2016.12.31.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중소기업은 2.400만원
- ②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적용률 × 20%)
 - 월수의 계산 :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수입금액별 적용률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0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00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3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 (당해 과세기간 월수/12) ×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합산액)
- ※ 단. 2015.1.1.부터 2016.12.31.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중소기업은 2.400만원
- ②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 적용률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업종)에 의하여 판단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당해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 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 (2)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36③, 영§130)
- (개) 개요

내국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추가 손비 인정

(나)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인정

추가 손비인정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 (접대비 지출 총액 × 1%)
- ② 일반 접대비 한도액 × 10%

(다) 문화접대비의 내용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

-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비디오물 또는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구입
-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구입

사) 소득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 중에는 특정사유로 인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소득분
- ②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상당액 포함)와 과태료
- ③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④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
- 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봅니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 (당해과세기간중 초과인출금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 * 초과인출금=부채의 합계액-사업용자산의 합계액
- ⑥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⑦ 고정자산 등에 대한 평가차손. 다만,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이나 채굴불능으로 인한 폐광으로 인해 고정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⑧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다음의 매입세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매입 세액
- ①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②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③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필요경비 불산입)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와 그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 (A) 선급비용
- ⑤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1)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제2편 제2장 참조
- 2)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요령
 -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 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⑨란. ②~\mathbb{\mathbb{\omega}} 한. (10~\mathbb{\omega})한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 1. ①소득구분코드란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30"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으로 적습니다.
- 2. ②일련번호란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작성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업태/종목·⑧업종코드·⑨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항목에 업종별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항목에 작성합니다.
- 4. 매입비용(22~25)과 임차료(26~29)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정규증빙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② · ② 라에 적습니다.
 - 나.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입한 금액을 24·28라에 적습니다.
 -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②·2위라에 적습니다.
- 5. 인건비(30~33)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③1 란에 적습니다.
 -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은 330란에 적습니다.
- 6.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과 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은

-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7.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란은 "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웹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8. [4]라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18]라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 9. ⑲란은 1에서 ⑱란의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10. ②한은 ⑤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복식부기의무자 : 3.0, 간편장부 대상자 : 2.4)"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11. ②라은 ①라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①라의 기준소득금액과 ②라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주요경비의 범위·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 등은 제2편 (기장의무와 경비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소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⑤란은 ⑨수입금액에 ⑭기준 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소령 §143 ④)



〈사 계〉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계(30)
② 일 련 번 호										1
		(3)	사 업 장	♪ z						경기 고양
			71 H 6	<u> </u>	·					충강코 **
		(1)	과 세	7]	간					2015. 1. 1.부터
		•	-1							2015. 12. 31. 까지
		(5)	상		ই					덕양벡딩
		6	사 업 자 등	등 록 1	번 호					120-01-****
		7	업 태	/ 종	목		/		/	부동산/입대
		8	업 종	코	드					701201
		9	총 수 약	급 금	액					36,000,000
		주	⑩ 기초재그	고자산여	에 포함된 주요경비					0
		요	⑪ 당기에	지출힌	· 주요경비(=③)					4, 294, 000
기	필	경	① 기말재그	고자산여	에 포함된 주요경비					
준 소	요 경	則	③ 계(⑩+	11)-(1	2)					4, 294, 000
득 금	비	기준	- - 경비율에 의	하여	④ 기준경비율(%)					22.2%
			계산한 경비		① 금액(⑨× ⑩)					7, 992, 000
액			16 필요기	경비 겨	(13+15)					12, 286, 000
⑦ 기준소득금액(⑨-⑥)(♡" ♡")								23,714,000		
비교	비교 단순경비율에 의해 ⑧ 단순경비율(%)								38.4%	
소득	계	산한	소득금액	19 7	금액 {⑨×(1-⑱)}					22, 176, 000
금액	금액 ᠓비교소득금액(⑲×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66, 528, 000		
	21)	소득금	구액 (⑰ 또는	· 20중	적은금액)					23,714,000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22	4, 294, 000	23	4,000,000	24		25	294,000
임 차 료	26		27)		28		29	
인 건 비	30		31)		32		33	
계(34=11)	34)	4, 294, 000	35	4,000,000	36		37)	294,000

※ 첨 부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3)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 1.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의2제1항

-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2. 거래상대방이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의2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시행규칙」제95조의3

-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사 계》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①상호	덕양넥덩	②사업자등록번호	128-01-****
③성명	칭 공 평	④주민등록번호	480203-*****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⑤일련 거래처(공급자)		 내처(공급자)	8	9	(1)
번호	⑥상호 (성명)	⑦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매수	거래품목	거래금액
1	00건자재	128-**-***	1	페인트	100,000
2	00벽지	128-**-***	2	벽지	194,000
	7	1)			294,000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4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신고서 제11쪽 **8**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는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아니합니다.

〈 견 본 〉

❸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명세서

1	2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u> </u>	(6) (5) (7) (1)	@ & E 7 All	원천징수 납세조합정	
소득 구분 코드	일련 번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⑦소득금액 (⑤-⑥)	8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51	1	ᆈ주식헌사 108-**-****	10,000,000	6,500,000	3,500,000	39,600	
60	1	ᢧ구식회사 123-**-*****	10,000,000	8,000,000	2,000,000	400,000	
60	2	<i>9</i> 주식회사 223-**-****	10,000,000	8,000,000	2,000,000	400,000	
60	3	ħ주식회사 203-**-****	10,000,000		10,000,000	2,000,000	
ઢેદ્વ			30,000,000	16,000,000	14,000,000	2,800,0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구분 코드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 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 연금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66
-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61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 6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 61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런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런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런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상호(성명)·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 또는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 사무소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총수입금액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⑥ 필요경비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소득공제액〉(연 900만원 한도)

총 연 금 액	연 금 소 득 공 제 금 액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⑦ 소득금액 = ⑤ 총수입금액 ⑥ 필요경비
- 8 소득세·9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나.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 공로금 •퇴직위로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3)

1) 연금소득의 범위

가) 과세대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
- 그 밖의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나) 비과세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 유족연금, 장애연금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별정우체국 :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연금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2) 연금소득의 계산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3)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50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로 합니다.

- ①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②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따른 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
- ③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4) 분리과세 연금소득(소득세법§14 ③ 9)

-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해야합니다.
- ② ①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 ④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



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 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 ⑥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⑦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각호에 규정된 사업소득 이외의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을 포함
-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⑨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 하고 받는 금품
-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화 시 지급받는 이자
- ①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②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③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④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등

- (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① 사례금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B)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B), (B), (D) 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② 연금외 수령한 소득
- ②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23 뇌물
- ②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②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구 분	수 입 시 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 상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대금청산일, 자산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 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또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 되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위 이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7조, 시행령 제87조)
- 가) 지급받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등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등 대가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나) 기타

-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등 : 당해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다)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 위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5) 분리과세 기타소득

- 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자기불입분 및 운용수익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 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 배당금품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에 의한 신용카드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 나) 당연 종합과세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위 가) 및 나)를 제외한 기타소득과 위 나)의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의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된 때에는 위 가) 및 나)를 제외한 기타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 *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 합산이 유리한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음
 - 합산이 불리한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됨
 -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 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9**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는 각소득별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식으로, 사업소득의 결손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견 본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부동산 임대업 (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③부동산	금 공제금액 ④부동산 임대업 (預배업체의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이 자 소 득 금 액	11,000,000				11,000,000
배 당 소 득 금 액	51, 400, 000				51, 400, 00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4,000,000				4,000,000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 업 소 득 금 액	88, 281, 200	26, 196, 000	9,000,000		53, 085, 200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 업 소 득 금 액	-26, 196, 000				0
근 로 소 득 금 액	3, 500, 000				3, 500, 000
연 금 소 득 금 액					
기 타 소 득 금 액	14,000,000				14,000,000
합 (종합소득금액)	145, 985, 200	26, 196, 000	9,000,000		136, 985, 2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별 소득금액

신고서 제5쪽부터 제11쪽까지 ⑤~⑧ 각 소득별 명세서의 각 소득금액을 옮겨적고 이를 합계합니다. 즉, ⑥이자소득 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 ⑥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 ⑦사업소득명세서의 ⑪소득금액, ⑧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⑩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②)에 적습니다.

- ②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이를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 결손금을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원천 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 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 ③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에서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지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근로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 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 이월 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를 결손금 통산 규정과 일치시킴(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④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그 후 10년간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므로,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발생한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지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① - ② - ③ - ④)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0"으로 적으며, 그 남은 결손금은 ⑩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의 이월 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나. 사업소득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소득세법 § 45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여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 결손금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할 때 배당소득・이자소득 중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공제여부 및 공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명세서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부터 10년간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부터 10년간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제외)의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⑩**이월결손금 명세서는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발생과 공제내용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1) 0 $\frac{6}{1}$	❶ 이월결손금명세서								
	이월결손금	금 발생내역	3						
구 분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전기까지 공제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 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⑦ 잔 액		
부동산 임대업(주 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2012	10,000,000	7,000,000	3,000,000					
부동산	2013	6,000,000		6,000,000					
임대업(주 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발생 과세기간 · ② 발생금액

직전 10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순차로 적습니다.

③ 전기까지 공제액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④ 당기공제액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공제액의 합계액은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의 금액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⑤ 소급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에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별지 제40호의4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⑥ 그밖의 공제액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잔액

각 과세기간별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적습니다. (② - ③ - ④ - ⑤ - ⑥)

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은 보통 그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10년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그 직전과세기간



으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합니다.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결손금소급 공제세액의 환급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2).

2)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

가) 신청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의 제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 서식)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결손금 중소급공제할 금액의 결정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 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①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②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직 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과세 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4)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 ① 이월결손금란은「소득세법」제45조제3항(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제외)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 ①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란은 이월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③종합소득과세 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6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라과
- ① 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란은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16시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14종 합소득산출세액 × 각사업장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B)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3)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①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소득금액산출세액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별지 제40호의4서식]	(앞 쪽)
3 3 3 -	

*	관	리번호 -			Ą	결손	금소	급공	제세약	객혼	한급신	[청.	서		처i 즉	리기간 시
		① 성	 명						② 주	민등	등록번	호			'	<u>'</u>
신청	인	③ 주											(2	:)
						신	청	내	용							
<u>4</u> ة	H 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9 5	직전	과세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u>6</u> 5	7			분		사 임	す 장 ((1)		사 업	장	(2)	합		계
사 업	⑦성	} .			호											
입 장	⑧ 시	나 업 지	- 등	록 1	헌 호											
0	9٨	나 업	장 :	소 :	재 지											
해당	100	일 월	결	손	금											
과세	(I)\	나 업 징	- 별	결 4	손 금											
기간	①소	급공제를	받으려	는 이월]결손금											
	13 =	중합 소	득 과	박세	표 준											
직전	14 3	중합 소	득 신	<u></u> 출 /	네 액											
과세	15 2	종합 소	득 곁	를 정 <i>/</i>	네 액											
기간	16人	사업장별 중	종합소-	득산출	·세액											
	①7	사업장별 ·	종합소	득결정	성세액											
	183	· 산급공제 후	드 종합/	소득산	출세액											
환급	19소	그급공제 후 사	업장별 종	음합소득신	난출세액											
세액	20 3	· 급공제	기가 능	액(16	<u>—(19)</u>											
계산	21) 3	· 급공제] 한 도	. 액 ((7)											
	<u>2</u> 2 इ	한급세액(20)과21) -	중 작은	은 금액)											
		국세환	급금계	좌신고	1_			신고인	은「소득	세	법 시행	령」	제1493	돈의2제3	항에	따라
		예입처		은행	본•		_		급공제세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	급			보도하였. 기재하					는 사실	! 그	대로들
\-\-\-	0//	게러 단포					。	ا ۱۷۱۱	기/개의 년		크르 ㄱ 월 仺		1 - 1 - 1.			
						신	청	인				_ ((서명 :	또는 인	<u>]</u>)	
세무	나대리	기인은 조기	네전문	자격지	로서 위	신:	고서를	를 성실	하고 경	당정	하게 3	작성	하였음	-을 확	인합	니다.
						.,	무대리 리번	_				([서명]	또는 인	<u>l</u>)	
				į	레무서징			Y.,			•				,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²)

제 5 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의 공제(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가 있습니다. 신고서 제15쪽의 ① 소득공제명세서는 이러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는 표입니다.

< 견 본 >

(31 15)

① 본 인 1.500,000 연 금 ③ 국 민 연 금 2.040,000 본 경로 및 배 우 자 1.500,000 보험료 공 제 ③ 부양가족(금 의 부험료 공 제 ④ 경로우대자(명) 등 장 애 인(명) ⑤ 강 애 인(명) ⑥ 부 녀 자 별 (① 구택자금 공제 ④ 기부금(이월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① (② ~④)) 등 부 모 가 족 ⑤ 전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 경공평 1 680202-1**********************************	10)	(01											세서	공제명	소득	•
구 분 명 역 구 분 급 역 구 분 급 연 기본 인 1,500,000 연급 (9) 국 민 연급 2,040,00 보험료 공제 1,500,000 보험료 공제 1,500,000 명 (9) 중 약 연급 이 자 비용공제 (1) 주택당보노후연급 이 자 비용공제 (1) 주택자금 공제 (1) 구택자금 공제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구로소득이 있는 자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구로소득이 있는 자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구로소득이 있는 자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가능적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가능적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가능적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구로소득이 있는 자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가능적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가능적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가능적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가능적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구락로소득이 있는 자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가능적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구락로소득이 있는 자 (1) 구락금(이월분) 공제 가능적 (1) 구락로(1) 구락으(1) 구락							H]	두공/	소닉	소득세법 상						
인 지 (2 배 우 자 1.500.000 보험료 공 제 (1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의 가 비 용 공 제 (1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이 가 비 용 공 제 수 (4 경로우 대 자 명) 등 장 애 인(명) (1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이 가 비 용 공 제 (1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1 공무원·물인·물연금 이 가 비 용 공 제 (1 공무원·군인·기 본 기 등 대 용 공 제 (1 공무원·군인·기 본 기 등 대 용 공 제 (1 공무원·군인·기 본 기 등 대 용 공 제 (1 공무원·군인·기 본 기 등 대 용 공 제 (1 공무원·군인·기 본 기 본 기 등 대 용 공 제 (1 공무원·군인·기 본 기 본 기 등 대 용 공 제 (1 공무원·군인·기 본 기 본 기 본 기 등 대 용 공 제 (1 공무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1 공무원·군인·기 본 기 본 기 본 기 본 기 등 대 용 공 제 (1 공무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1 공무원·결정우체국연금 (1 공무원·결정우제국연금 (1 공무원·결정우 (1 공무원·결정우제국연금 (1 공무원·결정우 (1 공무원·결정유 (1 공무원·결정우 (1 공무원·결정우 (1 공무원·결정유 (1 공무원·결	백	금 액			분		구			금 액		분		구		
전 2 배 우 자 1.500,000 보험료 공 제	0C	2,040,00	금	연	!	민	9) 국	금	여	1,500,000	인		_	1) }		
인 제 ③ 부 양 가 족 (3 명) 4.500.000 ① 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 자 비 용 공 제								료 (1,500,000	자	우	iĤ	2 1	본	
(월) 무택자금 공제 (월) 무택자금 공제 (월) 기부금(이월분) 공제 (경) 구택자금 공제 (월) 기부금(이월분) 공제 (경) 구택자금 공제 (권) 기부금(이월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报) 구로소득이 있는 자 (报) 구로소득이 있는 자 (报) 구로소득이 없는 자 (합) 무별 공제 구로소득이 없는 자 (합) 무별 공제 구로소득이 없는 자 (권) 구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명 내외 구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 등) 관계 성명 대외 구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 등) 관계 상명 대외 구민등록번호(외국인용 등) 관계 상명 대외 구민등록번호(외국인용 등) 관계 상명 대외 구민등록번호(외국인용 등) 관계 상명 대외 관계 수입 등 관계 상명 대외 관계 수입 등 관계 상명 대외 관계 수입 등 관계 상명 대외 관계 수입 등록 변호(외국인용 등) 관계 상명 대외 관계 수입 등록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 관계 상명 대외 관계 수입 등록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 관계 상명 대외 관계 수입 등록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 관계 상명 대외 관계 수입 등록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 관계 상명 대외 관계 수입 등록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 관계 상명 대외 관계 수입 등록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 관계 상명 대외 유민용 등 관계 수입 등록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 관계 수입 등록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을 변호 등을 변호 등을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 관계 수입 등록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을 변호 등을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을 변호 등을 변호 등을 변호(외국인용 등록 변호 등을								11)		4,500,000	명)	가 족(3	후 양	3 1	제	인
공 가 공 ⑤ 보 녀 자 별 (③ 주택자금 공제 제 ⑦ 한 부 모 가 족 표를 보고 로소득이 있는 자 (②~④) 제 용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7.500.000 지 한계 (⑥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 0 최공평 1 6 8 0 2 0 2 - 1 * * * * * * 4 최성공 1 9 9 1 1 0 5 - 2 * * *					제	! 공기	보험도	12)	특		명)	- 대 자(경로 우	4 7	추	전
공 전				ᆐ	공>	·금	주택지	13			명)	레 인(상 이	5 7	가	'
○ 제 ⑦ 한 부 모 가 족 제 ② 한 부 모 가 족 ※ ○ 전공제계(①~⑦의 합계) 7,500,000 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전 본 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 0 최공평 1 680202-11*********************************								(14)	별		자	녀	부	6	고	7
제 8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7,500,000 지 등 특별 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합계			자				근로	(15)			족	모 가	한 부	7	1 -	0
관계 성명 내외 국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명 내외 국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 5 이 최공평 1 6 8 0 2 0 2 - 1 * * * * * * 4 최성공 1 9 9 1 1 0 5 - 2 * * *			자	없는	·이 (⑭)	소득 (근로	특별 공제		7,500,000	합계)	1)~⑦의	제계((민적공	8 9	제
0 최공평 1 680202-1***** 4 최성공 1 991105-2***											세	자 명	대 상	공 제	<u>l</u> 적	<u>16</u> 9
	호 등)	국인등록번호	번호	민등록			명	성		외국인등록번호 등)	번호(의	주민등록		명	성	관 계
	* * *	- 2 * * * *	0 5	9 1 1	9	1	성공	최	4		0 2	6 8 0 2	1	뎡	최공	0
		-										1 1 1		_		
3 김행복 1 7 2 0 4 0 5 - 2 * * * * * *		-														
4 최길동 1 980211-1*****	Ш,	<u>- </u>									1 1 1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E: 소드	관계코드	* 3
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 =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제자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18 코드	⑨ 금	액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②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②)	23	소득공제 종 초과액	중합한도				

1 각 항목 기재요령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별지 제37호 서식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소득 공제신고서를, 기부금이 있는 경우(이월분)에는 별지 제45호 서식 기부금명세서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기재합니다.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①~③)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② 추가공제(④~⑦)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 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를 공제합니다.
- ① 국민연금 이외에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 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②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 ③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워리금 상화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④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①~②)는 관련 제목(조문)을 ① 조세특례 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⑨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②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 번호를 적고, ⑧ 코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가. 인적공제

1)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 가)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공제
- 나) 부양가족공제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 분	요 건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55. 12. 31. 이전 출생)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1995. 1. 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18세 미만)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 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며느리, 제수, 형수 등)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쪽에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 위탁아동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18세 미만)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5.12.31. 이전 출생)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장애인의 범위 및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 장애인의 범위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소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공제시 제출할 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에 한함): 50만원
- 라) 한부모 소득공제 : 100만원

나.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1) 공제 대상

거주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다음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 공제 금액

연간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전액을 공제

3)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장가입자중 근로자는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4)

1) 공제 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범위

공제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3) 공제 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며, 이때도 연금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제출서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라.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 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 제4항)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서로 공제 대상금액 및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 분	공 제 한 도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⑤ 주택마련저축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300만원 ⓐ+ⓑ+ⓒ≦300·500·1,500·1,800만원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1) 공제대상 및 공제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2) 주택임차자금의 요건
 - (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내)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5%, '14.3.15.~'15.3.12.까지는 2.9%, '13.2.23.~'14.3.14.까지는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3) 공제한도

주택임차월세액 공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1) 공제대상 및 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12.31. 이전 차입분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 (개) 다음 ① ·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 * ①·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다만, 2000.11.1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F)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ii)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상환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m) 위 (가)의 ① 및 ②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연장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이 경우 (가)의 ①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ii)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분양가격 등이 4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2013.12.31. 이전 차입분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이 경우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 주택 포함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09.2.12.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 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요건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3) 공제하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



상환기간	상환기간 상환방식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종합한도금액(연 300만원~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1,000만원임.
-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000만원(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임.
- * 2012.1.1. 이후 차입하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차입금부터는 공제한도액이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임.

(4) 공제대상여부 판정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1주택(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3.12.31. 이전 차입분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2005.12.31 이전의 대출분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지 못함.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 적용요건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그 조합이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액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액 = 출자 · 투자액 × 10%(~100%)

3)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4) 공제액의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



합니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화매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5) 소득공제 신청방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나.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 공제대상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 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가능)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제출서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1) 적용요건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21조의2)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앙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Delta = 3 + 2 + 3 + 4 - 5 + 6 + 7$

- ①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②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 ④ 신용카드 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15%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cdot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leq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times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사용분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30%
- ⑥ 2014년 신용카드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사용금액보다 많은 본인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 ('14.7.1~'14.12.31.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 ('15.1.1~'15.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50%)×10%
- ② 2015년 신용카드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사용금액보다 많은 본인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 ('15.7.1~'15.12.31.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50%)×20%
 -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 ('16.1.1~'16.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50%)×20%

3) 공제제외 사용금액

-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② 다음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③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④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⑤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 ⑥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⑦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⑧ 우체국의 소포우편물 배달업, 부동산임대·도소매·음식숙박·골프장· 스키장·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 대가
- ⑨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①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것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4) 제출서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5)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방법

① 신용카드사업자가 당해 연도 1월~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함.

- * 사용자가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확인신청
- ②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시행규칙 제58조 제5항)
 -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연말 정산 집계표(내역서)를 조회·출력하여 첨부
- ③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 제외금액 중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카드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자에 대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차갂하여 통보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 §132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 2012년 투자분과 2014년 투자분 중 공제율 30%·50% 적용분은 종합한도 제외
 - 2014년 이후 투자분 중 공제율 30%·50%·100% 적용분은 종합한도 제외
- 다.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 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 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 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제 6 장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9쪽의 **❷**세액감면명세서 및 **❸**세액공제명세서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 공제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해당 법 조문(제목)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 (제목)을 적습니다. 단 세액공제 중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인 경우에는 ® 세액공제명세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 ② 코드: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③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나. 세액감면 · 세액공제시 유의사항
- 1)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적용순서(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 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2) 세액감면 · 세액공제의 한도(소득세법 제61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여러 가지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감면후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특별상각·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세액감면·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43조(구분경리),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이 있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						
()					
B						
			()	()	(×)	
	/					
	()					
				12%		
				400		
				12% 15%		
				15%		
				15%		
				(25%)		
	()					
	1 0					
	1 0					
(+)				
(
r , , ,						
()						



다. 세액공제

1)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

(1) 공제대상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배당가산(Gross-Up)이 배당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당가산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배당세액공제액: Gross-Up되는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의 11/100

▶ 한도액 :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세액(원천징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나)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

(1) 공제대상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2) 세액공제금액

공제액 = 산출세액 ×
$$\frac{$$
기장신고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times 공제율(20%) 종합소득금액

- (3) 공제한도 : 100만원
- (4) 세액공제 배제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 하여 신고한 경우
 - 장부 및 증명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화재·전쟁·도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다)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 (1) 외국납부 소득세액의 범위
 -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 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직접 외국납부세액)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 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외국납부소득세액 으로 봅니다. (의제외국납부세액)
- (2)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 ·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합니다.
- (3) 외국납부소득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 납부소득세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①·②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방법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납부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계산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 한도초과액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 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
- ②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4) 공제신청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또는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2014.12.31.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4.12.31.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4.12.31. 이전 제출분은 45일)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 제58조)

(1) 적용대상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등)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적용합니다.

- (2) 세액공제 금액
 - 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별 소득세상당액(가산금 포함)

사업소득에 대한 미납부소득세액(가산금포함) 재해상실 (<u>상실자산가액</u>) 비 율 (상실전 자산가액)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사업소득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 공제액 이외의 세액공제액+세액 × 감면액)+가산세액

재해상실 (소득별상실자산가액 비 율 (상실전 자산가액)

- ※ 소득별 산출세액상당액=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3) 공제한도: 재해손실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 (4) 공제신청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단,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 부터 1월)

마)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 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이 130만원 이하의 경우와 130만원 초과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 71만5천원+130만원초과분×30%

• 한도액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바)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 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1명당 30만원

사)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Min(①, ②)×12%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 ①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 ② 연 700만원

아) 특별세액공제

(1) 공제대상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규정에 의해 특별세액공제항목 중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 (가) 「소득세법」 상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성실사업자)
 - ①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 ④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의 사실이 없을 것
- (나)「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2) 공제대상 특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 제1항)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합니다.

공 제 대 상	공 제 금 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일반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4)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과세가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공제대상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가)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⑦와 ⓒ의 공제대상의료비를 합한 금액
⑦: ①를 제외한 기본	①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3%
공제대상자 의료비	② 공제한도액 연 700만원
(마): 본인·장애인· 65세	①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 지출액
이상인자의 의료비와	② 다만, '⑦'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
난임시술비	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지출기간 : 2015.1.1.~2015.12.31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5)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

(가) 세액공제액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공제대상 교육비

-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기타 공납금
 - [이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및 방과후 학교수강료(교재구입비 포함)를 포함함]
- 당해연도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대상금액으로 함

소득세 및 중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 단테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의 학습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취학전 아동의 교습에 한함)
- 국외교육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라) 교육비공제대상금액 및 한도

• 일반적인 경우의 교육비공제대상금액 및 한도

구 분	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합니다.

(마) 참고사항

-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앙가족에 대한 교육비(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및 제출서류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의 학생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제4항)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2014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가) 공제 대상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위탁아동이 지급한 기부금도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공제금액 및 한도

구 분	한 도 액
전액공제기부금(100%한도)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전액공제기부금)×30%
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①+② ①(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전액공제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②(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전액공제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20%와 종교단체기부금 외의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나. 가 이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전액공제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 *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니다.
 - (다) 기부금의 내용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rightarrow 3. 사업소득명세서 \rightarrow 마)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의 「기부금의 내용」참조

(라)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rightarrow 3. 사업소득명세서 \rightarrow 마)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rightarrow (5)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참조

(마)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기부금 공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간의 공동사업으로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특수 관계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가) 근로소득자 및 성실사업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13만원을,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성실사업자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8)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합니다.

-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연도에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부한 사업자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① ERP 또는 POS 도입 ②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③결제대행업체·사업용계좌로만 매출대금을 결제받는 전자상거래사업자 ④수입금액공동관리 버스운송사업자 ⑤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이루어지는 사업자 ⑥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매입 결제 ⑦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면세인적용역소득자
 - (b) 장부 비치·기장 및 신고
 - 복식장부(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 포함)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과세기간을 제외함)
 - (c)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 기간 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나) 그 밖의 거주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주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대 상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함	투자금액의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조특법 제76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 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월세액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 대주가 월세액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종합소 득 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가 법에 정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10% 한도 75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제 104의8)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6의6)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 한도 100만원



2 준비금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② 준비금 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준비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장래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할 때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나중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견 본 〉

❶ 준비금명세서						
1	2	준비금 선	논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7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코드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계	사업자 등록번호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준비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명칭)을 적습니다.

- ② 코드: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③ 연도·④ 금액

준비금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5) 당기환입액·(6) 환입액누계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누계 + 당기환입액)을 적습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당초의 손금산입액이 전부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당초의 손금산입액과 환입누계액이 같게 되어야 합니다.

⑦ 사업자등록번호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제 5 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0000000000000

-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_ 189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_ 203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인쇄업(복식기장)
-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가(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_ 216- 약국사업자
-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_ 232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_ 246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_ 259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_ 271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_ 285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 9.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_ 298 - 학원강사
-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_ 304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11.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_ 316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12.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_ 328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 성 명 : 최 공 정

자료2 사업소득 내역

① 상호 : 세종상사 업종 : 제조업/신발 2015년 총수입금액 1,500,000,000원, 필요경비 1,400,000,000원

※ 수도권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함)

② 신고유형: 성실신고확인

| 자료3 │ 가족사항 등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63. 2. 3	100,000,000원			
배	우 자	64. 4. 5	없 음			
	모	45. 3. 6	"	만 70세		
자	녀	94. 2. 7	"	만 21세		
자	녀	95. 8. 9	"	만 20세		

① 모 의료비 지출액: 8,000,000원

②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액: 각각 5,000,000원, 6,000,000원

│ 자료4 │ 기타자료

- ① 중간예납 4,000,000원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3,000,000원 납부하였음
- ③ 성실신고확인비용: 2,00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신고세[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⑦ 사업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 소득공제명세서 ⇒ 🗗 세액감면명세서 ⇒ 🚯 세액공제 명세서 ⇒ 🚯 기납부세액 명세서 \Rightarrow \blacksquare 세액의 계산 \Rightarrow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14성실신고확인에 ✔표를 합니다.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⑨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10 신고구분: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므로 14를 적습니다.
- ⑧ 주업종 코드 : 신발 제조업 코드인 192001을 적습니다.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1,500,000,000원



⑩ 필요경비: 1,400,000,000원

① 소득금액: 100,000,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손익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100,000,000원을 적습니다.
- (5)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라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1,500,000원

② 배우자: 1,500,000원

- ③ 부양가족공제: 3,000,000원(2명×150만원)
- ④ 경로우대자(추가공제): 1,000,000원
- ⑧ 인적공제 계(①~(7)): 7,000,000원
- (b)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난에 본인, 배우자, 모, 1995년생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⑨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3.000.000원
-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3,000,000원
- ② 소득공제 합계 (⑧~①+①+②): 10.000.000원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⑨ 종합소득금액: 100,000,000원 {13쪽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라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10,000,000원 (15쪽 **1**)소득공제명세서의 ②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과세표준 : 90.000,000원 (종합소득금액(P) 소득공제(D))
- ② 세율·② 산출세액: 35%, 16.600.000원
 - * 과세표준 90.000,000원 × 세율35% 누진공제액14,900,000원 = 16,600,000원

₩ 세액감면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 ① 해당 법 조문(제목):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③ 세액감면: 3,320,000원
- * 산출세액(16,600,000원) × <u>감면대상사업소득금액(100,000,000원)</u> × 감면율(20%) 종합소득금액(100,000,000원)

④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감면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❸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150.000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의료비세액공제: 750.000원
 -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5,000,000원을 공제대상금액란에 적고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7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의료비 지출액이 8,000,000원 중 사업소득금액 100,000,000원의 3%인 3,0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교육비세액공제: 1.650.000원
 - *교육비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액 11,0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기재하고 15%를 적용한 금액 1.650,000원을 적습니다.
- ⑤ 해당 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126조6(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1,000,000원
 - * 확인비용(2,000,000원) × 공제율(60%) = 1,200,000원 (한도: 100만원)
- ⑥ 세액공제 합계: 3,55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⑥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21쪽)

- ① 중간예납세액: 4,000,000원을 적습니다
- (Î) 기납부세액 합계: 4,000,000원(①~⑩의 합계)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 ② 세액감면: 3,320,000원 (② 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세액공제 3.550.000원 (18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26 결정세액: 9.730.000원 (23-24-25)
- ② 합계: 9,730,000원 (26+27+28)
- ③ 기납부세액 : 4,000,000원 (**⑥**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5,730,000원 (29-30)
- ③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5,730,000원 (31)-32+33-3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④)란)은 과세표준(②)란)을 옮겨 적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43)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50)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30)란)에서 중간 예납세액(46)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④ 과세표준 : 90,000,000원 (2)란의 금액)
- ④ 산출세액: 1,660,000원 (④ ×세율3.5% 누진공제액1,490,000원 = 1,660,000원)
- ④ 세액감면・⑤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②와 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10/100=332,000원, ②5×10/100=355,000원)
- 46·49·51·52란의 금액: 973.000원 (43-44-45)

[별지 제40호서식(1)]						(33 3)
(2015)	1 귀속)?	당한소 트 세 · 날	도어 <u>추트</u> 별사	l·지방소득세	(2 / 9
- (2010)					•	1 / 2
	바 세프	준확정신고	옷 답구서	1안서		1, 2
0						
				6 3 0 2 0	3 - 1	* * * * * *
	02-***-	5 ** ****			02_**	**_***
	010-***-				02-	
11	12	<u> </u>	20	31 -	32 -	40
			2		3	
	20	30	40	50	가 ()
2		1			<u> </u>	<u> </u>
(2)		/		_ * * * * *		
3	2 3	(4) (7)	8 - 3 6	-		
	2 0	(4) (7)		* * * * * [8		1 - * * * *
4						
	(1	9 100,000	000			
		0 10,000				
		90,000		90,000,000	61)	
		22	35% 42	3.5%	62	
		3 16,600		1,660,000	63	
	(2	3,320		332,000		
	2	3,550	0,000 45	355,000		
(23-	24-25) 2	9,730	,000 46	973,000	64	
가	2	27)	47		65	
가	, @	28)	48		66	
(<u>(</u>)	9,730	0,000 49	973,000	67	
(@+		9,730		973,000	68	
() (5,730		973,000	69	
	-	20,700	.,500	3.3,000		
7		33)			70	
2		34)				
		5,730		973,000	71)	
' , 7 ,	0, г	J	7 , г	J 95 「		J 45 3
•	47	3 가				
2016	6	30				()
						17
				()
(1)						()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7 40 1/ 9 1 131-35-**** 1 14 192001 1,500,000,000 1,400,000,000 (-) 100,000,000 1.1 12.31 15) 16 (18) ()

별지 제40호	5 서식(1)]						(제13쪽)
9		•					
)(()		(
	()						
)(100,000,000					100,000,000
()	100,000,000					100,000,000
•			1				
(
)							
,							
)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 1,500,000 1,500,000 (2) 3,000,000 (1) 1,000,000 가 가 () () 7,000,000) () 22 (0 |6|3|0|2|0|3|-|1|*|*|*|*|* 1 3 9 5 0 8 0 9 - 2 * * * 4 1 =0, =2, =1, =3, 가 =7, =8()=5, =6, 4~6 .) Γ ◎ ٢ (18) 20 () J) 3,000,000 86 3 (②1) r 3,000,000

10,000,000

+ + (21))

23

[40 (1)]					(19)		
()							
7 (3,320,000			131-35-****		
		3,320,0	000				
B							
r j		()	()	(×)			
(1) (6)				150,000			
(·)							
			12% (15%)				
			12%				
		5,000,000	15% 15%	750,000			
		11,000,000	15%	1,650,000			
			15% (25%)				
L 1							
()							
10		1,000,000		1,000,000	131-35-****		
, , ,		· ·		· · ·			
(r) + r	١)			3,550,000			
•							
()							
\							



별지 제40호서	식(1)]						(21)
ⓑ 가							
49 × 1						가	가
						40/100	'
						(60/100)	
						14/10,000 20/100	
						7/10,000	
						40/100	
						(60/100)	
						14/10,000	
						10/100 40/100	
	\				()		
()	()			3/10,000	
		() ()		2/100	
				가		1/100 1/100	
				~1		1/100	
		() () 가		1/100	
			<u> </u>			0.5/100	
		() ()가		1/100	
						0.5/100	
						2/100	
						2/100	
						1/100	
						1/100	
						0.5/100	
		•				0.5/100 0.5/100	
		<u> </u>					
						0.1/100	
						20/100	
		•				0.2/100 0.2/100	
		•				5/100	
						5,000	
		가				0.5/100	
		•				5/100	
		•				5,000	
		•				2/100 0.2/100	
		•	가			0.2/100	
		가				5/100	
6							
<u> </u>							
.							
					4,000,000		
						21)	
						22	
						23	
						24	
						25	
					4,000,000	26	

3			세액검	<u> </u>		**11/	L 6,	<u>`I</u>	(3	1
									131 -35 -**	* * * *
									620203	
D				:			,	***		
2	2	015	1 1			201	5 12	: 2 31		
<u> </u>										
<u>9</u>										
10			5	16		111				
10			5	16		174				
13 14			5	16 8		13E 112	20%	16 600 000	3 330 000	
ъ В			11	6		13J	20%	16,600,000	3,320,000	
<u> </u>			11	6		13K				
			11	2	5	179				
18			27 (2007.2.28.	2	4 19888					
19			30	2	7	192				
D			30	2	7	13A				
D			58	11		13F				
) ()		60	5		116				
(B)		60	5	13	169 108				
b			60		13	109				
0			61	3		117				
D			63	7		104				
8			64	7		107				
19		()	65	3		11B				
()		65	3		119				
1) 12)			79 79	7		11L 11M				
3	•		85	2	5	11A				
24)			96	6		131				
5			102			124				
<u> </u>			104		1 5	11F				
()			104		1 5	11H				
3			116	1.	4 5	181				



										(3	:	2)
129	•	116	15	7 1	182							
130		116	15	7 1	158							
13)		116	21	7 1	197							
132	•	116	21	7 1	198							
133		116	25 (6 1	1C							
134	•	116	26 9	9 1	1G							
135		116	27	5 1	ЗН							
17				1	164							
128				1	A4		16,600,00	00	3,320,00	ю		
4				(13),	119	~ 126)				
*	/	: (/),	(/), (/),	(/), (/)			
		(× 5	50%)								
							× 1,	000)			
	× 20%		. ,									
	16	ĮΝ	lin(,)]	(+)						
17		(16) -)	· · ·		• ,						
Г	1											
							20	016		:	30	`
									()
						210mm	×297mm[80g/m		80g/	/m']

[78](2015.03.13)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						
									131	-35 -*	* * * *
										3020	
						*	* *				
1.											
					004						(:)
					201		1 12	1			
					201	5	12	31		2.0	00,000
				가	(× 60)/100))			1,2	00,000
										1,0	00,000
						()	1,0	00,000
2.		(=13)):	1,0	00,000						(:)
								12	13	14)	(1) -13 - 14)
	(=)	1	2	3	4	5	(+ +) ⁺	(1) -12)		(14)
			J	121	6 2						
			,	121	0 2						
		•						20	16	6	30
									(Ü)
									`		,
4											
1. 2. "			,,	•							
۷.											
							210mm × 29	7mm [80a/m²		80a/m²1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인쇄업(복식기장)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서울 중구 퇴계로 **

성명:김한국

│**자료2**│사업소득금액 내역

(1) 사업장 : 서울 중구 충무로 ××

① 업종: 부동산임대업

② 2015년도 총수입금액: 20,000,000원 2014년도 총수입금액: 20,000,000원

③ 신고유형: 추계신고

(2) 사업장: 서울 중구 충무로 ×× 한국인쇄

① 업종: 제조 인쇄업 (공동사업장, 대표공동사업자, 지분 50%)

② 2015년도 총수입금액: 60,000,000원, 필요경비 40,000,000원

2014년도 총수입금액: 70,000,000원

③ 신고유형: 복식기장(자기조정)

┃**자료3** ┃ 가족사항

	구 .	1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66. 2. 4			
배	우	자	67. 3. 5	없 음		
장		모	46. 5.10	"		
자	녀	(1)	96. 7.20	"		
자	녀	(2)	98. 9. 8	"		

자료4 기타

①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720,000원을 납부하였음

② 중간예납세액: 50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 복식기장 신고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 □ 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 자기조정은 **조정계산서**를 자기가 작성·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⑨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기장의무 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 종 별	복식 부기	간편 장부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 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1억5천 만원이상	1억5천 만원미만	3천6백 만원이상	3천6백 만원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 만원미만	2천4백 만원이상	2천4백 만원미만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인쇄업(복식기장)



①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적습니다.>

- ① 소득구분코드: 30을 적습니다.
 -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 ② 일련번호: 1을 적습니다.
 -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 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 ⑤ 사업자등록번호 : 123-**-***
 -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 32를 적습니다. 김한국의 부동산임대업은 단순경비율대상입니다.
 - * 단순경비율 코드: 32

※ 소득세 집행기준 160-208-3 기장의무 판정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 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 ⑧ 주업종 코드: 점포(자기땅) 임대 코드인 701201을 적습니다.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20,000,000원
- ⑩ 필요경비: 7.680.000원
 - * 부동산 임대(701201)의 단순경비율 38.4%
 -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20,000,000 × 단순경비율 38.4% = 7,680,000
- (1) 소득금액: 12,320,000원 (⑧총수입금액 ⑨필요경비)
- ② 과세기간개시일: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 ③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 (4) 대표공동사업자·(5)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은 뒤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① 소득구분코드: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1을 적습니다.
 -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난 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한국인쇄", "123-45-****"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자 본인이 세무조정 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조정에 해당합니다.
- *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코드: 11
- ※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 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⑧ 주업종 코드: 제조 인쇄업 222102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 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30.000.000원 (지분 50%)
-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① 필요경비: 20,000,000원 (지분 50%)
- ① 소득금액: 10.000.000원
-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②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1"을 적습니다.
- ③ 과세기간종료일: 계속사업자이므로 "12.31"을 적습니다.
- ④ 대표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이므로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 특수관계자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란에 12,320,000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10,000,000원을 각각 적고, 합계란에 22,320,000원을 적습니다.
-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인쇄업(복식기장)



●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1,500,000원

② 배우자: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4,500,000원(3명×150만원)

⑧ 인적공제계(①~⑦): 7,5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720.000(연간 납입금액)

(6)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장모, 자녀 등 5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② 소득공제 합계 (8~11+15+21): 8,220,000원

(b)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500,000원을 적습니다

① 기납부세액 합계: 500,000원(①~⑩의 합계)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⑨ 종합소득금액: 22,320,000원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⑤라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20 소득공제: 8.22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28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과세표준: 14.100,000원 (⑨종합소득금액 ⑩소득공제)
- ② 세율·② 산출세액: 15%, 1.035.000원
 - * 과세표준 14,100,000원 × 세율15% 누진공제액1,080,000원 = 1,035,000원

❸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92,741원 (100만원 한도)
 - * 산출세액(1,035,000원)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10,000,000원) 종합소득금액(22,320,000원) × 공제율(20%)
 - ○자녀세액공제: 30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명이므로 세액공제 금액 300,000원을 적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 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123-45-*****)를 적습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462,741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 명세서(신고서 제21쪽)

* 부동산임대업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무기장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 ②5 세액공제: 462.741원
- * 🚯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⑥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26 결정세액 :572,259원 (23-24-25)
- ② 합계:572,259원(②+27+②)
- ③ 기납부세액: 500.000원
- * 🚯기납부세액명세서(신고서 제21쪽)의 印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72,259원(③-③)
- ③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72,259원 (③3-③4-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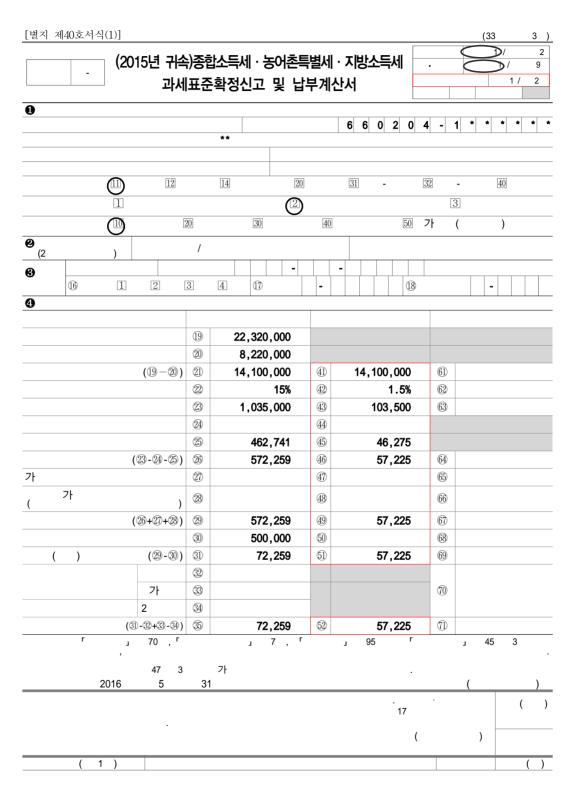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④란)은 과세표준(②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⑥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⑥)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⑥)란)에서 중간예납세액(⑥)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④ 과세표준: 14.100,000원 (21)란의 금액)
- ④ 산출세액: 103.500원 (④) × 세율1.5% 누진공제액108.000원 = 103.500원)
- ④ 세액감면・⑤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②와 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10/100=0원, ②×10/100=46,275원)
- 46·49·51·52라의 금액: 57.225원 (43-44-45)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인쇄업(복식기장)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						_	_	_			_	
					3	0	4	0				
					1		1	İ				
						**		**				
	1/	9			1	-	1					
					123-**	_****	123-45	-****				
					2	2	2	2				
					3:	2	1	1				
					701:	201	222	102				
					20,000	0,000	30,00	0,000				
						0,000	20,00					
			(-)	12,32	0,000	10,00	0,000				
					1.	.1	1.	.1				
					12.	.31	12.	.31				
							660204-	1*****				
							•					
3)												
		(P)		``	(8	3		á	<u> </u>	000		
		17)	()		()	(1	9	20		
	_									-		
	+									-		
	+											
	+									\vdash		
	- 1				1			1		1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인쇄업(복식기장)

[별지 제40호 서식(1)] (제13쪽) 9)(()) 12,320,000 12,320,000 10,000,000 10,000,000 22,320,000 22,320,000 1 () (

											Γ						J														
											1	, 5	500),(000)										_			720	,0(00
											1	,5	500),(000)															
			7	가		(3)		4	١,5	500),(000)															
							()																						
	가	()													(,))												
				가		()												()								
		(,)		7	7,5	500),(000)					()									
)	T									(
)		1	6	6	0	2	0	4	-	1	*	*	*	*		.	ŀ	2		1	4	6	0 !	5 1	0) -	2	*	*	* .	*
3		1	6	7	0	3	0	5	-	2	*	*	*	*	•		٠									-					
ŀ		1	9	6	0	7	2	0	-	1	*	*	*	*	•		٠									-					
١		1	9	8	0	9	0	8	-	1	*	*	*	*		٠ ١	٠									-					

4~6	가	.))=5, =6,	=7, =8(
	Γ	J		
⊕ r	٦ ()	18	19	20
②) r	J			
② (~ + + 2)	8,2	20,000 23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인쇄업(복식기장)

[40 (1)]					(19)
()					
()					
B					
r j		()	()	(×)	
				92,741	123-45-*****
(2)				300,000	
(6)					
(·)					
			12% (15%)		
			12% 15%		
			15%		
			15%		
			15% (25%)		
			(20%)	70,000	
				•	
() L 1					
10					
10					
(r] + r	۱)			462,741	
()					
W					
г ,					
()					

[별지 제40호서식(1)] (21)

) 가							
ויש						가	가
						40/100 (60/100)	
						(60/100)	
						14/10,000	
						20/100	
						7/10,000	
						40/100	
						(60/100) 14/10,000	
						10/100	
						40/100	
					()		
()	()			3/10,000	
		() ()		2/100	
						1/100	
				가		1/100	
						1/100	
		() () 가		1/100	
			`			0.5/100	
		() ()가		1/100	
						0.5/100	
	-					2/100	
						2/100	
	-					1/100	
						1/100 0.5/100	
	-					0.5/100	
		•				0.5/100	
						0.1/100	
						20/100	
		•				0.2/100	
						0.2/100	
		•				5/100	
						5,000	
		가				0.5/100	
	-	•				5/100	
		•				5,000	
	-					2/100	
		•	가			0.2/100	
		가	<u> </u>			5/100	
						3/100	
					500,000		
						21)	
						(4)	
						22	
						23	
						24	
						25	

500,000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인쇄업(복식기장)

41] <	2010	.4.30>						(
						1	2 3 - 4	5 - *	* * *
				**					
						6 6	0 2 0 4	- 1 * *	* * *
				**					
			(30), (40)			1 / 2		2	222102
			(11),	(14),	(12),	(13), 0), (32)		14 1 14 12	1 2 31
				16		40,000,000	(T)	20	,000,000
70,000,000	0	60	0,000,000					,	
		19			21)	22	② 가	<u></u>	25
								₩, 	
				100%	60,000,00				
)4-1***** 0-1*****	50% 50%	30,000,00				
		00101	10-1	50%	30,000,00	10,000,000			
						210mm × 2	297mm /	60g/m	31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자료1 김성실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현황

- ① (주)ABC로부터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1.500만원
- 원천징수세액: 이자소득 375만원, 지방소득세 37만5천원
- ② (주)AA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은행예금 이자소득: 1,000만원
- 원천징수세액 : 이자소득 140만원, 지방소득세 14만원
- ③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 : 2.000만원
- ④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BB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2,000만원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2015 3. 21.
 - 원천징수세액: 배당소득 280만원, 지방소득세 28만원

자료2 약국 사업소득 현황

- 2015년 수입금액 8.000만원, 필요경비 4.000만원
- 2015년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 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사용금액 1천만원
- 2014년 수입금액 7,000만원
- 신고유형 : 복식기장(자기조정)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52. 4. 1			
배 우	자	54. 3. 4	없음		
자	녀	85. 3. 1	"		

자료4 기 타

○ 중간예납 : 2,40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 은행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 □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작성 ⇒ ⑤이자소득 명세서 작성⇒ ⑥배당소득 명세서 작성 ⇒ ⑥사업소득명세서 작성 ⇒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 ⑩조학소득군제명세서 작성 ⇒ ⑪조학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⑥세액공제명세서 작성 ⇒ ⑥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⑥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8) 신고유형 : Ⅲ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 사업자로서의 소득과 비사업자로서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신고유형을 적습니다.
- ※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⑨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 약국 사업자 등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① 신고구분: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⑤ 이자소득 명세서 (신고서 제5쪽)

- ① 소득구분코드 :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11, 12, 13, 15, 16)으로 적습니다.
- *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1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12 그 밖의의 이자소득: 1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15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른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16

-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 ③ 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영수증상 징수의무자 또는 소득 발생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지점별로 작성합니다.
- ⑤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11코드), 20,000,000원(15코드), 10,000,000원 (13코드)을 각각 적습니다
- ⑥ 소득세 : 3,750,000원(11코드), 1,400,000원(13코드)을 각각 적습니다.

6 배당소득명세서 (신고서 제7쪽)

- ① 소득구분코드: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21, 22, 23, 26, 28, 29)으로 적습니다.
- *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 21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는 배당소득 : 22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 2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 ③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 배당액: 20.000.000원
- *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 ⑥ 배당가산액(gross-up)대상금액: 20,000,000원
- *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른 이자·배당소득(배당 가산하지 않는 배당)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 * 이자소득(4,500만원)만으로 금융소득이 이미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2,000만원 전액이 배당가산 대상금액임
- ⑦ 배당가산액: 2.200.000원
- * ⑥ 배당가산액 대상금액 20,000,000원 × 가산율(11%) = 2,200,000원
- ⑧ 배당소득금액: 22,200,000원
- * ⑤ 배당액 20,000,000원 + ⑦배당가산액 2,200,000원 = 22,200,000원
-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 2,800,000원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중부약국"을 적습니다.
- ⑤ 사업자등록번호: "206-**-****"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11
-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 ⑧ 주업종 코드: 의약품 소매업 코드인 523111을 적습니다.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90,000,000원
 - 소득세과-338, 2012.04.12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① 필요경비: 40.000.000원
- ①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⑧총수입금액 ⑨필요경비)
 - ※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② 과세기간개시일: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 ③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페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 ① 대표공동사업자·⑤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⑤**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45,000,000원을 이자소득 금액란에, **⑥**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22,200,000원을 배당소득금액란에,
 - ① 사업소득명세서의 ① 소득금액의 합계액 50.000.000원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라의 금액은 ①라의 금액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 ① 본인: 1,500,000원
- ② 배우자: 1.500.000원
-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1985년생 자녀1명은 만 20세를 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⑧ 인적공제 계(①~(7)): 3.000.000원
- ②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 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합계 (®~①+⑤+②): 3.000.000원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신고서 제23쪽)

<11금융소득명세>

- ① 비영업대금이익: 15,000,000원
- * ⑤이자소득명세서의 11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20,000,000원
- * ⑤이자소득명세서의 15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④ 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 10,000,000원
- * 5이자소득명세서의 13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⑤ 이자소득 합계: 45.000,000원 (①+②+③+④)
-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 배당소득: 20.000.000원
- * 6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의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⑦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0원 (해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 6 배당소득명세서의 23코드,26코드의 ⑤배당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⑧ 위 ⑤ ⋅ ⑥ 외의 배당소득 : 0원 (해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 ⑥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와 26코드의 ⑤배당액의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빼 금액을 적습니다.
- 9 배당소득 합계: 20,000,000원 (⑥+⑦+⑧)

<2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금융소득금액: 65,000,000원(⑤+⑨)



- ①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원
- ① 기준초과금액: 45,000,000원 (⑩-⑪)
- ① 배당가산액: 2,200,000원
- * 6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의 ⑦배당가산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④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50,000,000원
- * 9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세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⑤ 종합소득금액: 97,200,000원 (①+⑥3+⑥4)
- ①6 소득공제: 3,000,000원
- * ●소득공제명세서의 ②8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 ① 과세표준: 94,200,000원 (⑭-瓜)
- ® 기본세율·⑨ 산출세액: 35%, 18,070,000원
- ② [①×14/100, 9/100] : 2,800,000위
- * ①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10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적습니다. (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15/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세율(9/100)을 적용합니다.
- ② 비교산출세액 계: 20.870.000원 (19+20)
- ② 비영업대금이익(①+⑨)×25/100: 3,750,000원
- ②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50,000,000원 (⑩-(①+③))
- ② [②×14/100, 9/100] : 7,000,000원
- * 20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 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50.000.000원
- * [4]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 26 소득공제 : 3,000,000원
- * 🕕소득공제명세서의 28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 ②7 과세표준: 47.000.000원 (②5-②6)
- ② 기본세율·②산출세액: 24%, 6.060,000원
- * 웹산출세액 계산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⑥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③과 ①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①(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 ①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 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 ③ 비교산출세액 계: 16.810.000원 (22+24+29)
- ③ 종합소득산출세액: 20,870,000원(②의외③)중 큰 금액)

<4 배당세액공제>

40 (3)와 (3)-30) 중 적은 금액]: 2,200,000원

❸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2,200,000원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④0란에 산출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⑥ 세액공제 합계: 2,20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b)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 ① 중간예납세액: 2,400,000원
- 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5.150.000원
- * 5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⑥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2,800,000원
- * 6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① 기납부세액 합계: 10,350,000원 (①~⑩의 합계)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③ 종합소득금액: 117,200,000원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3,000,000원
- * 🛍 소득공제명세서의 🕸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과세표준: 114,200,000원(⑩종합소득금액 ⑩소득공제)
- ② 세율·② 산출세액: 35%, 20,870,000원
-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②5 세액공제: 2,2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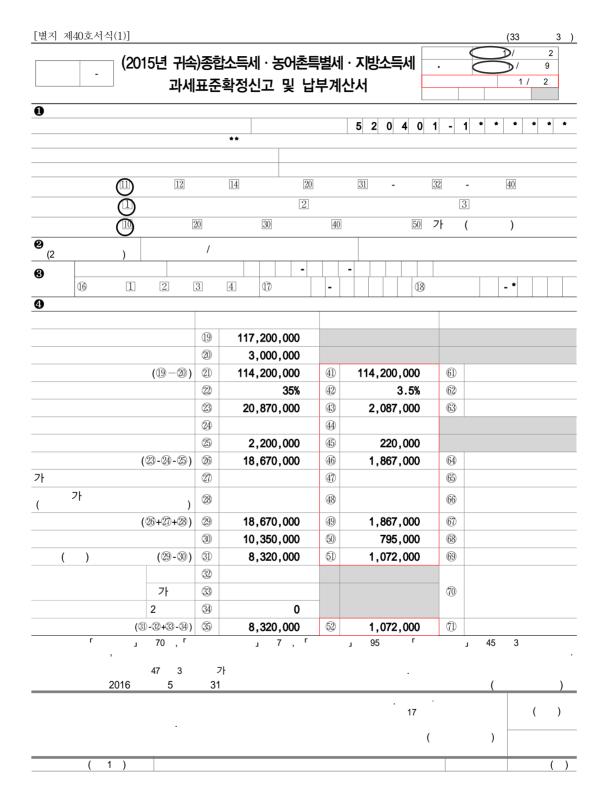


- * 🚯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26 결정세액: 18.670.000원 (23-24-25)
- 29 합계: 18,670,000원 (26+27+28)
- ③ 기납부세액: 10,350,000원
 - **(b)**기납부세액명세서의 (11)라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 8,320,000원 (29-30)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⑪란)은 과세표준(⑪란)을 옮겨 적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⑪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⑩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⑩란)에서 중간 예납세액(⑪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④ 과세표준: 114,200,000원 (21)란의 금액)
- ④ 산출세액: 2,087,000원
- ④ 세액감면・⑤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②와 ⑤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②×10/100=0원, ⑤×10/100=370,000원)
- 46·49 란의 금액: 1,867,000원(43-44-45)
- ⑤ 기납부세액: 795,000원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⑩) 10,350,000원 - 중간예납세액(❻기납부세액 명세서의 ①란) 2,400,000원] × 10% = 795,000원
- ⑤1 · ⑤2 란의 금액: 1,072,000원 (49-50)





[40	(1)]						
6								
			()) ()			
11		1	()AB		6-81-****	15,000,	000	3,750,000
13		1	()AA	201	I-81-****	10,000,	000	1,400,000
15		1	CC. I to	t	-	20,000,	000	-
			(5)				
[40	(1)]						(7)
6								
					가	(gross-up)		
						가 (×가)	(+)	
04			()BB	00,000,000	00,000,000	0.000.000	00,000,00	20 000 000
21	1	206	5-81-****	20,000,000	20,000,000	2,200,000	22,200,00	2,800,000

[40]										(9)
0												
					4	Ю						
						1						
					•	*						
	1/	9			1	-		-				
						_****						
						1						
						1 1111						
						0,000						
						0,000						
			(-)		0,000						
						.1						
						.31						
16												
_					18							
	(17)	()	()	(I	9)	G	20	



[40	1							(13)
9		•						
			()	()	(·
		45,000,000						45,000,000
		22,200,000						22,200,000
()							
()	50,000,000						50,000,000
)	117,200,000						117,200,000
•								
(
)								
(
)								

[40	(1)]																	(15)	
•	소득공	공제명/	세소	1																
								[_			١								
									1,	500	,000)								
									1.3	500	,000)								
				가		()													
						()													
	가				()						_				()	
				71	,		,													
			•	가	()									()		
		()		3,0	000	,000)					()		
22																				
							()							()
0		1	_	2 0		+	-	•	* *	+	* *									-
3		1	5	4 0	3 () 4	-	2 '	* *	*		-							-	
							-												-	
	:		=0).					=1,					=2,	=3,				· =4,	
		(,		기	ł		,		,			,)=5,		=6,		=7, =8(
4 ~	б										.)									_
							Γ						٦							
		①7 r				J		()				18	19				20	
		②D F					J													
	22) (~ +		- 21))					3,0	00,0	000		23						
		, ,		w)															I	_



[40	(1)]					(19)
	, ,					
	()					
B						T
г	1		()	()	(×)	
					(×) 2,200,000	
	(6)					
	(·)					
				12%		
				(15%)		
				12%		
				15%		
				15%		
				15% 15%		
				(25%)		
г	J					
	()					
	10					
	10					
	(۱)			2,200,000	
(4)						
Г	()					
	()					

[별지 제40호서식(1)] (21)

				가	가
				40/100	
				(60/100)	
				14/10,000	
				7/10 000	
				40/100	
				(60/100)	
				14/10,000	
				10/100	
· · · · · · · · · · · · · · · · · · ·				40/100	
			()	3/10.000	
()				
) ()		2/100	
		71			
		~1			
() ()가		1/100	
,	,	,- 1			
() () 가			
				0.5/100	
				2/100	
				2/100	
				1/100	
				0.5/100	
				0.5/100	
•					
				5/100	
				0.5/100	
				5/100	
				5 000	
				2/100	
'	가				
가				5/100	
			2,400,000		
				21	
			5.150.000	(22)	
			2 800 000	23	
			_,500,000	90	
				(A)	
				(2)	
		() () () () () () () () () ()	() () () 7h	() () () () () 7 l () 7	() 3/10,000 () 2/100 1

10,350,000



[40 (1)]			(23)
•		()	
ii a			
	15,000,000	가 (Gross - Up)	20,000,000
	20,000,000		
	10,000,000	•	
(+ + +)	45,000,000	(+ +)	20,000,000
(+) (2,000)		(+) (2,000)	
① (+)	65,000,000	②[(+)× (14/100)]	
1	20,000,000	③[× (25/100)]	
① (-)	45,000,000	34	
③ 가	2,200,000	35	
1	50,000,000	36 (33 - 34)	
(12 + 13 + 14)	97,200,000	3	
16	3,000,000	38	
① (⑤ - ⑥)	94,200,000	(32 + 33 + 38)	
18	35%		
19	18,070,000		
②[①× (14/100, 9/100)]	2,800,000		
② (①+②)	20,870,000		
② [(+)× 25/100]	3,750,000		
③ {① -(+)	50,000,000		
24[23 × (14/100, 9/100)]	7,000,000		
② (①)	50,000,000		
26	3,000,000		
27 (25 - 26)	47,000,000		
28	24%		
29	6,060,000		
30 (22 + 24 + 29)	16,810,000		
3) (2) 30	20,870,000		
4			
40 [13 (3) - 30)]	2,200,000		
		210mm×297mm(80g/m²)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지료1 김성공 교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

- (1) 지급처 : A+대학교
- (2) 총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 (3)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 ① 소득공제 :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명 150만원
- ② 세액공제 대상 : 보장성 보험료 공제 100만원. 교육비공제 600만원
- (4)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2.925.000원, 지방소득세 292.500원

지료2 사업소득자료 : 연구개발용역 대가

- (1) X법인이 부여한 연구용역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용역비를 지 급받음. (직전연도 수입금액: 9천만원)
 - ① 연구용역대가 1억원, ② 용역제공완료일 2015.11.30
- (2)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으며,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함
 - ① 필요경비 7천만원, ② 소득금액 3천만원
- (3)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 2,000,000원, 지방소득세 200,000원

|자료3| 기타소득 자료 : 원고료

- (1) C출판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 고 워고료를 지급받음.

 - ① 원고료 1,000만원. ② 법정필요경비(80%): 800만원
 - ③ 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 400,000원, 지방소득세 40,000원

자료4 가족사항

ī	그	-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57. 4.26		근로소득
배	우	자	58. 4.16	없 음	
자		녀	92. 8. 9	"	
자		녀	95. 2.17	"	





신고서 작성 해설

- □ 김성공 교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X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지급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입니다.
 - 김성공 교수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분리과세).

김성공 교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무조건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 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❸세무대리인 ⇒ \P 사업소득명세서 ⇒ ❸근로소득명세서 ⇒ ��종합소득 금액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 (7)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121외부조정에 ✓표를 합니다.
 - ※ 외부조정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사업자로서의 소득과 비사업자로서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신고유형을 적습니다.
- ⑨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 연구 및 개발업의 경우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10 신고구분: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세무대리인 (신고서 제3쪽)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의 ③성명, ⑭사업자등록번호, ⑮전화번호, ⑯대리구분, ⑰ 관리번호, ⑱조정반번호를 적습니다. ⑯대리구분 란에는 ②조정에 ✔표를 합니다.

- ①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사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①(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12
-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 ⑧ 주업종 코드 : 연구 및 개발업 코드인 730000을 적습니다.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100,000,000원

국 세 청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1억원)을 적습니다.
- ⑩ 필요경비: 70,000,000원
 - * 연구용역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 (1) 사업소득금액: 30.000.000원(8) 총수입금액 (9) 필요경비)
 - *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① 과세기간개시일: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 ③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 ① 대표공동사업자·⑤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 16) 일련번호 : 1
- ① 상호(성명): X법인
- (18) 사업자등록번호 : 209 81 *****
- ① 소득세: 2,000,000원

❸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 (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

- ① 소득구분 코드:51
- ② 일련번호:1
- ③ 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근무처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참조).
- (5) 총수입금액: 50.00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②1) 총급여)
- ⑥ 필요경비: 12,25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② 근로소득공제)
- ⑦ 소득금액: 37,750,000원(⑤-⑥)
- (8) 원천징수소득세: 2.925.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64결정세액)

〈기타소득〉

○ 분리과세 선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⑦사업소득명세서의 ⑩소득금액의 합계액, ❸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사업소득금액: 3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란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③ 종합소득금액: 67.750.000원
-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20 소득공제: 4,500,000원
- ●소득공제명세서의 ②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과세표준: 63.250.000원 (①종합소득금액 ②)소득공제)
- ② 세율: 24%
- ② 산출세액: 9,960,000원 (63,250,000 × 24% 5,220,000)
 -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❸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740,000원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740.000원을 적습니다.
 - *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 5.549.667원
 - = 종합소득산출세액 9,960,000원 ×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종합소득금액 67,000,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원+(4,249,667원×30%)=1,989,900원(공제한도인 740,000원을 공제)
 - a) 공제액

구 분	공제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www.nts.go.kr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b)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②) ①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②) ①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②50만원

- ○자녀세액공제: 150,000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120,000원 공제대상금액: 1,000,000원
- ○교육비: 900,000원

공제대상 금액: 6,000,000원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액을 공제대상 금액에 기재하고 15%를 적용한 금액 900.000원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 ⑥ 세액공제 합계: 1,91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b)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 ⑦ 원천징수세액(사업소득): 2,000,000원을 적습니다.
- ⑧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 2,925,000원(용근로소득명세서의 ⑧소득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① 기납부세액 합계: 4,925,000원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 ②5 세액공제: 1,910,000원
- * 🚯 세액공제명세서의 (5) 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26 결정세액 : 8.050.000원 (23-24-25)
- 29 합계: 8,050,000원 (26+27+28)
- ③ 기납부세액: 4,925,000원
- *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 3,125,000원 (29-30)
- ③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3.125.000원(③)-③+③-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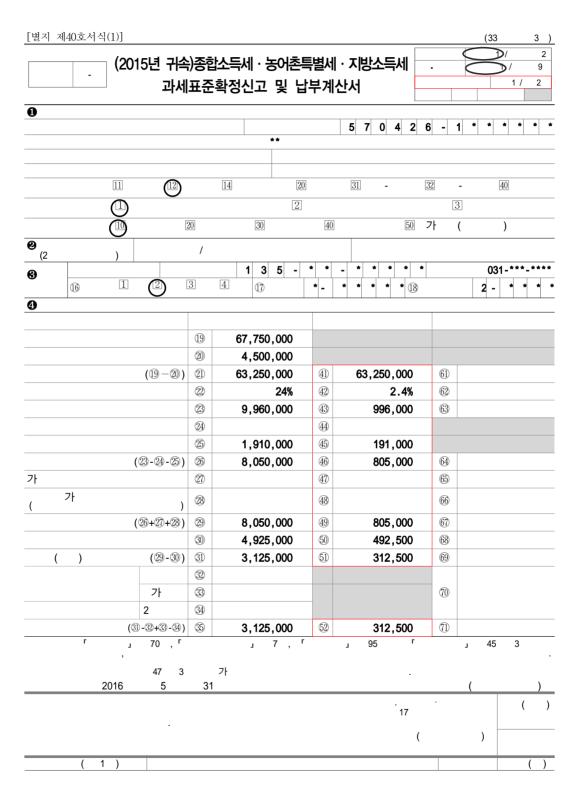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④)란)은 과세표준(②)란)을 옮겨 적고, 세율 2.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④)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⑤)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⑥)란)에서 중간 예납세액(⑥)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④ 과세표준 : 63,250,000원 (②)란의 금액)
- ④ 산출세액: 996,000원 (④ × 세율2.4% 누진공제액522,000원 =996,000원)
- ④ 세액감면・⑤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②와 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10/100=0원, ②×10/100=191,000원)
- 46 · 49 란의 금액: 805,000(43-44-45)
- 50 기납부세액: 492,500원
- 51·52란의 금액: 312,500원 (49-50)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40]							(9)
7									
				40)				
				1					
				**					
	1/	9		1	-				
				12)				
				7300					
				100,000					
				70,000					
			(-)	30,000					
			, ,	1.					
				12.					
16									
(10)				10					
	17		()	18	,	19		20	
1		Х		300	-81-****	2 (000,000		
'				209	-01-	2,0	,000,000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40]					(11)
8							
		()	(.		(-)		
51	1	A+ 206-**-****	50,000,000	12,250,000	37,750,000	2,925,000	

[40]						(13)
9		•					
			()	()	()	•
			·	,			
	()						
	(30,000,000					30,000,000
		37,750,000					37,750,000
()	67,750,000					67,750,000
•							
(
)							
(
)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 1,500,000 1,500,000 가 1,500,000 (1) ()) 가 () 가 () () 4,500,000 () 22 (0 1 3 4 1 9 5 0 2 1 7 - 2 =0, =1, =2, =3, (가 =7, =8()=5, =6, 4 6 .) 18 20 ◎ ٢ 19 J ②1) **г** 23 4,500,000 ~ + + (21)

[40 (1)]					(19)
()					
B					
L 1		()	()	(×)	
				740,000	
)			150,000	
)				
			12%		
		1,000,000	12%	120,000	
			15%		
		6,000,000	15% 15%	900,000	
			15% (25%)		
			(20%)		
Г					
()					
10					
(r J + r	۱)			1,910,000	
•					
() L 1					
, ,					



(21)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⑤ 가						
10 7 f				1		
					가 40/100	가
					(60/100)	
					14/10,000	
					20/100	
					7/10,000	
					40/100	
					(60/100)	
					14/10,000	
					10/100 40/100	
				()		
()	()			3/10,000	
	() ()		2/100	
			,		1/100	
			가		1/100	
					1/100	
) ()가		1/100	
		\ \ \ \ \ \ \ \ \ \ \ \ \ \ \ \ \ \ \	\ 71		0.5/100	
	() () 가		1/100 0.5/100	
					0.5/100	
					2/100	
					2/100	
					1/100	
					1/100	
					0.5/100	
					0.5/100	
	•				0.5/100	
					0.1/100	
					20/100	
	•				0.2/100 0.2/100	
					5/100	
					5,000	
	가				0.5/100	
					5/100	
	•				5,000	
					2/100	
	•	71			0.2/100	
	가	가			5/100	
16					3/100	
16						
					21)	
					22	
					23	
				2,000,000	24	
			<u> </u>	2,925,000	25	
			<u> </u>	_, 520, 500	-	
				4.925.000	(26)	

[별지 제40호서식(1)]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대전 중구 보문로 xx 성 명 : 이 세 종 (여성)

┃**자료2** ┃ 사업소득금액 내역

상 호: 대전예체능학원

사업장 : 대전 중구 보문로 ××

2015년도 총수입금액: 60,000,000원, 필요경비: 35,000,000원

2014년도 총수입금액: 50,000,000원

신고유형: 간편장부, 업종코드: 809003

중간예납세액: 300,000원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고
본 인 (女) 배 우 자 자 녀 (1) 자 녀 (2)	67. 1. 3 66. 3. 5 94. 9. 1 97. 1. 8	25,000,000 30,000,000 없음 "	사업소득 근로소득

※ 배우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2명의 부양가족 공제하였음

│ 자료4 │ 기부금 내역

기-	부자	기부금단체	기부금종류	기부금액
본	인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100,000원
본	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500,000원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2,000,000원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월액: 500,000원(2013.12.31.이전 지급분)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 간편장부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② 사업소득명세서 ⇒ ③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 ⑥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 ⑩간편장부에 ✔표를 합니다.
- ⑨ 기장의무 :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 10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 경우이므로 20을 적습니다.
- ⑧ 주업종 코드: 예체능계열학원 코드인 809003을 적습니다.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60,000,000원
- ① 필요경비: 35,000,000원
- ① 소득금액: 25,000,000원(⑨총수입금액 ⑩필요경비)

-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② 과세기간개시일: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 ③ 과세기간종료일: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25,000,000원
- (5)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①라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 ① 본인: 1,500,000원
- ⑥ 부녀자공제: 500,000원
- ⑧ 인적공제계(①~⑦): 2,000,000원
- ① 기부금공제: 500,000원
 - *지정기부금 공제액: 이월액 500,000원(2013.12.31.이전 지급분)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25,000,000)× 10 =2,500,000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times \frac{10}{100}$]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times \frac{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⑤ 특별공제합계: 근로소득이 없는 자 난에 500,000원
- (f)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난에 본인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합계 (8~11)+(5)+21): 2.500.000원

❸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70,000원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 금액: 100,000원

세액공제: 90.909원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 공제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0,000원) × $\frac{100}{110}$ = 90,909
- ⑥ 세액공제 합계: 160,909원
-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b)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 ① 중간예납세액: 300.000원을 적습니다
- ① 기납부세액 합계: 300.000원(①~⑩의 합계)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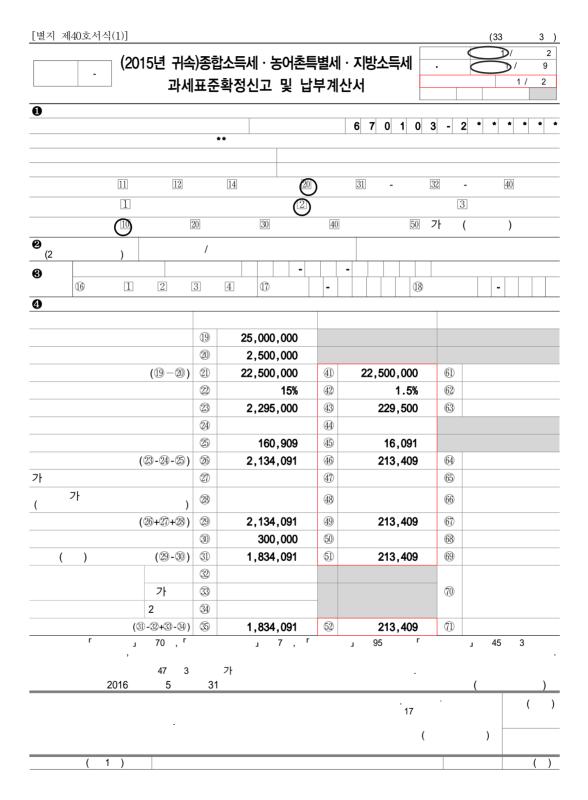
〈종합소득세〉

- ① 종합소득금액: 25,000,000원 (③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2500,000위 (**1** 소득공제명세서의 ②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과세표준: 22.500.000원 (①종합소득금액 ② 소득공제)
- ② 세율: 15%
- ② 산출세액: 2.295.000원
 - * 과세표준 22.500.000원×세율15%-누진공제액1.080.000원 =산출세액2.295.000원
- ② 세액공제: 160,909원(❸ 세액공제 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26 결정세액: 2.134.091 (23-24-25)
- ② 합계: 2.134.091원 (26+27+28)
- ③ 기납부세액: 300,000원 (16)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1.834.091원 (29-30)
- ③5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1.834.091원 (③1-32+③3-③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④란)은 과세표준(②)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④)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⑤)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⑥)란)에서 중간 예납세액(⑥)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④ 과세표준 : 22,500,000원 (21)란의 금액)
- ④ 산출세액: 229.500원 (④) × 세율1.5% 누진공제액108.000원 = 229.500원)
- ④ 세액감면 · ⑤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②와 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10/100=0원, ②5×10/100=16,091원)
- 46·49·51·52라의 금액: 213.409원 (43-44-45)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지 제40호서	식(1)]						((제9
•								
			40					
			1					
			××					
1/	9		1 -					
			305-90-****					
			2					
			20					
			809003					
			60,000,000					
			35,000,000					
	(-)	25,000,000					
			1.1					
			12.31					
16								
	17 ()	18)	(I	9	20	

[벽지 제40호 서식(1)]	(제13쪽))

9		•				
)(()	()	
	()					
)	25,000,000				25,000,000
)	25,000,000				25,000,000
(
(
,						
(
,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별지	제40호	호서식(1)]									(제15	5쪽)
•	소득	공제명세서										
					Γ							
					<u>'</u>							
					1,500,000							
					1,500,000							
			가 ()								
			(
			()								
	가		(500,000				()	500,0	100
										,		
			가 ()					()			
		,)	2,000,000						500,0	100
		(,	2,000,000				()		300,0	00
22	<u> </u>											
				()					()
0		1 6	7 0 1 0	3 - 2	* * * * * *							
				-						-		
				-						-		
				-								
		: =(가	=1,		=2,	=3, =5,	=6,		=4, =8(
4	~ ~6	(•	/ 1	.)		,	-5,	=0,	-r ,	-0(
				Γ		J	·					
		① r	-	J	()		18	19		20		
		(2) r		J								
		② + -			0 500 000		<u> </u>					
		(~ + ·	+ 21)		2,500,000		23			1		

[40 (1)]					(19)
@					
()					
B					
<u>'</u>		()	()	(×)	
()				
)				
(.)				
			12%		
			(15%)		
			12%		
			15%		
			15%		
			15%		
			15%		
			(25%)		
				70,000	
()					
10		100,000	100/110	90,909	
10		,		20,000	
'					
(٦)			160,909	
•					
г ,					
()					



(21)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별지 제40호서식(1)]

A 71						
ⓑ 가						
					가	가
					40/100 (60/100)	
					14/10,000	
_					20/100	
					7/10,000	
					40/100	
					(60/100)	
					14/10,000	
					10/100	
	•				40/100	
()	()		()	3/10,000	
	() ()		2/100	
			·		1/100	
			가		1/100	
					1/100	
	() () 가		1/100	
					0.5/100	
	() ()가		1/100	
					0.5/100	
					- / /	
					2/100	
					2/100	
					1/100	
					1/100	
					0.5/100 0.5/100	
	•				0.5/100	
	·				0.1/100	
					20/100	
	•				0.2/100	
	•				0.2/100	
					5/100	
					5,000	
	가				0.5/100	
					5/100	
	•				5,000	
					2/100	
					0.2/100	
'		가				
	가				5/100	
16						
(
				300,000		
				300,000		
					21	
					22	
					23	
					(24)	
					24 25	
				300,000	26	

	[82] (201		\\		(
		소득금액계산서(20)15十零)					
	x x		670103					
		××						
		809003						
		305-90-****						
		2015. 1. 1.						
		2015.12.31.						
		(30, 40)	(30, 40)	(30, 40)	(30, 40)			
		60,000,000						
	가							
	(- +)	60,000,000						
	(33)	35,000,000						
	16							
	<u></u> ① 가							
	(-16+17)							
19 가	(-18)							
20								
21)								
22)	(19+20-21)	25,000,000						
г	ر 70 4 3	13	32					
				2016 5	31			
				()			
		(82) 1					
			210mm × 2	97mm[900	/m²()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670103				
		××					
		809003					
		305-90-****					
		2015. 1. 1.					
		2015.12.31.					
		(30, 40)	(30, 40)	(30, 40)	(30, 40)		
		60,000,000					
	(+)	60,000,000					
	(<24>)	2,000,000					
가	16						
71	『⑦ 가(+ -⑩)	2,000,000					
	18	_,,,,,,,,,					
	<u>19</u> 20						
	② (®+®-②)						
	22						
	23						
	24 (21+22+23)						
	25	20,000,000					
	26	3,000,000					
	27)	10,000,000					
	28						
	29						
	30						
	31)						
	39 (25+26+27+28+29+30+31)	33,000,000					
33	(①+ ②)	35,000,000					

 $210mm \times 297mm[$ $60g/m^2($)]

				금 명 <i>·</i>				(
0							670103-2****	**
.				××	(:)
				××	(:)
9								
			()					
3								
	500,000	10	20	40		41 500,000	42	50
	300,000					300,000		
		-						
9								
		14)	15	16				
				(14·15)		()		
41	2014	2,500,000	2,000,000	500,000		500,000	0	
						210	mm ×297mm(80g/n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xx, 성 명 : 김 흥 덕

│**자료2**│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상 호 : 흥덕노래방, 사업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xx

② 신규사업자(2015.2.1개업)로 총수입금액: 80.000,000원

③ 신고유형: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924903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刊	고
본 배 자	우	인 자	72. 1. 3 80. 3. 5	없 음		
자		년 년	08. 9. 1 10. 1. 8	"		

|자료4| 주요경비 내용

① 매입비용: 5,000,000원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② 임차료: 10,000,000원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③ 인건비: 12,000,000원

인건비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날인한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음

자료5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1,200,000원을 납부 하였음



시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②사업소득명세서
 - ⇒ ⑤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⑥소득공제명세서 ⇒
 - ⑩세액감면명세서 ⇒ ❸ 세액공제 명세서 ⇒ ❺가산세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 ⑥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 311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 ⑨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 ① 신고구분: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신고서 25쪽)

- ※ 2012년 귀속부터는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1(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③ 사업장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 ④ 과세기간 : 2015.2.1(개시일)부터 2015.12.31까지로 적습니다.
- ⑤ 상호 : 흥덕노래방
- ⑥ 사업자등록번호: 301-**-****
- ⑦ 업태/종목:서비스/노래방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⑧ 업종코드: 서비스/ 노래방 코드인 924903을 적습니다.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rightarrow [조회/발급] \rightarrow [기타조회] \rightarrow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① · ③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27,000,000원
- * ②매입비용5,000,000원+%임차료10,000,000원+%)인건비12,000,000원=27,000,000
- ④ 기준경비율: 17.2%
- ⑤ 금액: 13,760,000원
-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17.2% = 13,760,000원
- 16 필요경비계: 40.760.000원
- ① 기준소득금액: 39,240,000원
-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필요경비계 40.760.000원
- 18 단순경비율 : 69.3%
- ① 금액: 24,560,000원
-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단순경비율69.3%) = 24.560.000원
- ② 비교소득금액: 58,944,000원
-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24,56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2.4배 (간편장부대상자) = 58,944,000원
- ② 소득금액: 39,240,000원
- * ⑰과 ⑳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② 매입비용 계: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5,000,000원을 ③란에 적은 후 합계(②+②+③)한 금액 5,000,000원을 ②라에 적습니다.
- 26 임차료 계 :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 10,000,000원을 20란에 적습니다.
- ③ 인건비 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③ 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 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12,000,000원을 ③ 란에 적은 후 합계(③)+③)한 금액을 ③ 란에 적습니다.
- ③4·35·36·37: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 홍덕노래방
- (5)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예 : 301-**-****)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하므로 31 을 적습니다.
- ⑧ 주업종코드: 노래방 코드인 924903 을 적습니다.
- ⑨ 총수입금액·⑪ 소득금액:「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웹란의 금액을 ⑨, ⑪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⑩ 필요경비 : ⑨ 총수입금액에서 ⑪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① 과세기간개시일 :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 ③ 과세기간종료일: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금액 39,240,000원
-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 ① 본인: 1.500,000원
- ② 배우자: 1,500,000원
- ③ 부양가족공제: 3,000,000원 (2명×150만원)
- ⑧ 인적공제 계(①~⑦): 6,000,000원
- (9)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200.000원
- (6)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합계 (⑧~①+⑤+②) : 7.200.000원

❸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300,000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00,000원입니다.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⑥ 세액공제 합계: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b) 가산세명세서 (신고서 제21쪽)

- ④ 보고불성실가산세: 240.000위
- * 지급금액 12.000.000원 × 2% = 240.000원
-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16 가산세 합계: 240.000원 (①~⑤의 합계)

4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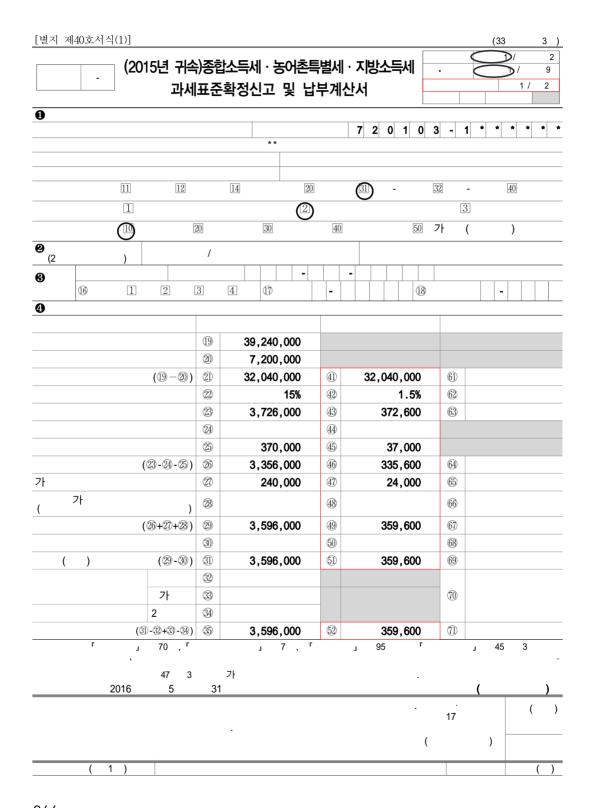
〈종합소득세〉

- ⑨ 종합소득금액: 39,240,000원{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⑤라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7,200,000원(**1**)소득공제명세서의 ②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과세표준: 32.040.000원(19종합소득금액 20소득공제)
- ② 세율·③ 산출세액: 15%, 3,726,000원 * 과세표준32,040,000원 × 세율15% - 누진공제액1,080,000원 = 3,726,000원
- ② 세액공제: 370,000원(● 세액공제 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26 결정세액: 3,356,000원 (23-24-25)
- ② 가산세: 240,000원
- ② 합계: 3,596,000원 (26+27+28)
- ③4 납부(환급)할 총세액: 3.596.000원 (②9-③0)
- ③6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3,596,000원(③1)-③2+③3-③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⑪란)은 과세표준(⑪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⑱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⑩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⑩란)에서 중간 예납세액(⑯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④ 과세표준 : 32,040,000원 (20란의 금액)
- ④ 산출세액: 372,600원 (④ ×세율1.5% 누진공제액108,000원 = 372,600원)
- ④ 세액감면 · ⑤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②와 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10/100=0원, ②×10/100=37,000원)
- 46 결정세액: 335,600 (43-44-45)
- ④ 가산세: 「지방세법」 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10/100=24,000원)
- 49·51·52란의 금액: 359,600원 (46+47)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7 40 1 1/ 9 1 301-**-*** 2 31 924903 80,000,000 40,760,000 (-) 39,240,000 2.1 12.31 16 (18) 17) () 19 20

[별지 제40호 서식(1)] (제13쪽) 9) ((() 39,240,000 39,240,000 39,240,000 39,240,000 1 () (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 1,500,000 1,200,000 1,500,000 (2) 3,000,000 ()) 가 () 가 () ()) 6,000,000 () 22 |7 |2 |0 |1 |0 |3 |- |1 |* |* |* |* |* 0 1 3 4 1 0 8 0 9 0 1 -4 1 0 0 1 0 8 - 3 : =0, =1, =2, =3, 가 ()=5, =7, =8(=6, 4~6 .) J ◎ 「 18 , () ②1) r

23

7,200,000

~ + <u>+ 21)</u>

[40	(1)]								(19
12									
	,	`							
	()							
B									
Г									
'	J					()	()	(×)	
	(2)				300,000	
	(6						000,000	
	(,	Ţ						
							12%		
							(15%)		
							12%		
							15% 15%		
							15%		
							15%		
							(25%)		
								70,000	
Г	-								
	()							
		10 10							
		10							
	(г	J +	г	J)			370,000	
	1				,			0.0,000	I
(4)									
г									
	()	1							
	\ /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별지 제40호서식(1)] (21) **ⓑ** 가 가 가 40/100 (60/100) 14/10,000 20/100 7/10,000 40/100 (60/100) 14/10,000 10/100 40/100) () 3/10,000 12,000,000 2/100 240,000 1/100 가 1/100 1/100)가 1/100 0.5/100))가 1/100 0.5/100 2/100 2/100 1/100 1/100 0.5/100 0.5/100 0.5/100 0.1/100 20/100 0.2/100 0.2/100 5/100 5,000 0.5/100 5/100 5,000 2/100 0.2/100 가 가 5/100 21) 22 23 24) 25

26

®			()				
가.											(40)
						()	()	(40)
											××
											2015. 2. 1.
											2015.12.31.
											301-**-****
			/				/		/		/
											924903
											80,000,00
											-
					(=34)						27,000,00
											-
		(+	-)							27,000,00
					(%)						17.
				(×)						13,760,00
	16		(+)							40,760,00
17		(-16)(0"		u	0")						39,240,00
			18		(%)						69.
			19	[×	(1 - 18)]						24,560,00
20		(19 ×)						58,944,00
21)	(1)		20)						39,240,00
			(•)					
		(= B + C	() (+ D)			(B)			(C)		(D)
	22	5,000		23	5,000,0		24			25	
	26	10,00	0,000	27)	10,000,	000	28			29	
	30	12,00	0,000	31)			32			33	12,000,000
(34) =)	34	27,00	0,000	35	15,000,	000	36			37)	12,000,000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광주 동구 중앙로 xx, 성 명 : 홍 길 동

| 자료2 │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상 호 : 길동식당, 사업장 : 광주 동구 중앙로 xx

② 2015. 10. 1. 폐업, 한식점업 수입금액: 94,100,000원 직전연도 수입금액 100,000,000원

- ③ 구청으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50,000,000원 지급받음 이전불능자산 보상금 25,000.000원 포함
- ④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900,000원 받음
- ⑤ 신고유형: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552101

| 자료3 │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72. 1. 3 75. 3. 5 02. 9. 1 05. 1. 8	없 음 # #	장애인

|자료4| 주요경비 내용

① 매입비용: 53,960,000원

매입비용 중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수취분이 500,000원(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재화의 거래건당 3만원 이하분 1,96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② 임차료: 16,000,000원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③ 인건비: 23,000,000원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자료5 기타자료

① 중간예납: 300.000원 ② 국민연금보험료: 연간 72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⑥사업소득명세서 ⇒
 - \P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Rightarrow \P 소득공제명세서 \Rightarrow \P 세액공제명세서 \Rightarrow \P 세액의 계산 \Rightarrow 납부서(소득세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 (7)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311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 ⑨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① 신고구분 :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제25쪽)

- ①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③ 사업장소재지 : 광주 동구 중앙로 xx
- ④ 과세기간: 2015.1.1부터 폐업일까지 적습니다.
- ⑤ 상호 : 길동식당
- ⑥ 사업자등록번호: 408-**-****
- ⑦ 업태/종목: 음식/한식점업
- ⑧ 업종코드: 음식/한식점업 코드인 552101을 적습니다.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rightarrow [조회/발급] \rightarrow [기타조회] \rightarrow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 한식점업 수입금액: 94,100,000원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 ※ 영업손실보상금(이전불능자산 보상금은 제외)은 25,000,000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 900,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 소득세 집행기준 24-51-7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 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① · ③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92,960,000원
- ② 매입비용 53,960,000원+36임차료 16,000,000원+36인건비 23,000,000원
- ① 기준경비율: 9.7% × 1/2
- ※ 2012년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 ① 금액: 5,820,000원
 -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9.7% × 1/2 = 5.820,000원
- 16 필요경비계: 98.780.000원
- ① 기준소득금액: 21,220,000원
 -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필요경비계 98,780,000원
- 18 단순경비율: 89.7%
- ① 금액: 12,360,000원
 -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단순경비율 89.7%) = 12,360,000원
- 20 비교소득금액: 37,080,000원
 -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12,36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3.0배 = 37.080.000원
 -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3.0배가 적용됩니다.

- ② 소득금액: 21,220,000원
 - *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② 매입비용 계: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51,500,000원을 ②란에 적고, 정규증빙서류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 500,000원을 ④란에 옮겨 적 으며,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1,960,000원을 ⑤란에 적은 후 이 세 가지를 합계(②+ ②+②)한 금액 53,960,000원을 ②란에 적습니다.
- 26 임차료 계: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 16,000,000원을 20 란에 적습니다.
- ③ 인건비 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3,000,000원을 ③ 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③ 란에 적은 후 합계(③)+③)한 금액을 ③ 란에 적습니다.
- 34·35·36·37: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 매입비용중 ② 500,000원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꼭 그 명세를 적어 제출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카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상호를 적습니다.
-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①(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 을 적습니다.
- ⑧주업종코드: 한식점업 코드인 552101 을 적습니다.
- ⑨ 총수입금액·⑪소득금액:「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웹란의 금액을 ⑨, ⑪란 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⑩ 필요경비: ⑨총수입금액에서 ⑪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①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 ③ 과세기간종료일: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 ① 대표공동사업자·⑤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란에 21,22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1,500,000원

② 배우자: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3,000,000원(2명×150만원)

⑤ 장애인(추가공제): 2,000,000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8.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720,000원

- (f)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합계 (⑧~①+⑤+②) : 8,720,000원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⑨ 종합소득금액 : 21,220,000원{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라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8.720.000원(**1** 소득공제명세서의 ②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과세표준: 12.500.000원(⑩종합소득금액 ⑩소득공제)
- ② 세율·③ 산출세액: 15%, 795,000원
- * 과세표준 12,500,000원 × 세율 15% 1,080,000원= 산출세액 795,000원
- ②6 결정세액: 795.000원

❸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300,000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3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 ⑥ 세액공제 합계: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명세서 (신고서 제21쪽)

- ① 무신고가산세: ㈜와 따 중 큰 금액인 159.000원을 적습니다.
 - ⑦ 수입금액 120,000,000원 × 0.07% = 84,000원
 - (나) 산출세액 795.000원 × 20% = 159.000원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⑤ 증빙불비가산세: 10,000원 정규증빙 미수취금액 500.000원 × 2% = 10.000원
 - ※ 직전년도(2014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을 지출하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Î) 가산세 합계: 169.000원 (①~(Î)의 합계)

(b)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 ① 중간예납세액: 300,000원을 적습니다.
- ① 기납부세액 합계: 300,000원 (①~⑩의 합계)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 ② 가산세: 169.000원
- ② 합계: 594.000원 (26+27+28)
- ③ 기납부세액: 300,000원(16)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라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294,000원 (29-30)
- ③5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294.000원 (③1-③2+③3-③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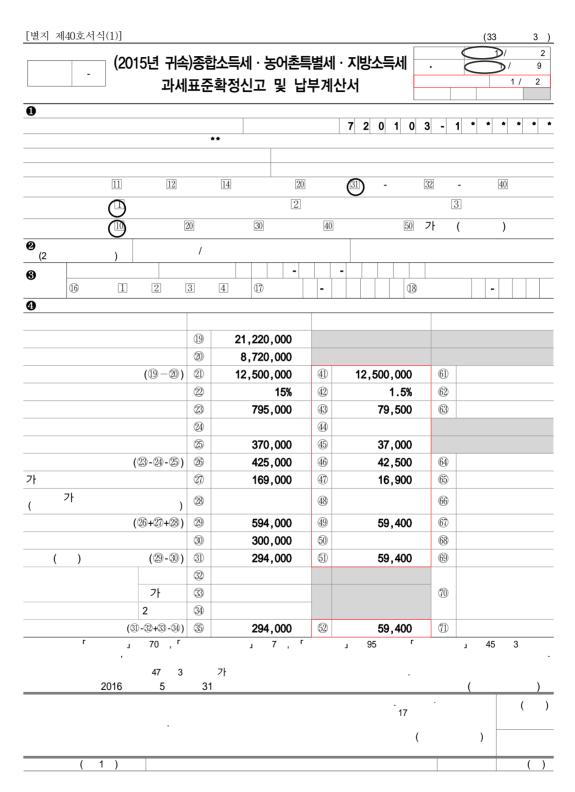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④)란)은 과세표준(②)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⑤)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⑥)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⑥)란)에서 중간예납세액(⑥)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41) 과세표준 : 12.500.000원 (21)라의 금액)
- ④ 산출세액: 79.500원 (④) ×세율1.5% 누진공제액108.000원 = 79.500원)
- ④ 세액감면·⑤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셸와 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셸×10/100=0원, ⑤×10/100=37,000원)
- ④ 결정세액: 42,500 (④3-④-⑥)
- ④ 가산세: 「지방세법」 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10/100=16,900원)
- 49·51·52란의 금액: 59,400원 (46+47)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7 40 1 х× 1/ 9 1 408-**-*** 1 31 552101 120,000,000 98,780,000 21,220,000 1.1 10.1 16 18 20 17) () 19



(제13쪽)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별지 제40호 서식(1)]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1 1100	- (1/1)						(1110
9		•					
)(()		(
	()						
)՝	21,220,000					21,220,000
)	21,220,000					21,220,000
10							
(
)							
(
)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① 소득공제명세서 ⅃ 1,500,000 720,000 1,500,000 가 (2 3,000,000) ((1) 2,000,000 가 () 가 () () (8,000,000 () 22 (7 2 0 1 0 3 - 1 * * * * * * 7 5 0 3 0 5 - 2 * * * * * * 3 0 2 0 9 0 1 - 3 * * * * * * 0 5 0 1 0 8 - 4 * * * * * 4 1 =0, =1, =2, =3, 가)=5, =6, =7, =8(4 6 ⅃ ①7 F (18) () د 19 ②l) r 23 8,720,000 (~ + <u>+ 21)</u>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40 (1)]					(19)
•					
()					
B		I			
г		()	()	(~)	
		()	()	(×)	
(2)				300,000	
(2)				300,000	
(·)					
	_		12%		
		((15%)		
			12%		
			15%		
			15% 15%		
			15%		
		((25%)		
				70,000	
()					
10					
10					
(١)			370,000	
1	·				
٦ , , ,					
()					

별지 제40호서	식(1)]											(2	1)
ⓑ 가													
<u> </u>										가		가	
										40	/100 /100)		
										(60	/100)		
									705 000	14/1	0,000		
								1	795,000 20,000,000	7/1	/100 0,000		159,00
									20,000,000	40	/100		
										(60	/100)		
										14/1	0,000		
											/100		
				•						40	/100		
()							()	3/1	0,000		
				((<u>'</u> ()				100		
							,				100		
							가				100		
										1/	100		
				()	- (()フ	ŀ		1/	100		
										0.5	5/100		
				()	-	()フ	ł		1/	100		
										0.5	5/100		
									500,000	2/	100		10,00
										2/	100		
										1/	100		
											100		
											5/100		
											5/100		
			•								5/100		
											/100		
										20	/100		
			•								2/100 2/100		
											100		
										5,0	100		
			기							0.5	5/100		
											100		
										5,0	000		
										2/	100		
				•		가				0.2	2/100		
				가		71				5/	100		
16													169,00
1 6													
								300,000					
		,								21)			
										22			
										23			
										24			
										25			
								300,000		26			
								300.000		(40)	1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8			()					-
			(
ł.						()		()		(40)
						(,		(,		(+0)
												××
											2	015. 1. 1.
											2	2015.10.1.
										,		408-**-***
			/				/			/		/ EE0404
												552101 120,000,
												-
					(=34)							
					(-09)							92,960,
				`								-
		(+	-)								92,960,
					(%)							4.85%
				(×)							5,820,
	16		(+)								98,780,
17)		(- 16)(0"		"0"	")							21,220,
			18		(%)							89.7%
		100	19	[×	(1 - 18)]							12,360,
20		(19 ×)							37,080,
	(17) (2	20)							21,220,
•			(•)					
		(A)				(B)			(C)			(D)
	22		0,000	23	51,500		24	50	00,000		25	1,960,000
	26	16,00	0,000	27	16,000	,000	28			2	29	
	30	23,00	0,000	31)	23,000	,000	32			3	33	
(34) =)	34)		0,000	35	90,500		36	50	00,000	(3	37)	1,960,000

[20 5] (2013.06.28)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408-1	**_****	
				7201	03-1*****	
,			,			
		()				
	()	()				
		,				
1		408-11-****	7			500,000
			2	10mm ×297mm[80g/m²	80g/m²]

284 • • •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광주 북구 금호로 xx, 성명: 김금호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사업장: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② 착공일: 2015.5.1, 사업개시일: 2015.10.1

③ 업종: 주택신축판매업

④ 2015년 분양수입금액: 800,000,000원, 2014년 수입금액: 0원

⑤ 신고유형: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451103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刊	고
본 배 자	수	인 자 녀	72. 1. 3 75. 3. 5 08. 9. 1	없 음 #		
자		녀	10. 1. 8	"		

자료4 주요경비 내용

① 매입비용: 550,000,000원

외주가공비(건설비): 세금계산서 수취 300,000,000원

토지(5년 보유) 취득원가: 200,000,000원 자재비: 세금계산서 수취 50,000,000원

② 인건비: 50,000,000원

인건비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날인한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음

자료5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1,200,000원을 납부하였음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B)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①사업소득명세서 ⇒ ②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①소득공제명세서 ⇒ ⑥에 세액공제 명세서 ⇒ ⑥이 가산세명세서 ⇒ ⑥에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 311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 ⑨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 10 신고구분: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25쪽)

- ※ 2012년 귀속부터는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 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①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1(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③ 사업장소재지: 광주 북구 금호로 ××
- ④ 과세기간 : 2015.10.1(개시일)부터 2015.12.31까지로 적습니다.
- ⑤ 상호 : 영광건설
- ⑥ 사업자등록번호 : 410-**-***
- ⑦ 업태/종목: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 ⑧ 업종코드 : 토지보유 5년이상 주택신축판매업 코드인 451103을 적습니다.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800.000.000위
- ①· ③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600.000.000원
- ② 매입비용 550,000,000원+③ 인건비 50,000,000원
- ⑭ 기준경비율: 7.3%
- ① 금액: 58,400,000원
 -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7.3% = 58,400,000원
- 16 필요경비계: 658,400,000원
- ① 기준소득금액: 141,600,000원
 -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필요경비계 658,400,000원
- 18 단순경비율: 87.6%
- ① 금액: 99,200,000원
 -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단순경비율87.6%) = 99,200,000원
- ② 비교소득금액: 238,080,000원
 -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99,2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2.4 배(간편장부대상자) = 238,080,000원
- ② 소득금액: 141.600.000원
 - *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② 매입비용 계: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350,000,000원을 ③난에 적고, 토지구입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200,00,000원을 ⑤난에 적은 후 합계(③+④+⑤)한 금액 550,000,000원을 ②난에 적습니다.
- ③ 인건비 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③ 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 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50,000,000원을 ③ 난에 적은 후 합계(③ +③)한 금액을 ③ 난에 적습니다.
- 34·35·36·37: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소득세과-254 (12.3.27)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 영광건설
-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예 : 410-**-****)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을 적습니다.
- ⑧ 주업종코드 : 주택신축판매업(토지5년 보유) 코드인 451103을 적습니다.
- ① 총수입금액·①소득금액:「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②, ②난의 금액을 ③, ①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⑨ 필요경비 : ⑨ 총수입금액에서 ⑪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③ 과세기간개시일: 계속사업자는 1.1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을 적습니다.
- ①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141,600,000원

●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1,500,000원 ② 배우자: 1,500,000원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 ③ 부양가족공제: 3,000,000원 (2명×150만원)
- ⑧ 인적공제 계(①~⑦): 6.000.000원
- ①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200,000원
- (b)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 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합계 (8)~(1)+(15)+(21)): 7.200.000원

ⓑ 가산세명세서 (신고서 제21쪽)

- ④ 보고불성실가산세: 1,000,000원 지급금액 50,000,000원 × 2% = 1,000,000원
-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16 가산세 합계: 1,000,000원 (①~⑤의 합계)

❸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300,000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3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특별세액공제 중 표준세액 공제: 70,000원
-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 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 ⑥ 세액공제 합계: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9) 종합소득금액: 141,600,000원{ **9**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5)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7,200,000원(**1**)소득공제명세서의 ③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과세표준: 134.400.000원 (19종합소득금액 20소득공제)
- ② 세율·② 산출세액: 35%, 32.140,000원
 - * 과세표준 134,400,000원 × 세율35% 누진공제액14,900,000원 = 32,140,000원
- ② 세액공제: 370,000원 (18)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26 결정세액: 31,770,000원

- ② 가산세: 1,000,000원
- 29 합계: 32,770,000원 (26+27+28)
- 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32,770,000원 (29-30)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이하인 금액
- ③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16.385.000원
- ③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16,385,000원 (③1-②2+③3-③4)

〈지방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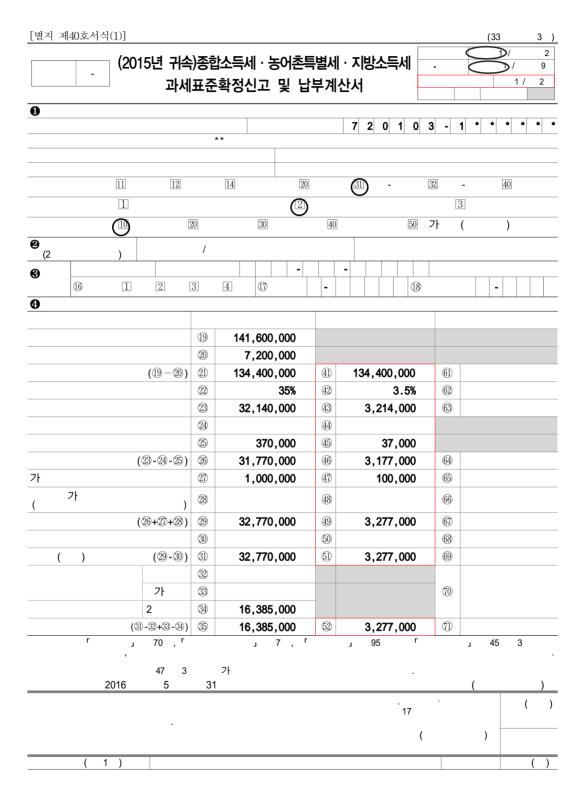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⑪란)은 과세표준(⑪란)을 옮겨 적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⑪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⑩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⑪란)에서 중간 예납세액(⑪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④ 과세표준 : 134,400,000원 (②라의 금액)
- ④ 산출세액: 3,214,000원 (④) × 세율3.5% 누진공제액1,490,000원 = 3,214,000원)
- ④ 세액감면 · ⑤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②와 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10/100=0원, ②×10/100=37,000원)
- 46 결정세액: 3,177,000 (43-44-45)
- ④ 가산세: 「지방세법」 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②×10/100=100,000원)
- 49·51·52란의 금액: 3,277,000원 (46+47)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7 40 1 2 ** 1/ 9 1 410-**-*** - 1 2 31 451103 800,000,000 658,400,000 (-) 141,600,000 10.1 12.31 17) () 18 19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별지 제40호	. 서식(1)]						(제13쪽)
9		•					
)((()	()	
	()						
-	(141,600,000					141,600,000
)	141,600,000					141,600,000
•							
(
)							
(
)							
,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 1,500,000 1,200,000 1,500,000 가 (2) 3,000,000 ()) 가 () 가 () () 6,000,000 () (7 2 0 1 0 3 - 1 * * * * * * 0 1 7 5 0 3 0 5 - 2 * * * * * * 3 0 8 0 9 0 1 - 4 * * * * * * 4 1 0 0 1 0 8 - 3 * * * * * * =0, =1, =2, =3, 가 (=7, =8()=5, =6, 4~6 Γ (T) r () (18) ② + + ②) 23 7,200,000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40	(1)]							(19
•	()						
•								
В	J				()		()	
					()	()	(×)	
	(2)				300,000	
	(6)				, , , , , , , , , , , , , , , , , , , ,	
	(•)			400/		
						12% (15%)		
						12%		
						15% 15%		
						15%		
						15% (25%)		
						(25%)	70,000	
г	J							
	()							
	10 10							
	l l							
	(_L 7	+ r		٦)			370,000	
4								
г	J							
	()							

27 79 (40/100)	ⓑ 가				
(a) (40/100) (60/100) (14/10,000) (7/10,000) (60/100) (60/100) (7/10,000) (60/100) (60/100) (7/10,000) (7/10,000) (7/10,000) (7/10,000) (80/100) (9/100) (1/10	4 × 1			가	가
14/10,000 20/100 7/10,000 40/100 (60/100) 14/10,000 10/100				40/100	
20/100 7/10,000 40/100 40/100 40/100 14/10,000 14/10,000 14/10,000 14/10,000 14/10,000 14/10,000 14/100				(60/100)	
7/10,000 40/100 (60/100) 14/10,000 10/100 40/100 40/100 40/100 40/100 (10/100 40/100 (10/100 40/100 (10/100 40/100 (10/100 40/100 (10/					
(6)/100) (6)/100) (1)/100 (1)/				20/100	
(60/100) 14/10,000 10/100 40/100 40/100 () () 3/10,000 () 1/100 11/100 11/100 () () 2† 1/100 () 1/10				7/10,000	
14/10,000 10/100 40/100 40/100 40/100 40/100 1,000,000 1/100 1,000,000 1/1				(60/100)	
10/100 40/100 40/1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 1,000,000 1,000				14/10.000	
() () () 3/10,000 () 3/10,000 () () () () 50,000,000 () 2/100 () 1,000,000 () 1/100 (
() () 3/1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 1,000,000 1,000				40/100	
() () 50,000,000 2/100 1,000,00 1/1000,00 1/1000	()		()		
1/100			50,000,000	2/100	1,000,00
() () 2½ 1/100		, , ,		1/100	
() () 7† 1/100 0.5/100 1/100 0.5/100 1/100 0.5/100 1/100 0.5/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0.5/100		가		1/100	
() () 7}				1/100	
() () 7½		() ()가			
0.5/100				0.5/100	
2/100 2/100 1/100 1/100 1/100 1/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1/100 0.1/100 0.2/100 0.2/100 0.2/100 0.5/10		() ()가		1/100	
2/100 1/100 1/100 1/100 1/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2/100 0.2/100 0.2/100 0.2/100 0.2/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2/				0.5/100	
2/100 1/100 1/100 1/100 1/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1/100 0.2/100 0.2/100 0.2/100 0.2/100 0.2/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2/				2/100	
1/100 1/100 1/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2/100 0.2/100 0.2/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2/100				2/100	
1/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1/100 0.2/100 0.2/100 0.2/100 0.2/100 0.2/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2/10					
0.5/100				1/100	
0.5/100 0.1/100 0.1/100 20/100 0.2/100 0.2/100 0.2/100 0.5/100 5,000 7				0.5/100	
0.1/100 20/100 0.2/100 0.2/100 0.2/100 0.2/100 0.2/100 0.2/100 0.2/100 0.2/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2/1				0.5/100	
20/100 0.2/100 0.2/100 0.2/100 0.2/100 0.2/100 0.2/100 0.5/100 0.5/100 0.5/100 0.5/100 0.5/100 0.2/1				0.5/100	
				0.1/100	
				20/100	
0.2/100 5/100 5/100 5,000 7† 0.5/100 5,000 5/100 5,000 2/100 5,000 2/100 5,000 2/100 5/1				0.2/100	
				0.2/100	
7 0.5/100 5/100		•		5/100	
5/100 5,000 2/100 0.2/100				5,000	
5,000 2/100 0.2/100				0.5/100	
2/100 0.2/100				5/100	
0.2/100 7† 5/100 10 10 10 10 10 10 10		•		5,000	
7 5/100 6					
7 5/100 10 10 21 22 23 24 26 26 27 28 28 29 29 20 20 20 20 20 20 20 20				0.2/100	
Image: control of the contr		가		5/100	
20 22 23 24 25					
22 23 24 25	6				
22 23 24 25				n	
3 24 3 3					
				23	
				24)	
96					
96					
			(4	26)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	()			
가.							
			()	()		(40)
							2 **
							2015.10. 1.
							2015.12.31.
							410-**-***
	/		/		/		/
							451103 800,000,000
							-
		(=34)					600,000,000
		(@)					-
	(+ -)						600,000,000
	, , ,	(%)					7.3%
		(×)					58,400,000
	<u> </u>						658,400,000
17	(-(6)(0"	"0")					141,600,000
	18	(%)					87.6%
	19 [99,200,000
20	(19 ×)					238,080,000
21)	(17) 20)					141,600,000
	(•)			•	
	(A) (=B+C+D)		(B)		(C)		(D)
	22 550,000,000	23 350,000,		4		25)	200,000,000
	26	27	2	3)		29	
	30 50,000,000	31)	3	2		33	50,000,000
(34) =)	③ 600,000,000	350,000,	000 3	6)		37)	250,000,000
	:	1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학원강사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xx

성 명 : 강 하 늘 (여성)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근무처 : 성실학원

② 2015년 수입금액: 60,000,000원 2014년 수입금액: 20,000,000원

③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세 1,800,000원, 지방소득세 180,000원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刊	고
본 인	81. 1. 3			
배 우 자	80. 3. 5	소득없음		
자 녀	04. 9. 1	소득없음		

자료3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600,000원을 납부하였음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를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③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④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2쪽)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전자우편주소, ⑦주소지 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를 각 란에 적습니다.
- ① 신고유형:「③ 추계-단순율」입니다.
 - ※ 이 신고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단순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기장의무: ②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 학원강사로서 2014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① 소득구분: ⑩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를 합니다.
- ③ 업종코드: 학원강사 코드는 940903 입니다.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4) 단순경비율(%):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인 61.7을 일반율난에 적습니다.
- (15) 신고구분: "10.정기신고"에 ○를 합니다.
-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2쪽~제3쪽)

- ③ 총수입금액: 60,000,000원
 - 총수입금액은 2015년도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③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33,960,000원
 - ③ 총수입금액에 ①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40.000.000위×61.7%+20.000.000위×46.4% = 33.960.000위
-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 : 기본율 61.7%, 초과율 46.4%
-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 ③ 종합소득금액: 26,040,000원
- * 종합소득금액은 ③ 총수입금액에서 ②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 ③)총수입금액60,000,000원 ③ 필요경비33,960,000원 = 26,040,000원
- ③ 소득공제: 5,600,000원
-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⑤~⑪의 인적공제, ⑫~⑭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③ ~ ③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입니다.
-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 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③ 본인: 1.500.000원
- ③6 배우자: 1.500.000원
- ③ 부양가족: 1,500,000원 (1명)
- ③ ∼ ④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입니다.
- ④ 부녀자 : 500,000원
 - *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 500,000원 대상이 된다.
- ④ 연금 보험료 공제: 6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 46 과세표준 : 20,440,000원
- ④ 세율: 15%
- ④ 산출세액: 1.986.000원
- * 20,440,000원 × 15% 1,080,000원
- ④ 세액공제: 세액공제 명세서(④~55) 의 합계금액 220,000원을 적습니다.
- 50~56 세액공제 작성란입니다.
- 50 자녀세액공제: 150,000원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학원강사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⑤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 58 결정세액: 1,766,000원 (48-49-57)
- 68 총결정세액 :1.766,000원 (58+59)
- ⑦ 원천징수세액: 1.800.000원
- ①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34,000원(圖-⑩-⑩)
 - * 원천납부한 세액(⑩)이 총결정세액(⑱) 보다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②화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 * 환급받을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 (통장 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 ⑦ 과세표준 : 20.440,000원 (46)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옮겨 적습니다.)
- 74 산출세액: 198.600원 (46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1.5%-108.000)
- ⑦5 세액공제·감면: 22,000원 ((④+57)×10%)
- ⑦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 180,000원 (⑩×10%)
- 78 납부할 세액 또는 확급받을 세액 : 3.400위 (74-75+76-77)

			[40	(4)] <	2	016.3.16>	•		(4 1)
			과시	네표준확경	정신고 및	! 납 박	지방소득 루계산서 대상자용		•	1/ 2 1/ 9
										810103-2*****
0										
						**				
									30	
		32	-			2			40	
		94090	03		(%)		61.7			, [20]
_		0.000			(**)	<u>가</u>	100			400 456700 **
_0	<u>'</u>		16	/	8		17			123-456789-**
		:								60,000,000
<u>32</u> <u>33</u>		. 👊	<u></u>	: 31	×		(%)			33,960,000
$-\frac{33}{34}$: 31		35~45)						26,040,000 5,600,000
	, 	•		₩ ₩ <i>)</i>						0,000,000
	0		1	81010	03-2*****		35		1	1,500,000
	3		1		05-1*****		36		1	1,500,000
	4		1	0409	01-4*****		37	가	1	1,500,000
							38			
							가 ③		4	E00, 000
							40 41	가	1	500,000
	42	()		: 4						
	43		:		400/		. 70			600,000
	44		:		40%		72			
	45									
46		: 33-34	("0"		"0")			20,440,000
47										15%
48		: 46×47 -	16	(4 0~56))					1,986,000
49) 	:	`.	,		•				220,000
	50	2	: 1	15,	2	: 30	+ 2	1 3	0 1	150,000
		6 2 :	15 ,	2 : 15	가 2 5 + 2	1	15			
		•	(1	30)						
	(51)		: 4	(40 15%	00) 6)	12%				
	-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학원강사

												(4 2
Г	52			:								
	24			•								
		15%(25	5%)									
	53			: 7								70,000
	54)			:		36						
	55			:	가					2	•	
	56			:	ر ،				10	100/1	10 .	
57)												
58				9-57("			"0")			1,766,000
59	가	:	가		(60~67)						71	71
											가 40/100	가
											40/100 (60/100)	
	60										14/10,000	
											20/100	
											7/10,000	
가											40/100 (60/100)	
'	61)										14/10,000	1
											10/100	
	62	()	-					()	3/10,000	
	(C)					()			2/100	
	63			-			,				1/100	
	64				•						0.5/100	
	0.00										0.1/100	
	65										20/100	
						•					5/100	
	66					•					5,000	
	(m)				가						1/100	
	67)				•						5/100	
_					•						5,000	
68		69	: 58	+59								1,766,000
		70					()	1,800,000
71)						: 68-	69 - (70)				,	-34,000
						•						,
72		:			46							20,440,000
73		: 4										1.5%
74)		:	72 x (73 -	(4)				198,600
75	71				⑤) × 10%							22,000
76 77	∠ Γ		59 ×	10%(4	. 70 10%)						100 000
<u>10</u> 78					: 70 × 10%	(74) - (75) +	- FA FA					180,000 -3,400
10)		г		70 ر				Г	J	45 3		-3,400
47	,	3	가	2016	5						. (,
		1. 2. 3. 2		((45 1 (31)	,		1 (, 가) 가 가 가))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자료1 의류판매 사업소득

주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 **

성명: 박성실

① 2015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 70,000,000원 1기(1.1~6.30) 3천만원, 2기(7.1~12.31) 4천만원

2014년 수입금액: 58,000,000원

② 상호 : 성실의류(123-**-****), 업종 : 소매 외의

③ 신고유형: 단순경비율(업종코드 523231)

④ 사업장은 임차하고 종업원은 1명임

⑤ 수도권 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함

|**자료2**| 상가임대 사업소득

① 2015.1.10에 과세 사업자등록 (506-90-*****)

② 2015귀속 수입금액: 6,000,000원

③ 신고유형: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701201)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67. 3.29 68. 5. 8 04.11.10	없음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 사업장이 2개이므로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 **①**소득공제명세서 ⇒ **②**세액감면명세서 ⇒ **③** 세액공제 명세서 ⇒ **⑥** 기납부세액명세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③2추계-단순율에 ✔표를 합니다.
- ⑨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 ① 신고구분: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적습니다.>

- ① 소득구분코드: 30을 적습니다.
 -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 ② 일련번호:1을 적습니다.
 -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 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 ⑤ 사업자등록번호: 506-90-****
 -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32를 적습니다.

- *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32
- ⑧ 주업종 코드 : 상가 임대 업종코드인 701201를 적습니다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6,000,000원
- ① 필요경비: 2,304,000원
- * 상가임대(701201)의 단순경비율 38.4%
-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6,000,000 × 단순경비율 38.4% = 2,304,000
- ① 소득금액: 3,696,000원 (⑨총수입금액 ⑩필요경비)
- ② 과세기간개시일: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 ③ 과세기간종료일: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 (4) 대표공동사업자·(15)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은 뒤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① 소득구분코드: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1을 적습니다.
 -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난 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성실의류", "123-**-****"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32를 적습니다.
- *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32
- ⑧ 주업종 코드 : 소매 외의 코드인 523231를 적습니다.
- * 남녀외의, 작업복, 가죽옷 등 소매업 업종코드 523231
- ⑨ 총수입금액: 70,000,000원
- ① 필요경비: 62,300,000원
- * 셔츠 등 외의 소매업(523231)의 단순경비율 89.0%
-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70,000,000 × 단순경비율 89.0% = 62,300,000
- ① 소득금액: 7.700.000원 (⑨총수입금액 ⑩필요경비)
- ① 과세기간개시일: 계속사업자이므로 "1.1"을 적습니다.
- ③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2.31"을 적습니다.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란에 3,696,000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7,700,000원을 각각 적고, 합계란에 11,396,000원을 적습니다.
-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 (5)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①라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 ① 본인: 1,500,000원
- ② 배우자: 1.500.000원
- ③ 부양가족공제: 1,500,000원(1명×150만원)
- ⑧ 인적공제계(①~⑦): 4,500,000원
- (b)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3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 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합계 (⑧~①+⑤+②): 4.500.000원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⑨ 종합소득금액: 11,396,000원 {13쪽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라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4,500,000원 (15쪽 🕕 소득공제명세서의 ②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과세표준: 6.896.000원 (종합소득금액② 소득공제②)
- ② 세율·② 산출세액: 6%. 413.760원
 - * 과세표준 6,896,000원 × 세율6% = 413,760원

₩ 세액감면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 ① 해당 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③ 세액감면: 27.956원
- *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❸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150,000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150.000원입니다.
-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 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 ⑥ 세액공제 합계: 22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 ② 세액감면: 27,956원 (₩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세액공제: 220,000원 (18)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26 결정세액: 165,804원 (23-24-25)
- ② 합계: 165,804원 (26+27+28)
- ③ 납부(화급)할 총세액: 165.804원 (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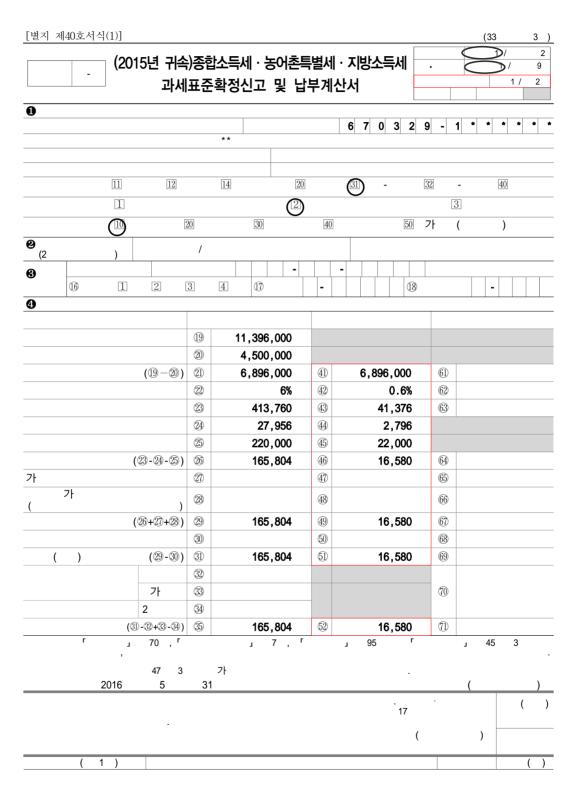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④란)은 과세표준(②란)을 옮겨 적고, 세율 0.6%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④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⑤)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⑥)란)에서 중간 예납세액(⑥)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④ 과세표준 : 6,896,000원 (2)란의 금액)
- ④ 산출세액: 41,376원 (④ × 세율0.6% = 41,376원)
- ④ 세액감면 · ⑤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셸와 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셸×10/100=2,796원, 셸×10/100=22,000원)
- 46 · 49 · 51 · 52 라의 금액: 16.580원 (43-44-45)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30 40 1 1 1	
1 1	
** **	
1/ 9 1 - 1 - 1	
71	
506-90-**** 123-**-****	
- 1 2 2	
32 32	
701201 523231	
6,000,000 70,000,000	
2,304,000 62,300,000	
(-) 3,696,000 7,700,000	
1.10 1.1	
12.31 12.31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40	1						(13)
9		•					
			() ()	(
	()						
	()	3,696,000					3,696,000
)	7,700,000					7,700,000
)	11,396,000					11,396,000
•	,				1		
•							
•							
(
(
(
(
(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1,500,000 1,500,000 가 (1) 1,500,000)) 가 () 가 () ()) 4,500,000 () 22 |6|7|0|3|2|9|-|1|*|*|*|*|* 0 3 6 8 0 5 0 8 - 2 4 =0, =2, =1, =3, 가 ()=5, =6, =7, =8(4 6 ①7 F 18 19 20 J () ②1) **г** ② (~ + + ②) 23 4,500,000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40 (2)	(1)]							(19
	()						
	7 ()		27,9	56	123-**	*_***
•					27,95	56		
Г								
					()	()	(×)	
		1	1)				150,000	
		(6)				100,000	
		(.)					
						12% (15%)		
						12%		
						15%		
						15% 15%		
						15%		
						(25%)	70,000	
Г								
'	() T						
	·	10						
		10						
	(г	J +	г	٦)			220,000	
(
Г								
'	()	1						
	. ,							

3			세액	台记	선(번	세)1	신청시	7	(3	1
									123 -** -**	* * *
)									670329	
				:				* * *		
9	20	15	1 1			2015	12	31		
<u> </u>										
<u>-</u>										
0 0				16		111				
)) ()			5	16		174				
0			5	16		13E				
<u> </u>			6	8		112	10%	279,567	27,956	
15			11	6		13J		•	i i	
06			11	6		13K				
10			11	2	5	179				
nn.			27		4	400				
08			(2007.2.28		19888	190				
09			30	2	7	192				
10			20	2	7	121				
			30		′	13A				
1)			58	1	1	13F				
12			60	5		116				
()		00			110				
13	`		60	5		169				
()									
19 19			60			108				
D			61			109 117				
D			63			104				
18			64			107				
19	() 65			11B				
20			65	3		119				
()									
20			79			11L				
<u>2</u> 2)			79	7		11M				
3	•		85	2	5	11A				
3			96			131				
25			10			124				
26			10	4	21 5	11F				
1) ()			10	4	21 5	11H				
28			11	6	14 5	181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3	2)
129	•	116	15 7	182					
130		116	15 7	158					
13)	•	116	21 7	197					
132	•	116	21 7	198					
133		116	25 6	11C					
134	•	116	26 9	11G					
135		116	27 5	13H					
17				164					
128				1A4	16,600,0	0000	3,320,000		
4				(13), 19	~ 126)			
*	/	: (/), (/), (/), (/),	, (/)		
		(× 50	%)					
					×	1,000)		
	× 20%		. ,	\•					
	16	ĮΝ	lin(,		+)				
17		(16) -)	\	. ,				
Г	1						•		
						2016		31	` `
							()
					210mm × 297mm[80g/m ⁶	80	0g/m']

11.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자료1 현 근무지 및 전근무지의 연말정산 내역

성명 : 서공정

구 분	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근 무 처 명	(주)선경	세정(주)
근무처 사업자번호	108-81-****	123-81-****
총 급 여	31,000,000	8,000,000
급 여 총 액	23,000,000	6,000,000
상 여 총 액	8,000,000	2,000,000
근 로 소 득 공 제	9,900,000	4,700,000
근 로 소 득 금 액	21,100000	3,300,000
주택자 금 공 제	1,400,000	
특 별 세 액 공 제 대 상		- 세정(주)에서 퇴직자
보 험 료 공 제 대 상	1,000,000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의료비공제대상	2,230,000	금액이 기본공제액에 미
교육비공제대상	1,500,000	달하여 납부세액 없음 - (주)선경에서 세정(주)의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00,000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하
연 금 저 축 납 입 액	400,000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500,000	없음
결정세액(소득세)	0	

- * 현금영수증 사용액: 13,700,000원(의료비지출액 포함)
- * 의료비지출액 : 3,400,000원(전액 경로우대자인 모를 위하여 지출)
- * 전년도 본인의 체크카드 등 사용내역 없음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u>_</u>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51. 2. 3		
배	우	자	53. 4. 5	없 음	
	모		26. 3. 6	<i>"</i>	
자		녀	96. 8. 9	"	만 19세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❸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⑪소득공제명세서 ⇒ ⑯세액공제명세서 ⇒ ⑩기납부세액명세서 ⇒ ❶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 ⑩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⑨ 기장의무 : ③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① 신고구분 :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 (신고서 제11쪽)

- ① 소득구분코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별로 각각 51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근무지별로 1, 2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상호: 근무처명을 각각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근무한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5) 총수입금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 총급여 라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39,000,000원 (31,000,000원 + 8,000,000원)
- ⑥ 필요경비: 아래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금액 11,100,000원을 합계란의 필요경비란에 적고, 총수입금액(⑤)의 금액이 큰 근무지부터 차례로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근 로 소 득 공 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⑦ 소득금액: ⑤총수입금액 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각각 적습니다. 소득금액의 합계는 27.900.000원입니다.
- ⑧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각 근무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6월결정세액 라의 금액을 적습니다. (주)선경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0원입니다.
 - * 원천징수영수증의 <u>⑥</u>차감징수세액 을 적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과다(과소)공제하는 결과가 되며, 과다공제의 경우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란에 27,900,000원을 적습니다.
-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 ① 본인: 1,500,000원 ② 배우자: 1,500,000원
- ③ 부양가족공제: 3,000,000원(2명×150만원)
 -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직계존속 1955.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1995.1.1 이후 출생)을 공제합니다.
- ④ 경로우대자(1945.12.31 이전 출생자) 추가공제: 1.000.000원
- ⑧ 인적공제계(①~⑦): 7,000,000원
- ①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500,000원
- ③ 주택자금공제: 1.400.000위
- ②1) 특별공제합계(근로소득이 있는 자 란에 기재): 1.400,000원(瓜)~19 합계)
- (b)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5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 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조특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을 각각 적습니다.

11.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⑨ 금액: 1,185,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 *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13,700,000원 - 총급여액 39,000,000원 × 25%) × 30% = 1,185,000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공란으로 둡니다.
-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1,185,000원
- ② 소득공제 합계 (⑩~⑭+②+②) : 10,085,000원

4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② 종합소득금액: 27,900,000원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10.085.000원
 - *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과세표준: 17.815.000원(21)-②)
- ② 세율: 15%
- ② 산출세액: 1,592,250원 (17,815,000 × 15% 1,080,000)
-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692,000원
 -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692.000원을 적습니다.
 - * 산출세액 1.592.25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715,000원+(292,250×30%)=802,675원
 - * 공제한도 : Max(①,②) = 692,000
 - ①74만원 [(3,900만원-3,300만원)×8/1,000] = 692,000
 - ②66만원

a) 공제액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②) ①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②) ①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②50만원				

○자녀세액공제: 150,000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인이므로 자녀세액공제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6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400.000원

연금계좌의 연금저축납입액 4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공제율 15%를 적용한 6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 *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 15%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20,000
 -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을 적고 1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액 120,000원을 적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334,500원

의료비공제 대상금액: 2,230,000원

* 의료비공제는 총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지출액 3,400,000원 - 총급여액 39,000,000원 × 3% = 2,230,000원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대상금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한 세액공제액 334,5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11.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225,000원

교육비공제 대상금액: 1.500.000원

공제율 15%를 적용한 세액공제액 225,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1.581,5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② 세액공제: 1.581.500원

* 🚯 세액공제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⑤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28 결정세액: 10.750원 (25-26-27)

③1) 합계: 10.750원 (28+29+30)

③ 기납부세액:0원

* 16 기납부세액명세서의 11)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10,750원(③1-③2)

36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10,750원(33-34-35)

●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0원을 적습니다.

① 기납부세액 합계: ()원(①~①의 합계)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지방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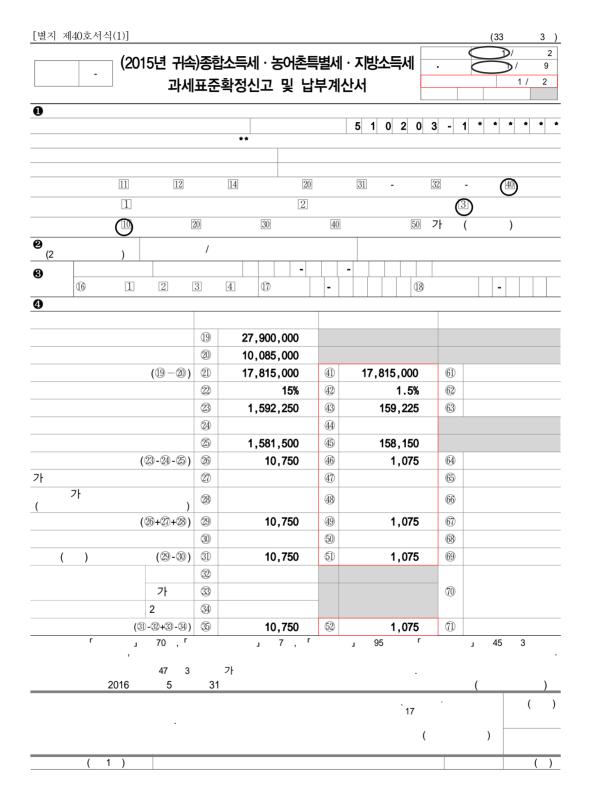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④란)은 과세표준(②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④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⑤)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⑥)란)에서 중간예납세액(⑥)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41) 과세표준 : 17.815.000원 (21)라의 금액)

④ 산출세액: 159,225원 (④) ×세율1.5% -108,000=159,225원)

④ 세액감면・⑤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②와 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10/100=0원, ⑤×10/100=158,150원)

46·49·51·52라의 금액: 1.075원 (43-44-45)





11.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40] (11) 8 (() () 51 1 31,000,000 11,100,000 19,900,000 0 621-81-**** () 51 2 8,000,000 0 8,000,000 0 621-81-**** 39,000,000 11,100,000 27,900,000 0

[별지 제40호	서식(1)]							(제13쪽)
9		•						
			()	((
)		
()							
()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								
(
)								
(
)								



(제15쪽)

11.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소득공제명세서 1,500,000 500,000 1,500,000 가 (2) 3,000,000 1,000,000 (1)) 1,400,000 가 () 가 (1,400,000) () 7,000,000) () 22 (0 1 2 1 2 6 0 3 0 6 3 1 4 1 9 6 0 8 0 9 - 1 : =0, =1, =2, =3, (가 =8()=5, =6, =7, 4~6 .) ◎ ٢ (18) 20 126 2 (1,185,000 ②1) r 23 10,085,000 + + 21)

[별지 제40호서식(1)]

[40 (1)]					(19)
®					
()					
$^{\odot}$					
_					
' 1		()	()	(×)	
				692,000	
	\				
(1)			150,000	
(6)				
(.)				
			12%		
			(15%)		
		400,000		60,000	
		1,000,000	12%	120,000	
			15%		
		2,230,000	15%	334,500	
		1,500,000	15%	225,000	
			15%		
			(25%)		
L 1					
(
10					
10					
(۱)			1,581,500	
	۱)			.,001,000	
•					
r ,					
()					



11.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별지 제40호서스	1(1)]									(21)
ⓑ 가										
w / r									ı.	71
									ነት 40/100	가
								(60/100)	
									4/10,000	
									20/100	
								/	7/10,000 40/100	
								(60/100)	
									4/10,000	
									10/100	
			•				/	\	40/100	
()		()		() 3	/10,000	
			())			2/100	
									1/100	
						가			1/100	
			,)		\ 71			1/100 1/100	
			(()가			0.5/100	
			()	() 가			1/100	
								(0.5/100	
									2/100	
									2/100 1/100	
									1/100	
									0.5/100	
								(0.5/100	
		•						(0.5/100	
									0.1/100	
									20/100	
		•							0.2/100	
									0.2/100	
			•						5/100 5,000	
		가						,	0.5/100	
									5/100	
								5	5,000	
									2/100	
			•	가				(0.2/100	
			가	71					5/100	
16			- 1						07.100	
(
								21)		
								22		
	-							23		
	-							24		
	-						0	25		
	-						U			
	-									
							0	26		
				1			U	1 (20)	1	

12.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자료1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

성명:이공평

주 소 :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

구 분		연말정산 주요 내역	
근 무 처 명	(주) 국 세	근무처 사업자번호	607-81-****
총 급 여	100,000,000	근로소득금액	85,250,000
인 적 공 제 내 역		세 액 공 제 내 역	
본 인	1,500,000	보 험 료 공 제	120,000
부양가족(3명)	4,500,000	의 료 비 공 제	1,050,000
70세이상자(1명)	1,000,000	교육비공제	900,000
한 부 모 공 제	1,00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국민연금보험료	1,000,000
결 정 세 액	소득세 :	7,810,000 , 지방소득서	781,000

* 교육비 : 6,000,000원

* 의료비 지출액 : 본인 10,000,000원

* 자녀 2명, 모친 1명

* 보장성보험료 : 1,000,000원

자료2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20,000,000원

- 지급처 : (주) 동래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 기타소득자 및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 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❸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⑤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⑪소득공제명세서 ⇒ ⑫세액공제명세서 ⇒ ⑩기납부세액명세서 ⇒ 4세액의 계산 ⇒ 2 환급금 계좌신고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 40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⑨ 기장의무 : ③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① 신고구분 :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 (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

- ① 소득구분코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51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 : 근무처명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근무한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5) 총수입금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00총급여 라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100.000.000원
- ⑥ 필요경비: 아래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금액 14.750,000원을 합계란의 필요경비 라에 적습니다.

근 로 소 득 공 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⑦ 소득금액: ⑤총수입금액 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⑧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각 근무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6월 결정세액 라의 금액을 적습니다. (주)국 *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85.050원입니다.
- ※ 원천징수영수증의 <u>⑥ 차감징수세액</u>을 적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과다(과소)공제하는 결과가 되며, 과다공제의 경우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기타소득〉

- ① 소득구분코드: 6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 : 지급처명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 총수입금액: 20,000,000원
- ⑥ 필요경비: 0원
- ⑦ 소득금액: 20.000.000원
- * ⑤총수입금액 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난에 85,250,000원, 기타소득금액란에 20,000,000원을 적습니다.
-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 ① 본인: 1,500,000원
- ③ 부양가족 : 4,500,000원 (3명×150만원) ④ 경로우대자(추가공제) : 1,000,000원

국 세 청

12.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⑦ 한부모가족: 1,000,000원
- *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경 우에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합니다.
- ⑧ 인적공제 계(①~⑦): 8,000,000원
-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1.000.000원
- ① 특별공제합계(근로소득이 있는 자 란에 기재): 1.000.000원(瓜)~① 합계)
- (b)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등 6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② 소득공제 합계 (8~11)+(15)+(21)): 9,000,000원

(b)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7,810,000원
- ⑩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0원
- ① 기납부세액 합계: 7.810.000원(①~⑩의 합계)

4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③ 종합소득금액: 105,250,000원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20 소득공제: 9.000.000원
- * 🛍 소득공제명세서의 28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 과세표준: 96,250,000원 (② -②)
- ② 세율: 35%
- ② 산출세액: 18,787,500원 (96,250,000 × 35% 14,900,000)
-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 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❸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원
- ③ 세액공제: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500.000원을 적습니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상당액: 15.217.428원

산출세액(18,787,500원) × 근로소득금액(85,250,000원) 종합소득금액(105,250,000원) = 15,217,428

a) 공제액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 급 여 액	공 제 한 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②) ①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②) ①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②50만원					

○자녀세액공제: 300,000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인이므로 자녀세액공제 3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원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1,000,000원을 공제대상금액에 적고 12%의 적용률을 곱한 금액 12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1,050,000원

본인의 의료비 지출금액 가운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10,000,000원 중 근로소득금액 100,000,000원의 3%인 3,000,000원을 초과하는 7,000,000원이 공제대상입니다. 15%의 적용률을 곱한 1,050,000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900,000원

교육비 지출액 6,0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란에 기재하고 15%의 적용률을 적용한 9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위에 기재한 세액공제의 합계를 ⑥세액공제합계란에 기재합니다.

12.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⑥ 세액공제 합계: 2,8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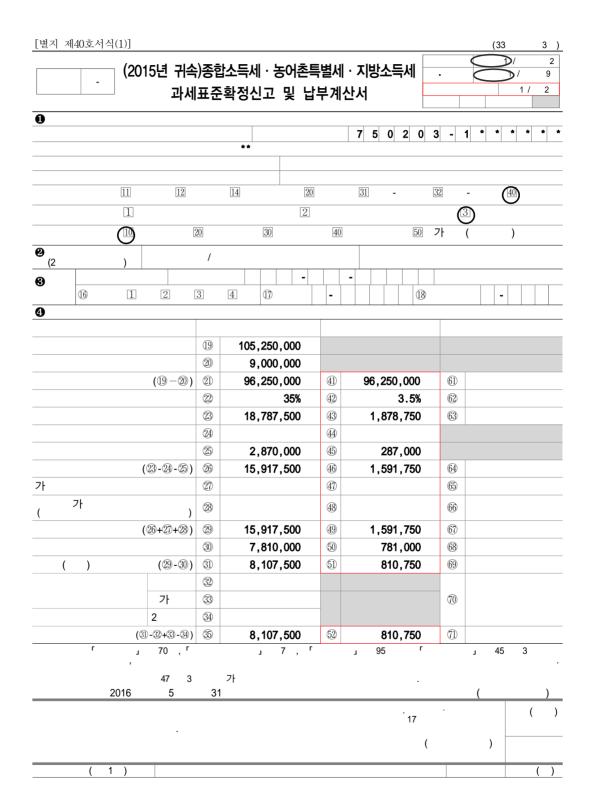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 ② 세액공제: 2,870,000원
- * 🚯 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26 결정세액: 15,917,500원 (23-24-25)
- 29 합계: 15,917,500원 (28+29+30)
- ③ 기납부세액: 7.810,000원
- *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8,107,500원 (29-30)
- ③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8.107.500원 (③)-③+③-④)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④란)은 과세표준(②란)을 옮겨 적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⑤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⑤)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⑥)란)에서 중간예납세액(⑥)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④ 과세표준 : 96.250.000원 (②)라의 금액)
- ④ 산출세액: 1,878,750원 (④) × 세율3.5% 누진공제액1.490,000원 =1,878,750원)
- ④ 세액감면・⑤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②와 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10/100=0원, ⑤×10/100=287,000원)
- 46 · 49 란의 금액: 1,591,750(43-44-45)
- ⑤ 기납부세액: 781,000원
- (49-50) 등 10·52 라의 금액: 810.750원





12.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40]	(11)
--------	--------

❸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	(.	(.)	(-)		
	_	()					
51	1	607-81-****	100,000,000	14,750,000	85,250,000	7,810,000	
60	1	()	20,000,000	0	0	0	
00		607-**-***	20,000,000	U	· ·	U	

[별지 제40호 서식(1)] (제13쪽)

9		•					,	
			()	()	()		·
	()							
)(85,250,000						85,250,000
		20,000,000						20,000,000
10	,							
(
)								
(
)								



12.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	소득	공제명	세서														
						[_									
							1,50	0,000							1,	,000,000	
			가	. ((3)		4,50	0,000									
					1)		1,00	0,000									
	가			()												
													()			
				フ	<u> </u>		1,00	0,000					()			
			()		8,00	0,000					()				
22																	
					()						()
0		1	7 5		0 5 -									-			
2		1	4 2		0 6 -	-	* * *							-			
4		1 가 1		0 8	1 7 - 0 9 -	-								-			H
		:	=0,	0 0	0 0		=1,			=2,		=3,			=4,		
	~ 6	(·		가			.))=		=6,	=7,		=8(
					Γ				J								
		① r			J	()			18		19		20			
		②D F			J												
		22)					_	000 000	,	<u> </u>							
		(~	+ + (2	21)			9,	000,000	,	23							

[40 (1)]					(19)
®					
()					
()					
B					
, 1		()	()	(×)	
				,	
				500,000	
(2)				300,000	
(6)					
			12%		
			(15%)		
		1,000,000	12%	120,000	
			15%		
		7,000,000	15%	1,050,000	
		6,000,000	15%	900,000	
			15%		
			(25%)		
- J					
()					
10					
10					
					· ·
(, 1 + ,	٦)			2,870,000	
14					
- , - -					
() 1					
, ,					



12.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별지 제40호서	식(1)]							(21)
⑤ 가								
W 21							가	가
							40/10	0 71
							(60/10	0)
							14/10,0	000
							20/10 7/10,0	0
							40/10	0
							(60/10	0)
							14/10,0	
							10/10	0
						()	40/10	
()		()		()	3/10,0	00
		(Ţ ()		2/100)
							1/100)
					가		1/100)
))가		1/100 1/100)
		()	- () > [0.5/10	
		()	() 가		1/100	
				<u> </u>			0.5/10	00
							- / /	
							2/100 2/100)
							1/100) 1
							1/100)
							0.5/10	00
							0.5/10	00
		•					0.5/10	
							0.1/10	00
							20/10	
		•					0.2/10	00
							0.2/10 5/100	00
			•				5,000	<u> </u>
		가					0.5/1	00
		•					5/10	0
		•					5,000	
							2/10	0
			•	가			0.2/1	00
		가					5/10	0
16								
(b								
							21)	
							22	
							23	
							24	
					7	7,810,000	25	
					•	, ,		
					7	7,810,000	26	

부록



000000000000

부록 신고 전 주의해야할 유권해석 사례 안내 _ 34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부록 신고 전 주의해야할 유권해석 사례 안내

◆ 주요세법 해석사례 46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고통	수입금액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22606, 2015.05.07)
무	수입금액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 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소득-22517, 2015.03.23)
공통	수입금액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임 (서면법규과-1240, 2014.11.21)
공통	수입금액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83, 2014.06.30)
무	수입금액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96, 2014.06.16)
공통	수입금액	경조사비를 고객명의의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법규과-691, 2013.06.17)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고통	수입금액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세과-637, 2012.11.22)
고통	필요경비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0230, 2015.05.12)
공통	필요경비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 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974, 2014.09.05)
공통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서면법규과-1267, 2014.12.02)
공통	필요경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4, 2013.01.03)
공통	필요경비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가능함.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공통	필요경비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함(서면법규과-1249, 2013.11.14)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필요경비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공통	필요경비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임. (원천세과-491, 2013.09.30)
공통	필요경비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함(서면법규과-1055, 2013.09.27)
공통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 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 (서면법규과-1029, 2013.09.23)
공통	필요경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서면법규과-844, 2013.07.22)
공통	필요경비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서면법규과-522, 2013.05.09)
공통	필요경비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함.(서면법규과-182, 2013.02.18)
공통	필요경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소득세과-11, 2013.01.03)
공통	필요경비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539, 2012.12.27)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필요경비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 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 차익금은 「소득세법」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903, 2012.12.11)
공통	필요경비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과-628, 2012.08.20)
공통	필요경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452, 2012.05.31)
공통	필요경비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소득세과-1108, 2011.12.30)
공통	필요경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과 -0001, 2012.01.03)
공통	필요경비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 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세과-848, 2011.12.20)
공통	소득금액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 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 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서면 법규과-664, 2013.06.13)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소득금액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59, 2014.08.29)
공통	성실신고확인	해외 자회사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1조를 참조하여 판단.(소득세과-379, 2014.07.02)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182, 2012.03.06)
공통	성실신고확인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므로, 거주자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 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 (소득세과-296, 2014.05.26)
공통	성실신고확인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불가능함 (서면법규과-611, 2013.05.30)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는 기한후 신고임.(징세과-1037, 2012.09.27)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소득세과-463, 2012.06.04)
도소매	수입금액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은 비과세 되며,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함 (서면법규과-523, 2013.05.09)

업종	분야	해석 사례
서비스	필요경비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 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242, 2012.05.04)
서비스	필요경비	이동통신대리점이 사전공시하고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소득세과-0989, 2011.11.29)
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령해석과-3311, 2015.12.11)
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해당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사업무관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동종의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0997, 2015.06.24)
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 산입 (서면법규과-505, 2013.05.02)
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함.(소득세과-840, 2012.11.21)
부동산 매매업	필요 경비	부동산매매업자의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함.(소득세과-721, 2012.09.27)



신고 전 주의해야할 유권해석 사례 안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부동산 매매업	수입금액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775, 2014.07.22)
건설	성실신고확인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과-348, 2012.04.25)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발행일자 | 2016년 4월 일

발행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집필편집 | 행정사무관 최진복

국세조사관 김영진

국세조사관 정희석

국세조사관 김요수

세 무 사 심지영

인쇄 | 도서출판 태봉(☎ 02-2274-0383)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세법과 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